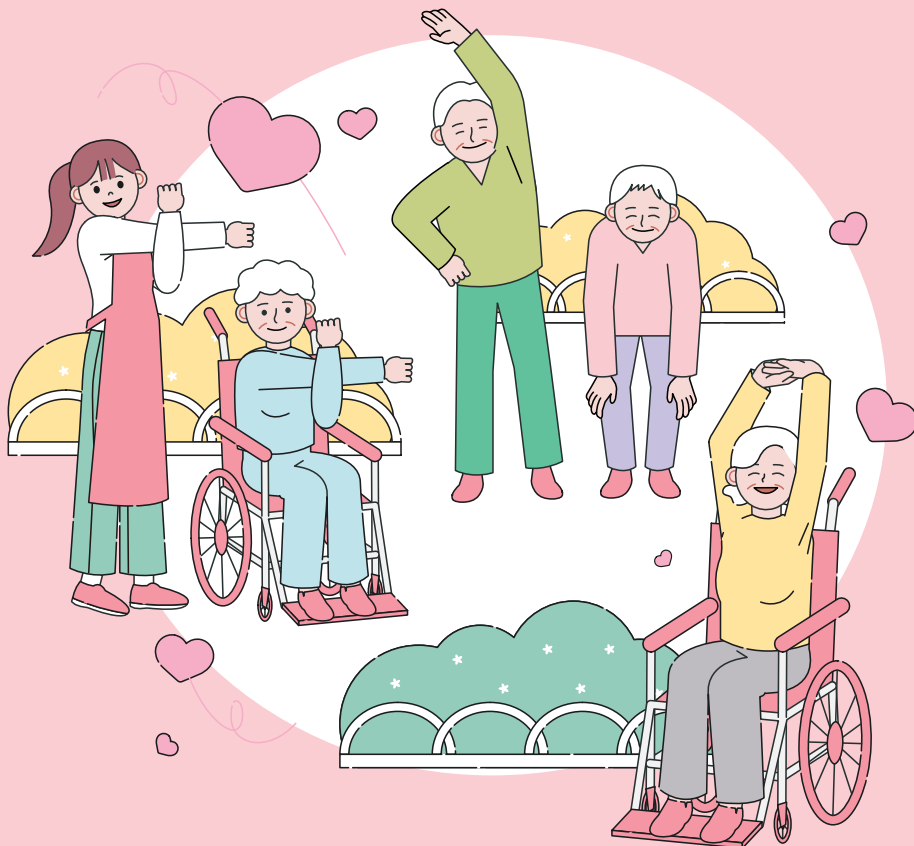


2023

#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안전, 인권 및 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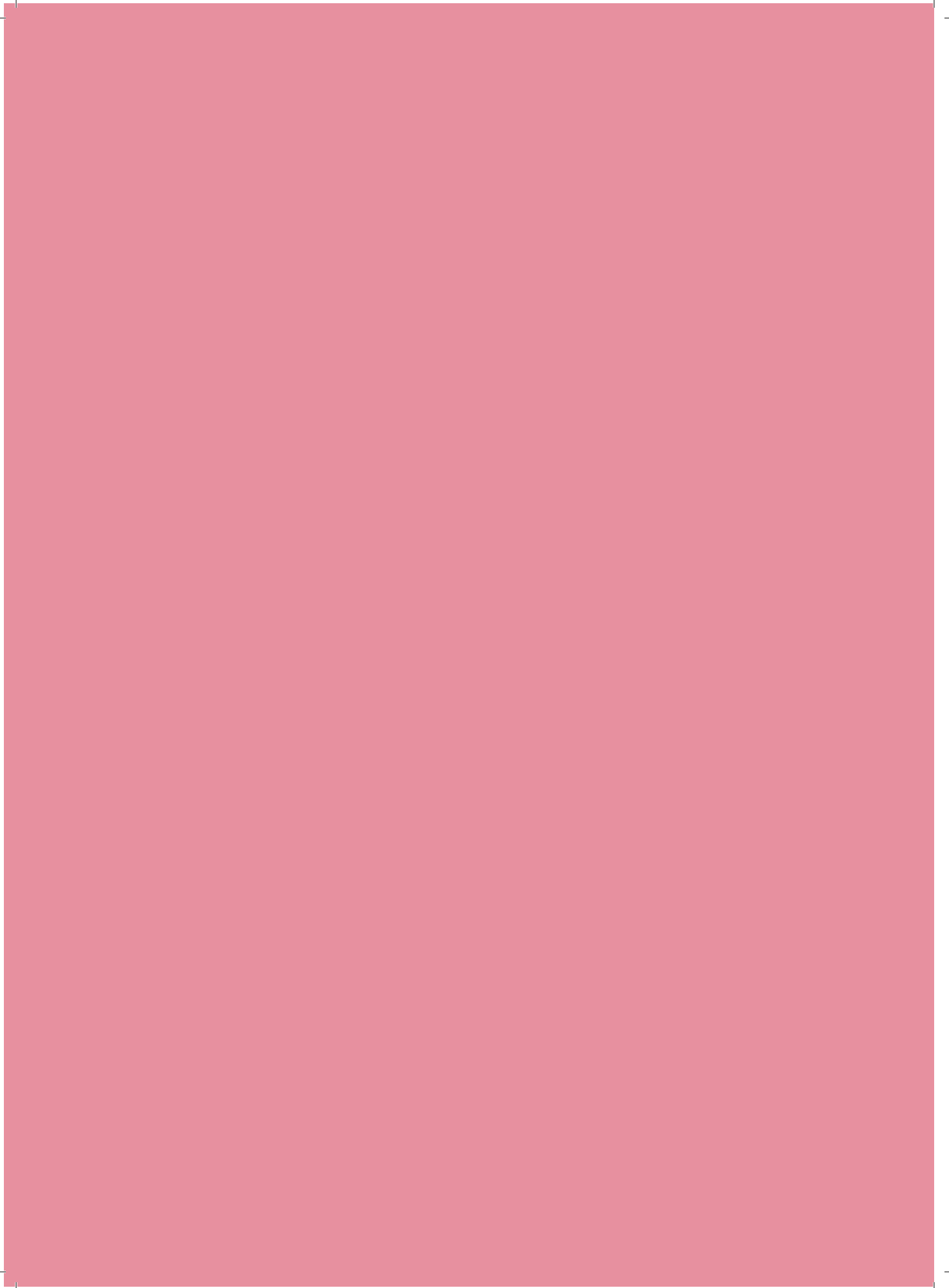
1





## 매뉴얼 참고사항

- 최근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태풍·호우 등의 자연 재해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및 코로나 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장기요양기관 내 인적·물적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성 질환 및 고령의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평소 이에 대한 사전 대비와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본 매뉴얼은 장기요양 수급자 및 종사자의 생명·안전 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상황별 안전 및 감염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본 매뉴얼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매뉴얼(sop) (보건복지부)>, <화재안전관리 매뉴얼(보건복지부)>,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관리 매뉴얼(보건복지부)>,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 학대예방지침(보건복지부)>, <시설안전관리지침(보건복지부)>,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 12판(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4판)(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코로나 19를 중심으로)(보건복지부)>, <2019 요양병원 음 예방 및 관리안내(질병관리청)>, <음·머릿니 예방 및 관리 안내서(질병관리청)>, <빈대정보집(제2-1판)(질병관리청)>, <2019 메르스 대응지침 5-2판(질병관리청)>, <화재,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국민행동요령(소방청)자료>, <2021년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1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제공 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집 HACCP 식생활 안전 가이드 10(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의료관련감염 표준 예방지침(질병관리청)>, <2021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평가 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간병인력 감염예방·관리 수칙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2022년 영유아 돌봄·교육기관 감염병 대응 권고안(질병관리청)> 등을 인용·참고하고,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체계 구축방안 연구(이재갑 등, 2023)>결과 내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장기요양기관의 규모, 급여의 종류 등 시설환경 및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따라서 본 매뉴얼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각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 1 안전

### 1-1 화재안전 매뉴얼

1	화재안전 일반사항	11
2	화재별 예방 및 안전수칙	14
3	화재사고 대비 활동	17
4	화재사고 대응 활동	22
5	화재 후 복구활동	26
6	피난준비 및 피난 대응활동	27
[부록]	화재 안전관리 매뉴얼	31

### 1-2 안전사고 관리 매뉴얼

1	전기안전	65
2	가스안전	78

### 1-3 자연재난 관리 매뉴얼

1	태풍·호우재난	97
2	지진·지진해일 재난	108
3	황사재난	124
4	대설재난	132
5	한파	133
6	낙뢰재난	134
7	다중시설 대형사고	135
8	미세먼지	136

## 2 / 인권 및 낙상

### 2-1 노인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지침

1	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지침	159
2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167

####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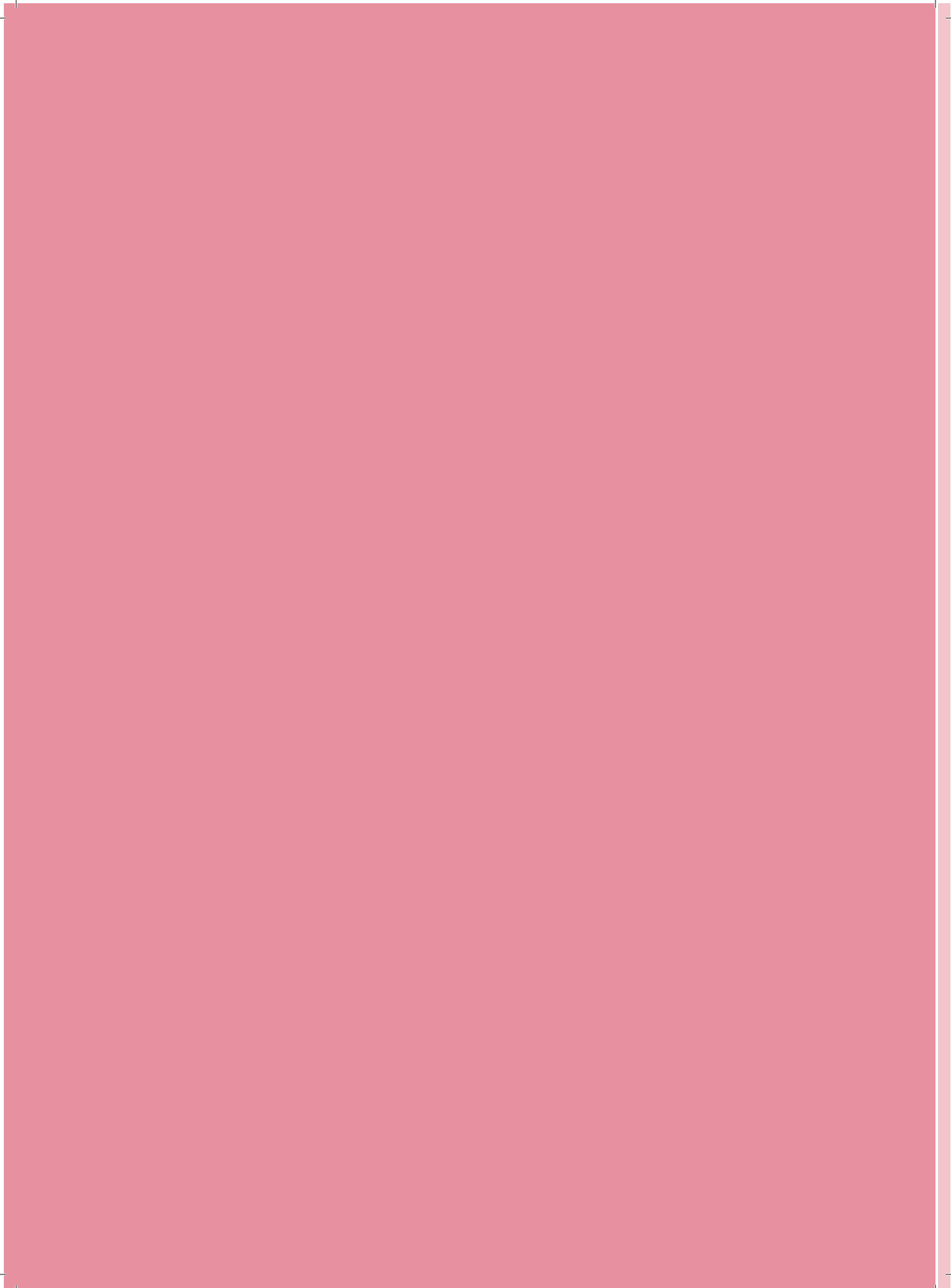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 지표	179
	중앙 및 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187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재	189

### 2-2 낙상예방 및 관리

1	낙상예방 및 관리	215
---	-----------	-----

# 1

##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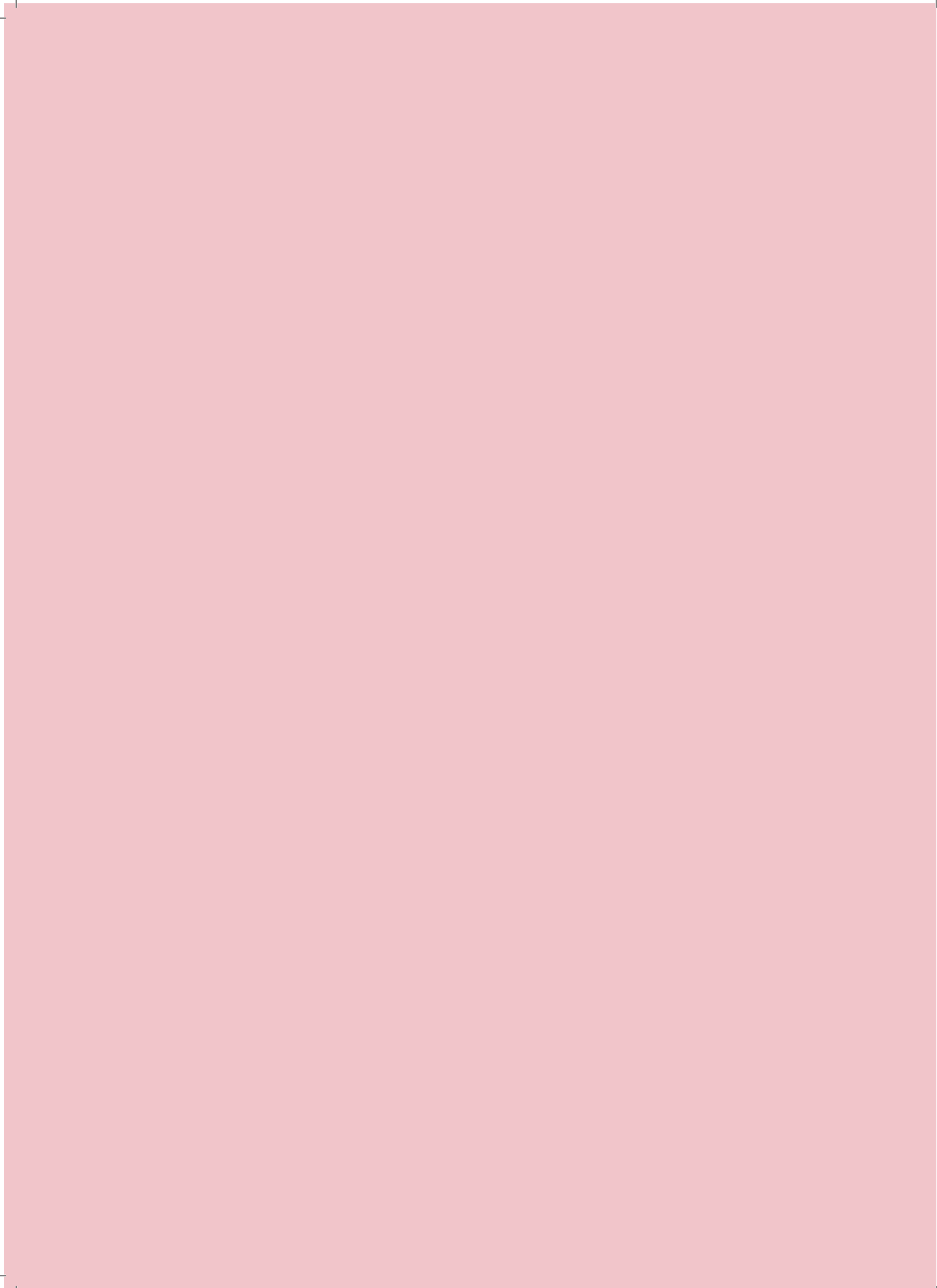


# 1-1

## 화재관리 매뉴얼

1	화재안전 일반사항	11
2	화재별 예방 및 안전수칙	14
3	화재사고 대비 활동	17
4	화재사고 대응 활동	22
5	화재 후 복구활동	26
6	피난준비 및 피난 대응활동	27
	[부록] 화재 안전관리 매뉴얼	31

본 매뉴얼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매뉴얼(SOP)을 편집한 자료입니다.



# 1 화재안전 일반사항

## 1.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관계인(대표자, 시설장, 소방안전관리자)은 본 매뉴얼을 활용하여 화재 예방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화재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자위소방대의 편성
- 근무자 및 수급자에 대한 소방시설 등의 사용요령 교육
- 화재 및 안전관리 예방활동
- 화재 시 소화활동 및 대피활동 등의 화재 대응활동
- 화기취급의 감독

## 2. 화재 정의

- 인간이 원하지 않는 연소현상으로 발생하여 인명 피해나 재산피해를 동반한다.
- 가연물, 점화원, 산소의 3요소가 주어진 공간에서 쉽게 발생하며 소화활동이 필요하다.
- 화재의 종류는 일반화재(목재, 종이 연소), 전기화재, 가스화재, 유류화재(기름류) 등으로 분류한다.

## 3. 적용 범위

- 본 매뉴얼은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예방 및 교육훈련을 위해 사용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및 근무자는 매뉴얼을 활용하여 화재 시 대응 태세를 갖춘다.
- 매뉴얼은 최소한의 행동 매뉴얼로 안전관리 운영 시 시설의 특성에 맞도록 응용하여 활용한다.
- 소방안전관리자는 근무자나 수급자 등이 매뉴얼을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적당한 곳에 비치하여 실질적 활용이 가능토록 한다.

## 4. 관련 법

- 재난 및 위기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
- 소방방화 및 안전관리
  - 소방기본법(중앙소방본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중앙소방본부)
  - 위험물 안전관리법(중앙소방본부)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중앙소방본부)
-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중앙소방본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 5. 화재 특징

- 화재는 연간 발생하는 재난 중 피해가 가장 큰 사회적 재난으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발생한다.
- 가연물이 연소될 때 생성되는 유독가스가 빨리 확산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다.
- 소화에 필요한 소화약제가 화재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소화활동에 주의가 필요하다.
- 철저한 사전 예방과 대응활동으로 재난피해를 줄일 수 있다.

## 6. 화재 발생원인

- 일반화재
  - 담뱃불에 의한 화재
  - 실화, 불장난, 방화 등에 의한 화재
  - 건물과 인접한 산불화재
  - 쓰레기 집하장 등의 열 축적에 의한 자연발화
  - 주방 후드 등의 기름때 또는 조리도중 착화되어 발생하는 화재
  - 유류기구 등의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한 화재
  - 용접작업 중 불꽃에 의한 화재
  - 화기시설 주위의 가연물에 대한 안전거리 미준수로 인한 화재
- 유류화재
  -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을 때 발생하는 화재
  - 주유 중 새어나온 유류의 유증기가 공기와 적당히 혼합된 상태에서 불씨가 닿을 경우 발생하는 화재
  - 유류기구를 사용도중 이동할 때 발생하는 화재
  - 불을 켜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 발생하는 화재
  - 난로 가까이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놓았을 때 발생하는 화재
  - 튀김요리 중 튀김기름이 가열되어 넘치는 경우 발생하는 화재
- 전기화재
  - 전열기구(전기장판, 전기히터, 식기건조기 등)의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화재
  -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시 허용전류 초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재

- 노후된 전선 및 전기기기의 단락(합선)에 의한 화재
  - 전선 및 전기기기의 누전 및 접촉 불량에 의한 화재
  -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 기계기구 등의 사용에 의한 화재
  - 통제된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전기기기 작동 중 과열에 의한 화재
  - 콘센트 및 분전반 등의 먼지에 의한 화재
- 가스화재
- 호스 및 배관 노후, 가스누설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 미실시에 의한 화재
  - 가스 저장용기의 설치 및 보관 장소에 대한 미통제로 발생하는 화재
  - 가스기구 사용 전 안전수칙 미준수(점화, 환기상태 미확인)에 의한 화재
  - 가스누설경보기나 차단장치 등 안전시설 미설치에 의한 화재
  - 가스시설 사용 중 장기간 자리 이탈로 발생하는 화재

## 2

# 화재별 예방 및 안전수칙

### 1. 일반화재

#### ■ 예방수칙

- 흡연 장소를 통제한다.(실내 및 흡연장소의 소화기 비치)
- 인화성물질(라이터, 성냥 등) 및 화기장소(주방, 보일러실 등)를 통제한다.
- 건물 주변 산림의 수목 등을 제거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쓰레기를 분리수거(품목별 분리, 차광 및 화기통제)한다.
- 주방 조리기구의 착화원 및 후드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 유류사용 시 누설방지 대책 및 안전시설(소화기, 방화사 등)을 구비한다.

#### ■ 위험요인과 안전수칙

위험요인	안전수칙
담배꽂초에 의한 화재	라이터 등의 수거 및 흡연장소의 통제와 "금연구역"표지 부착
재떨이에서의 잔여불씨에 의한 화재	실내 흡연은 금지하고, 실외 재떨이 등에 모래 또는 물 등으로 불씨 제거
통제되지 않은 방화, 불장난에 의한 화재	인화물질(라이터 등)은 수거하고, 시설 주변의 순찰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건물 주변 가연물체의 방화, 불장난	쓰레기는 보관장소를 지정하고 불필요한 가연물을 여기저기 쌓아놓지 않음
산불화재로 인한 화재 확산	건물 주변 산림의 수목을 제거하고 소화수(소방시설, 수도시설 등)를 확인
실내 가연물질(목재, 종이 등) 양의 증대	불필요한 가연물질은 제거하고 방염성능이 있는 벽지 등 사용
화기시설 주위에 방치된 가연성 물질	화기시설 주변의 가연물 제거
칸막이 등의 용도로 패널을 사용하는 경우	패널은 난연성이라 하더라도 화재 시 유독가스의 발생량이 많고 화재위험도가 높으므로 조적구조 등의 불연재의 칸막이를 사용

- ▶ 방화는 외부적 요인으로 볼 수 있어 인화물질(라이터 등) 수거 및 흡연 구역을 통제한다. 또한 외부인의 접근 확인을 위한 CCTV 등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다

## 2. 유류 및 가스화재

### ■ (유류) 예방수칙

- 유류 사용기기별로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용 및 관리한다.
- 과열이 되기 쉬운 가전제품, 보일러 등은 무리해서 사용하지 말고, 항상 사용 전 안전점검 후에 사용한다.
- 유류 사용기기 주변에 가연물의 적재를 금지한다.
- 화공약품 및 유류 사용 장소에는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비치한다.
- 흡연장소의 지정 및 소화기 등 화재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 용접 등 실내 작업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안전대책 수립 후 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한다.

### ■ (가스) 예방수칙

- 가스시설 사용 시 장시간 자리 이탈을 금지한다.
- 가스사용 전 가스누설 여부를 냄새로 확인하고 환기시킨 후 사용한다.
- 가스사용 후(외출시 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간밸브와 메인밸브를 잠근다.
- 가스시설 주위의 위험성 및 가연성물질 방치를 금지한다.
- 호스와 밸브 등은 비눗물을 이용하여 누설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휴대용 부탄가스, 헤어스프레이 등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 버린다.

### ■ 위험요인과 안전수칙

위험요인	안전수칙
보일러, 난로 등에 기름을 넣을 때 기름 유출	지정된 관리자에 의한 유류 관리를 통제하고 마른 모래 등으로 유류가 흐르지 않도록 함
불이나 전원 차단없이 기름을 넣는 행위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유류 보충
튀김요리 중 기름이 넘쳐 가열되는 경우	조리 중 자리를 비우지 말고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고 조리 기구 주변 소화기를 비치 ※ 식용유로 인한 화재는 K급(강화액) 소화기 사용
유류통 등 인화성물질에 대한 보관장소 미확보	유류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
통제되지 않은 인원에 의한 방화 등 외부인원 및 거주인	유류 사용 및 보관장소는 통제된 장소로 하고 외부인의 출입 방지대책 수립
수용인 및 외부인원에 의한 방화 및 담뱃불	라이터 등 점화원을 통제하고 흡연장소 지정
가스누출에 의한 화재폭발	가스누설경보 자동 차단장치 설치하고 가스사용 및 용기보관 장소에 환기를 실시

- ▶ 실내 난로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중앙난방방식을 운용토록 한다.

### 3. 전기화재

#### ■ 예방수칙

-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 전선 등은 정격용량의 제품을 사용한다.
- 용량에 적합한 규격전선의 사용 및 노후 된 배선은 교체한다.
- 천정 속 및 전기기기의 청소 등을 통해 먼지나 가루를 제거한다.
-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금지하고, 전기기기는 사용 후 플러그를 제거한다.
- 분전함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위험물, 기타 가연물의 방치를 금지한다.
- 전열기 등의 자동온도조절장치 작동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 ■ 위험요인과 안전수칙

위험요인	안전수칙
노후화된 전선이나 용량 낮은 규격전선 사용	반드시 규격전선 사용여부 확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의 전선과 전기기기	은폐전선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실시
전열기구의 장시간 사용에 따른 과열	정해진 시간만 사용하고 일시 쉬었다 사용
전기기기 사용 후 플러그 미제거로 누전우려 발생	전기용품 사용 후 반드시 코드를 뽑아 누전방지



# 3

## 화재사고 대비 활동

### 1. 목적

시설 실정에 맞는 화재예방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고,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와 화재 시 대응태세를 완비하며, 화재예방 활동을 통한 위험요소의 제거 및 예방한다

### 2. 교육훈련의 계획 및 시행

#### ① 교육훈련계획

- 연간 교육훈련계획은 소방계획서와 본 매뉴얼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 시설별 특성과 수급자 인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제적 교육훈련이 가능토록 현장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 모든 근무자 및 수급자들이 동참 가능한 교육훈련을 계획한다.
- 교육훈련 후 강령 등을 통한 차후 교육훈련에 반영한다.

구분	수립시기	서식	작성자
내용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 수립	연간교육 훈련계획	소방안전관리자

- 교육훈련 자료 및 교수인력 확보방안

구분	내용	비고
교육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자료: VTR, CD, OHP필름 등</li> <li>• 교육 및 화재대응 매뉴얼, 교수지도계획서 등</li> <li>• 기타 교육 훈련에 필요한 교육자료 등</li> </ul>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간 사용되는 기자재는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활용</li> <li>•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반의 임무에 필요한 기자재</li> </ul>	
교수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 및 교육 훈련 책임자</li> <li>• 소방관서 및 전문기관(의료기관 등)의 인력 협조</li> <li>• 소방시설의 위탁관리 시 관리업체의 전문 인력 협조</li> <li>• 자위소방대 조직상의 각 반 책임자를 각 반의 중간 교수인력으로 활용</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훈련 점검표의 준비</li> <li>• 합동소방훈련 시나리오 등의 준비</li> </ul>	

#### ② 시설관리자 교육방법

- 각 시설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에 참여토록 한다.
- 기존 근무자 중 임무 수행상태가 양호한 근무자는 기초/부분훈련 훈련을 면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가상/종합훈련은 전 근무자 참여)

- 교육인원의 편성은 기초훈련에 준하여 인원을 편성한다.
- 교육훈련은 소방훈련 절차를 작성한 후 활용한다.

구분	내용	비고
교육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훈련 절차 및 교육 훈련 점검표의 준비</li> <li>•119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교육 훈련 협조체계 준비</li> <li>•훈련 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안전 대책의 수립</li> </ul>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막탄, 소방기구, 구급장비 등</li> </ul>	
훈련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훈련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 진행</li> <li>•훈련의 목적은 훈련을 잘하는 것이 아닌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하여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음을 유념</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훈련실시 후 교육훈련 결과기록부에 훈련사항 등을 기재하여 강평과 함께 차후 교육 훈련 시에 반영</li> </ul>	

### 3. 자위소방대 조직과 운영

#### ①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

- 시설의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를 조직하여 대원들에게 통보한다.
- 조직원으로 편성된 자위소방대원은 당해 “조직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자위소방대 편성

- 주간 조직편성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 야간 조직편성은 야간 근무자와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조직편성 방법 : [부록] 02. 사회복지시설의 자위소방대 구성 참조

#### ③ 자위소방대 각 반의 임무

- 자체 실정에 맞는 화재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와 화재 시 대응태세를 완비한다.
- 화재 예방활동을 통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대비활동을 실시한다.

#### ■ 각 반의 임무(주간)

구분	화재 예방활동
지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안전계획의 수립 및 확인</li> </ul>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시설 등의 정기점검 및 정비 확인</li> <li>• 각 반의 임무 및 숙달 상태 확인</li> <li>• 기타 화재 예방에 대한 총괄 임무 수행</li> </ul>

구분	화재 예방활동
연락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재 시 대비한 임무 확인 및 숙지</li> <li>- 유관 기관과의 연락망 확인 및 숙달</li> </ul>
소화·진입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재 시 대비한 임무 확인 및 숙지</li> <li>- 소화/진압 장비의 사용법 등의 확인</li> <li>- 자위소방대 임무 확인 및 숙달</li> </ul>
대피 유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재 시 대비한 임무 확인 및 숙지</li> <li>- 피난로 및 비상구의 위치 확인</li> <li>- 피난기구의 사용법 확인 및 숙달</li> </ul>
구조·구급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재 시 대비한 임무 확인 및 숙지</li> <li>- 구조/구급 장비의 비치 및 확인</li> <li>- 환자 응급조치 요령의 숙달</li> <li>- 후송 및 구호 계획의 수립</li> </ul>

#### 4. 재난 시 긴급구호 시스템 구축

- 시설 근처에 있는 다른 건물의 자위소방대나 지역 의용소방대와 사전에 협약하여 재난 발생 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야간 재난 발생 시는 구조와 피난에 중점을 둔다.
- 사전 합동훈련을 통해서 시설특성 및 재난 시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협조를 공유한다.
- 필요하면 비상연락망 외에 자동화재속보설비나 별도 핫라인 전화 등을 설치하여 긴급 재난 시 지원받도록 한다.

#### 5. 사회복지시설 위치별 안전 활동사항

##### 1) 도시지역에 설치된 시설

###### ① 형태

- 건물이 서로 밀집되어 있고, 차량 및 인구의 유동이 많아 소방차 등의 진입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이다.
- 하나의 건물에 다른 용도의 시설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되어 피난계단의 사용 및 소방 활동 등의 제한이 우려되는 시설이다.

② 화재안전을 위한 활동사항

구분	확인할 사항
시설책임자 (대장/부대장) / 소방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차 진입로 확보여부 확인 (진입로, 주차 전용공간)</li> <li>피난로의 활용가능 여부 확인(밀집여부, 피난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피난 동선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li> </ul> </li> <li>피난기구의 실제 활용가능 여부 확인(훈련을 통해)</li> <li>수급자 대피장소의 확인 및 확보</li> <li>하나의 건축물 중 일부 층만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건물의 소방 안전관리자와 협조하여 소방시설의 작동</li> <li>- 피난로의 확보 및 피난계획 등의 수립</li> </ul> </li> </ul>

2) 농촌지역에 설치된 시설

① 형태

- 사회복지시설 주위에 건물 등의 밀집이 없고, 소방자동차 등의 이용이 용이한 공간 등이 확보되어 소방 활동 등이 용이한 시설이다.
- 시설의 위치가 관계기관(소방관서,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관계기관의 신속한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시설이다.

② 화재안전을 위한 활동사항

구분	확인할 사항
시설책임자 (대장/부대장) / 소방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 가능한 시간 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기관 도착 전까지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한 임무에 따라 자위소방대의 편성 및 임무 부여</li> </ul> </li> <li>산불 등의 화재에 따른 피난 등의 안전대책 수립</li> <li>응급처치에 따른 구호약품 등의 확보</li> <li>야간 화재발생 시 피난대피 보조인력 총원계획 수립 (소방서 협조로 인근지역 의용 소방대원 활용)</li> </ul>

6. 소방시설의 안전점검

① 안전점검 시기/점검자

- 소방시설 주요 점검사항 : [부록] 09. 안전시설 세부점검표 참조
- 점검 후 문제점은 보완하고 정비보완 기록부에 기록하여 유지·관리한다.

구분	점검주기	점검서식	점검자	비고
점검주기	월1회 이상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② 주요 점검내용

- 소방시설의 파손 및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한다.(육안 및 검사장비를 이용한 정기검사)
- 소방시설의 설치 누락 및 변경여부를 확인한다.
- 기타 안전관리상 위험요인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한다.
- 건축물 내 소방안전시설 등의 현황을 파악한다.

# 4

## 화재사고 대응 활동

### 1. 화재 시 대응절차

화재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관서 119에 신고</li> <li>경보전파 (자동화재 속보설비 및 육성)</li> </ul>
초기소화 및 대피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화기 등을 이용한 초기진화 시도</li> <li>대피활동 지시 및 전개</li> <li>자위소방대 비상소집</li> </ul>
초동 진화작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화기, 소화전으로 초동 진화작업 시행</li> <li>소방대 도착 전까지 대피활동 전개</li> <li>화재확산 방지 대책 전개</li> <li>인명 구조 활동 전개</li> </ul>
소방대 도착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대장에 현재까지 상황 보고</li> <li>소방대장 지시에 따라 소방 활동 전개</li> </ul>
화재진화 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원 및 부상자 확인</li> <li>건축물 내 임의 진입 금지</li> <li>환자 이송 및 의료 활동 지원</li> </ul>

### 2. 자력피난이 어려운 수급자의 대응절차

#### ① 적용시설

- 노인과 장애인 등으로 자력피난이 불가능한 시설에 적용한다.
- 수급자 스스로 소방활동(화재진압 및 대피활동)이 불가능한 시설에 적용한다.
- 수급자가 치매 및 정신질환, 신체상태 저하 등의 사유로 근무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적용한다.

#### ② 최초 화재 발생 시(주간)

구분	최초 화재 발견 시 (초기 진화가 가능한 경우)	초기 화재 진화 실패 시 (초기 진화가 불가능한 경우)
최초 발견자 (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 내 경보 전파</li> <li>육성, 발신기 등</li> <li>최초 소화 활동 실시</li> <li>투척용소화기, 수동식소화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 내 경보 전파</li> <li>육성, 발신기 등 자동경보</li> </ul>
최초 발견자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무자에게 경보 전파(가능 시)</li> <li>육성("불이야") 및 호출버튼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무자에게 경보 전파(가능 시)</li> <li>육성("불이야") 및 호출버튼 등</li> </ul>

구분	최초 화재 발견 시 (초기 진화가 가능한 경우)	초기 화재 진화 실패 시 (초기 진화가 불가능한 경우)
지휘 연락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휘반은 화재 현장 지휘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활동에 우선하여 지휘통제</li> <li>- 화재의 규모 판단 후 활동지휘</li> </ul> </li> <li>•소방기관에 경보전파(119)</li> <li>•자위소방대 비상소집 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기관에 경보전파</li> <li>•자위소방대 비상소집</li> <li>•소화/대피/구조활동의 지휘통제</li> <li>•소방대 도착 시 화재상황 등의 보고</li> </ul>
소화 진압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 소화활동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동식소화기 등 소화기구</li> <li>- 옥내소화전 사용 준비 및 호스 이동</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한 소화활동</li> <li>•화재실의 가연물 제거</li> <li>•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밸브 차단 및 용기 이동(가능 시)</li> <li>- 폭발 우려 시 소화활동 중단하고 대피</li> </ul> </li> </ul>
대피 유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재지점의 수급자를 우선적 대피 (화재 규모와 상관없이 실시)</li> <li>•화재지점에 수급자 접근 통제</li> <li>•피난로 확보/출입문 등 개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자를 안전구역으로 대피유도</li> <li>•비상구 확보 및 피난기구 설치</li> <li>•방화문(방화셔터) 등 확보로 화재 차단 및 피난로 확보</li> </ul>
구조 구급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피유도반 지원(구급반)</li> <li>•소화/진압반 지원(구조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피 및 소화반 지원</li> <li>•응급환자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구호소로 환자 이동 응급조치</li> <li>- 환자 분류(자체치료 또는 후송)</li> </ul> </li> </ul>

### ③ 화재의 확산 및 소화주간

구분	화재의 확산	화재의 소화
지휘 연락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대장에게 지휘권 이양(화재 및 피해상황 등 보고)</li> <li>•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지휘보고체계 및 통신망 유지</li> <li>•상황에 따른 각 반의 임무 재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황보고 및 전파체계의 지속적 확립</li> <li>•피해상황 등의 파악</li> <li>•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각 반의 임무 재부여(수급자의 구급활동 중점)</li> </ul>
소화 진압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화활동 지원</li> <li>•대피/유도반의 임무지원(중요물품의 이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화활동지원</li> </ul>
대피 유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대피 활동지원</li> <li>•수급자 및 외부인의 화재현장 접근통제</li> <li>•출입구 및 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 확보</li> <li>•피난기구를 이용한 수급자의 대피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자 및 외부인의 화재현장 접근통제</li> </ul>
구조 구급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급환자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분류(자체치료/후송)</li> <li>- 응급환자 후송</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급환자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분류(자체치료/후송)</li> <li>- 응급환자 후송</li> </ul> </li> </ul>

### ④ 야간화재 발생시

구분	최초화재 발견 시	자위 소방대 소집 및 소방대 도착 시 까지
최초발견자 (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내 경보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성, 발신기 등</li> </ul> </li> <li>• 초기 소화 활동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척용 소화기, 수동식 소화기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위소방대 편성표상의 해당 임무 수행</li> </ul>

구분	최초화재 발견 시	자위 소방대 소집 및 소방대 도착 시 까지
연락반 대피유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기관에 경보전파(119)</li> <li>자위소방대 비상소집</li> <li>화재지점의 인원을 우선하여 대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자 안전구역으로 대피/유도</li> <li>방화문(방화셔터)의 확보로 화재 차단 및 피난로 확보</li> </ul>
소화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소화 활동 실시</li> <li>- 투척용 소화기, 수동식 소화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한 소화활동 지속 실시</li> </ul>

### 3. 자력피난이 가능한 수급자의 대응절차

#### ① 적용시설

- 거동이 자유롭고 자력피난이 가능한 시설에 적용한다.
- 수급자 스스로 소방활동(화재진압 및 대피활동 등)이 가능한 시설에 적용한다.

#### ② 최초화재 발생시(주간)

구분	최초 화재 발견 시 (초기 진화가 가능한 경우)	초기 화재 진화 실패 시 (초기 진화가 불가능한 경우)
최초 발견자 (근무자,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 내 경보 전파</li> <li>- 육성, 발신기 등</li> <li>최초 소화 활동 실시</li> <li>- 투척용소화기, 수동식소화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 내 경보 전파</li> <li>- 육성, 발신기 등 자동경보</li> </ul>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자 중 소화활동이 가능한 인원은 자위소방대 임무 부여 (대피활동 위주 부여)</li> <li>- 해당 층 및 해당 호실의 다른 수급자 피난 및 대피활동 지원</li> </ul>	
지휘 연락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휘반은 화재 현장 지휘/통제</li> <li>- 소화활동에 우선하여 지휘/통제</li> <li>- 화재의 규모 판단 차후 활동 지휘</li> <li>소방기관에 경보전파 (119)</li> <li>자위소방대 비상소집 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기관에 경보전파</li> <li>자위소방대 비상소집</li> <li>소화/대피/구조활동의 지휘/통제</li> <li>소방대 도착 시 화재상황 등 보고</li> </ul>
소화 진압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 소화활동 실시</li> <li>- 수동식 소화기 등 소화기구</li> <li>- 옥내소화전 사용 준비 및 호스 이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한 소화활동</li> <li>화재실의 가연물의 제거</li> <li>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시</li> <li>- 밸브 차단 및 용기의 이동(가능 시)</li> <li>- 폭발우려 시 소화활동 중단 후 대피</li> </ul>
대피 유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재지점의 수급자를 우선적 대피 (화재의 규모와 상관없이 실시)</li> <li>화재지점에 수급자의 접근 통제</li> <li>피난로 확보/출입문 등의 개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자를 안전구역으로 대피/유도</li> <li>비상구의 확보 및 피난기구 설치</li> <li>방화문(방화셔터)등의 확보로 화재 차단 및 피난로의 확보</li> </ul>
구조 구급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피유도반 지원(구급반)</li> <li>소화/진압반 지원(구조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피 및 소화반 지원</li> <li>응급환자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li> <li>- 응급구조소로 환자 이동 응급조치</li> <li>- 환자 분류 (자체치료/후송)</li> </ul>



③ 화재의 확산 및 소화주간

구분	화재의 확산	화재의 소화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자 중 소화활동이 가능한 인원은 자위소방대 임무 부여 (구급활동 위주 부여)</li> <li>- 건물외부의 안전구역에서 구조/구급반의 임무지원 (건물 내 진입은 제한)</li> </ul>	
지휘 연락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대장에게 지휘권 이양 (화재 및 피해상황 등의 보고)</li> <li>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지휘/보고 체계 및 통신망 유지</li> <li>상황에 따른 각 반의 임무 재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황보고 및 전파 체계의 지속적 확립</li> <li>피해상황 등의 파악</li> <li>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각반의 임무 재부여(수급자의 구급활동에 중점)</li> </ul>
소화 진압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화활동 지원</li> <li>대피/유도반의 임무 지원 (중요물품의 이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화활동 지원</li> </ul>
대피 유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대피활동 지원</li> <li>수급자 및 외부인의 화재현장 접근 통제</li> <li>출입구 및 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 확보</li> <li>피난기구를 이용한 수급자의 대피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자 및 외부인의 화재현장 접근 통제</li> </ul>
구조 구급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급환자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li> <li>- 환자 분류(자체치료/후송)</li> <li>- 응급 환자 후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급환자 구조 및 구급활동 실시</li> <li>- 환자 분류 (자체치료/후송)</li> <li>- 응급 환자 후송</li> </ul>

④ 야간 화재 발생시

구분	최초 화재 발견 시	자위소방대 소집 및 소방대 도착 시까지
최초발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 내 경보 전파</li> <li>- 육성, 발신기 등</li> <li>초기 소화 활동 실시</li> <li>- 투척용소화기, 수동식소화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위소방대 편성표 상의 해당 임무 수행</li> </ul>
연락반 대피 유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기관에 경보전파(119)</li> <li>자위소방대 비상소집</li> <li>화재지점의 인원을 우선하여 대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자를 안전구역으로 대피/유도</li> <li>방화문(방화셔터) 등의 확보로 화재 차단 및 피난로의 확보</li> </ul>
소화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소화 활동 실시</li> <li>- 투척용소화기, 수동식소화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한 소화 활동 지속 실시</li> </ul>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위소방대 소집 완료시 주간 임무에 따른 각 반의 임무 수행</li> <li>- 야간 등의 자위소방대 편성 시 소방활동이 가능한 수급자 반영편성</li> </ul>	

## 5

# 화재 후 복구활동

### 1. 전기 및 가스안전관리

- 전기 배선 및 전열 기구에 다량의 물이 묻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한다.
- 전기 및 가스시설의 이상 유무는 전문 인력에 의해 확인 후 조치한다.
- 전력공급의 재개는 재해 현장의 조치 및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 실시한다.

### 2. 건물 안전관리

- 화재 진화 이후에도 건물 내 잔여 불씨로 인한 2차 화재가 우려되므로 주의한다.
- 화재로 인한 건물의 내력저하로 붕괴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 화공약품 및 유독성 물질에 의한 인체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계인 및 조사원 이외에는 건물 내 진입을 금지시킨다.

### 3. 응급조치 및 의료 활동지원

- 소방대장의 통제에 따라 환자의 후송 및 의료 활동을 실시한다.
- 응급처치는 화재현장과 충분히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4. 화재진화 및 조사활동 지원

- 화재진화 이후에 관계기관의 화재조사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 지원한다.
- 화재조사 시에도 건물 내 진입 및 모든 활동은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른다.

## 6

## 피난준비 및 피난 대응활동

## 1. 피난준비

## ① 피난계획서 작성

- 피난계획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와 근무자에게 교육한다.
- 피난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킨다.
  - 각 실에서 나와 나가는 피난방향
  - 피난유도등과 유도표지의 위치 표시
  - 층별 평면도에 표시된 피난안내도
- 수급자 개인별 피난도우미를 지정하여 훈련한다.

## ② 피난안내도 작성

- 피난안내도를 작성하여 쉽게 볼 수 있는 벽면에 부착한다.
-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의 위치를 표시한다.
  - 각 실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을 화살표로 표시한다.
  -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까지의 거리를 화살표와 숫자로 표시한다. (예 : →20m)
  - 각 층의 시설 평면도를 중심으로 범례를 이용하여 소방시설, 비상구 위치, 피난 기구 등의 위치를 표시한다.
  - 피난안내도는 각 층 또는 동별로 별도 제작하여 배치한다.
  - 그림이나 문자로 구성된 구체화된 안내표식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 사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표식을 활용한다.

## ③ 피난 방송준비

- 대형건축물에 동시에 피난방송을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일시에 움직이므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화재 및 재난이 발생하면 1차로 화재층 및 위층으로 하고, 2차로 화재층 이하 순으로 실시한다.
  - 1차 방송은 화재 발생층과 직상층에 방송한다.
  - 2차 방송은 화재 발생층과 그 직하층에 방송한다.
- 피난방송 실시 후 각 층과 화재의 확산정도에 따라 피난중인 거주자에게 위험지역과 안전지역을 빨리 전달한다.
- 안내방송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어조로 피난자들이 공포감을 느끼지 않도록 침착하게 방송한다.

## 2. 피난 절차

- 피난도우미가 당황하면 피난대상자는 더욱 당황하여 우왕좌왕하게 됨으로 침착하게 행동한다.
- 피난도우미는 피난이 가능한 계단이나 비상통로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피난을 유도하여야 한다.
- 피난도우미는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을 지켜 피난을 유도한다.
  - 담당지역의 근무자에게 피난개시를 명령한다.
  - 해당 피난계단으로 대피를 유도한다.
  - 피난 장애물 및 피난방해 요인을 발굴하여 제거한다.
  - 방화문, 방화셔터 등의 작동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제연설비의 작동여부를 확인한 후 행동한다.
    - 피난자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차단하고 계단으로 유도한다.
    - 각 실의 밀폐장소를 철저히 검색하여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우선 보조하여 피난한다.
    - 피난상황을 수시 종합상황실과 연락한다.
- 피난 후에는 전체 인원을 파악하여 미처 피난 못한 수급자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3. 피난 후 안전관리

- 부상자를 파악하여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한다.
- 응급처치 및 의료활동은 재난현장과 충분히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방활동을 지원한다.
- 수급자가 피난 시 물품을 챙기지 못했다 하여 다시 들어가는 경우 인명사고 발생이 매우 높으므로 건물 내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 화재나 건물붕괴로 인한 폭발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가능한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안내한다.

## 4. 시설유형별 대응절차

### ① 노인복지시설

- 수급자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한 경우 스스로 피난하도록 훈련한다.
- 화재를 발견하면 먼저 남에게 알리고 주변 수급자와 함께 대피한다.

구분	수급자의 특성에 따른 행동절차	
	자력으로 대피가능	행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불가한 경우
최초 화재 발견	•수급자 - 육성, 비상벨, 자동경보 등을 통한 근무자에게 화재상황 전파 •근무자 - 경보설비를 작동하여 건물 내 경보전파 •자위소방대 비상소집 및 유관기관에 화재 상황 통보로 협조 요청	•근무자 - 화재경보 건물 내 신속히 전파 - 다른 근무자의 도움 요청 (자위소방대에 의한 사전 임무지정) •자동경보 시스템의 확충이 중요

구분	수급자의 특성에 따른 행동절차	
	자력으로 대피가능	행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불가능한 경우
초기 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자 :투척용소화기</li> <li>•근무자 :투척용/수동식소화기, 소화설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무자 :투척용/수동식소화기, 물 등</li> </ul>
최초 화재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자 :안전구역으로 이동(자력)</li> <li>•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의 피난 유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무자 :화재실내의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안전구역 또는 복도 등으로 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휠체어 직접 이동 또는 보조인의 도움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침대 등을 직접 이동 시 피난통로의 막힘 현상 등에 주의하여 시설의 특성에 맞게 편성</li> </ul>	
구분	수급자의 특성에 따른 행동절차	
	자력으로 대피가능	행동이 불편하거나 인지불가능한 경우
지휘 연락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재현장 확인 후 자위소방대 임무지시/통제</li> <li>•소방대 도착 시 현재까지 상황전달 및 소방대장에게 지휘권 이양</li> </ul>	
소화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화/진압활동 실시(옥내소화전, 자동소화설비, 소화기 등)</li> <li>•가연물의 제거 및 화재 확산방지 활동(방화문, 방화셔터 등)</li> </ul>	
화재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자 :자력에 의한 안전구역으로 대피</li> <li>•활용 가능한 피난기구 및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사로,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미끄럼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피반 인원편성 시 수급자의 보조 인력으로 임무편성 후 수급자의 대 피활동지원</li> <li>•활용 가능한 피난기구 및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강식 피난기, 구조대, 경사로 (휠체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난기구(구조대, 승강식 피난기 등) 설치 후 수급자 피난유도</li> <li>•피난통로 및 비상구 등의 출입로 확보 후 수급자의 대피유도</li> <li>•피난기구의 설치 및 운용은 시설의 특성에 맞도록 활용 가능한 피난기구를 설치 후 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에는 대피반의 임무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자 대피완료 시까지 구조반의 인원은 최소로 운용하고 수급자의 대 피활동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조/구급장비준비 및 구호조치 장소 확보</li> <li>•응급환자 구호조치 및 환자 분류, 의료기관 도착 시 지원활동</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내용은 화재대응 절차의 참조 및 시설별 특성에 맞도록 추가하여 활용한다.</li> <li>•소방대 도착 시 자위소방대의 임무는 소방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다.</li> </ul>	

②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구분	수급자의 특성에 따른 행동절차	
	자력으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경보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성, 비상벨, 자동경보 등을 통한 근무자에게 화재상황 전파</li> <li>- 119에 화재신고</li> </ul> </li> <li>•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보설비 작동하여 건물 내 경보전파</li> <li>- 119에 화재신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내 화재 경보전파 (육성, 비상벨, 자동경보 등)</li> <li>- 다른 근무자의 도움 요청</li> <li>- 119에 화재 신고</li> </ul> </li> </ul>
최초 화재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보전파 가능한 수급자를 선정하여 초기경보가 가능토록 교육 및 임무를 부여</li> <li>- 근무자의 수가 제한되므로 경보전파는 관할소방서(119)에 실시하고, 유관기관에 대한 경보전파는 소방서의 경보전파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li> </ul>	
초기 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자 : 투척용소화기 등을 이용</li> <li>•근무자 : 투척용/수동식소화기, 소화설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무자 : 투척용/수동식 소화기, 물 등</li> </ul>
대피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급자 : 안전구역으로 이동(자력)</li> <li>•근무자 : 수급자의 피난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무자 : 화재 실내의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안전구역 또는 복도 등으로 대피</li> <li>- 휠체어 직접 이동 또는 보조인의 도움 등</li> </ul>
화재 대응 / 대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난층 등 대피장소를 사전에 선정하여 수급자의 원활한 피난을 유도</li> <li>•수급자가 자력에 의해 대피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한 후, 근무자는 자력으로 대피가 가능한 수급자부터 대피를 유도</li> <li>•소방대 도착 전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화활동 실시(옥내소화전사용)</li> <li>•초기소화가 불가능한 경우 화재실의 문을 폐쇄하고,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대피</li> <li>•소방대 도착 시 현재까지 상황인계(화재장소, 미대피자현황, 환자발생여부 등)</li> <li>•주된 출입문이 화재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비상구 등 수급자가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여 화재로부터 이격시키고 소방대의 도움을 기다림</li> <li>•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장의 통제를 받아 대피 및 구조활동 실시(소방대 도착 후에는 구급활동 위주의 임무를 수행토록 함)</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내용은 화재대응 절차의 참조 및 시설별 특성에 맞도록 추가하여 활용한다.</li> <li>•소방대 도착 시 자위소방대의 임무는 소방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다.</li> </ul>	

# 부록

## 화재 안전관리 매뉴얼

- 01 | 소방시설별 사용법
- 02 | 사회복지시설의 자위소방대 구성
- 03 | 소방교육 훈련 점검표
- 04 | 교육훈련 실시결과 기록부
- 05 | 소방교육과 훈련절차
- 06 | 비상연락망 편성
- 07 | 소방시설 점검
- 08 | 소방시설현황
- 09 | 안전시설 세부점검표

## 01 | 소방시설별 사용법

# 소방시설의 사용법

## 소화기구

### ■ 점검 및 관리 방법



▲ 분말소화기



▲ 이산화탄소 소화기



▲ 할론 소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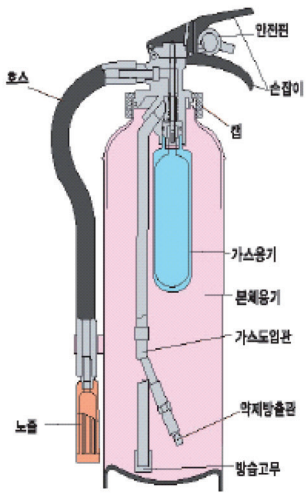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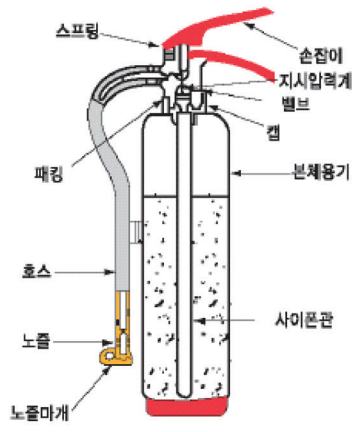
▲ 투척용 소화기

위험요인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말 소화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충압가스의 누설된 상태(압력게이지가 노란색에 위치)로 관리</li> <li>2. 안전핀이 미체결된 상태로 관리 (오조작이 우려)</li> <li>3. 소화기가 식별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li> <li>4. 적응성이 없는 소화기를 설치</li> <li>5. 기준수량이 부족하거나 보행거리를 초과하여 소화기를 비치</li> </ol> </li> <li>• 투척용소화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화기의 수량이 부족하게 설치</li> <li>2. 사용이 불가능한 높이와 장소에 설치</li> <li>3. 능력단위를 미고려한 채 날개 단위로 분산 배치</li> </o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말 소화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압력게이지가 녹색에 위치토록 관리</li> <li>2. 월단위 정기점검 실시</li> <li>3. 소화기 표지 설치 및 식별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li> <li>4.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설치 (A급: 일반, B급: 유류, C급: 전기화재)</li> <li>5. 보행거리: 20M이하마다 설치 설치높이: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li> </ol> </li> <li>• 투척용소화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필요한 수동식 소화기 산출 수량의 2분의 1 이상 설치</li> <li>2. 설치높이: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li> <li>3. 능력단위: 투척용소화기4개(ISET)가 1단위 이므로 단위별로 설치</li> </ol> </li> </ul>



## 분말 소화기

### ■ 작동원리

구 분	가압식 소화기	축압식 소화기
구 성	 <p style="text-align: center;">[가압식분말소화기]</p>	 <p style="text-align: center;">[축압식분말소화기]</p>
작동방식	<p>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 용기와는 별도의 가압용 가스 용기에 충전하여 장치를 하고 소화기 가압용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p>	<p>본체 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질소 등)를 넣은 방식의 소화기</p>
지시압력계	없다.	있다
적용성	소화기 외부에 표시되어 있는 A,B,C급에 따라 적용성이 있음.	

※ 적응화재 표시방법

종 류	내 용	소화기의 표시방법
A급(일반화재)	나무, 옷감, 종이, 고무, 플라스틱 등의 가연물이 타고나서 재가 남는 화재	보통화재용
B급(유류화재)	인화성액체, 가스, 유류 등의 화재로서 타고나서 재를 남기지 않는 화재	유류화재용
C급(전기화재)	통전중인 전기기기 등의 화재	전기화재용

■ 사용방법



▲ 소화기를 들고 화점으로 이동한다.



▲ 소화기 상단의 안전핀을 뽑는다.



▲ 1.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잡는다.  
2. 레버를 힘껏 누른다.



▲ 화점 주위에 빗자루로 쓸 듯이 좌우로 소화약제를 방사한다.

## 투척용 소화기

### 투척용 소화기의 형태



▲ 경질유리 용기

▲ 경질합성수지 용기

### 사용방법

#### • 사용방법



▲ 커버를 벗긴다.

▲ 약제를 꺼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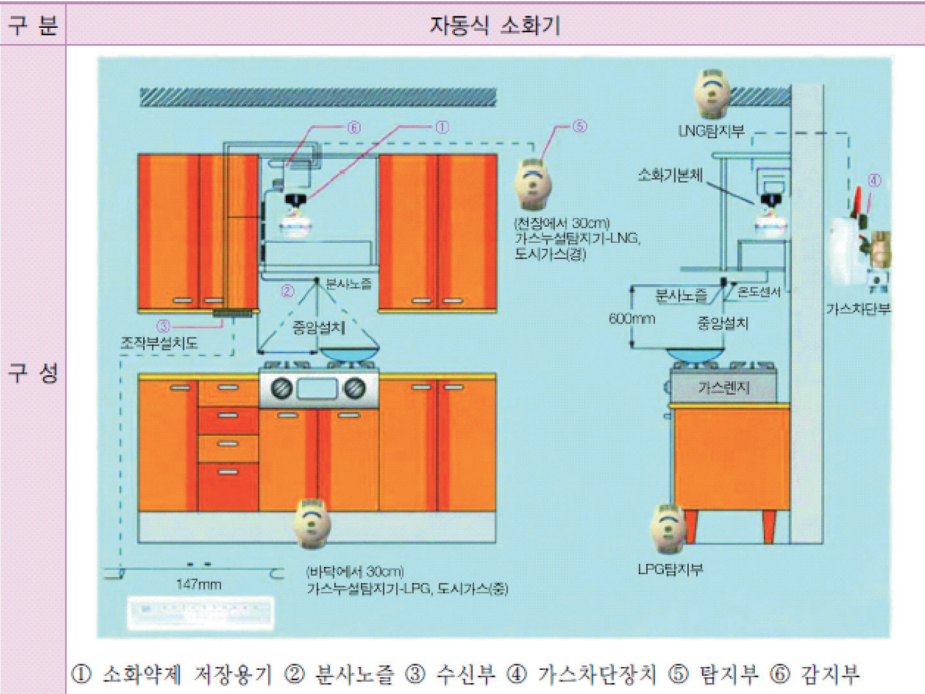
▲ 불을 향해 던진다.

#### • 세부요령

불을 향해 던지는 요령	기름화재 끄는 요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불이 난 곳의 벽 또는 바닥에 던진다. (불속에 직접 던지지 않는다.)</li> <li>2. 타는 물건이 목재 등 딱딱한 것일 경우에는 불속 목재에 직접 던진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름속에 직접 던지지 않는다.</li> <li>2. 기름화재 인근 바닥 또는 벽 등에 던져 소화 약제가 간접적으로 화재부위를 덮도록 한다.</li> </ol>

## 자동식 소화기(주방에 설치하는 소화설비)

### 구 성



### 작동원리

구 분	화재 발생시	가스 누설시
작동 원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지센서가 1차 감지</li> <li>2. 가스차단밸브가 작동하여 가스레인지의 가스공급을 차단하며, 화재경보음이 발생한다.</li> <li>3. 온도가 더욱 상승하면 감지센서가 2차 감지를 한다.</li> <li>4. 수신부에서는 소화약제용기를 개방시켜 소화약제가 방사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정 농도 이상의 가스가 누설되면 가스누설탐지부가 가스누설을 탐지한다.</li> <li>2. 수신부에서는 화재경보음이 발생</li> <li>3. 수신부는 가스차단밸브를 작동시켜 가스의 이동을 차단한다.</li> </ol>

## 화재 수신기

### ■ 점검 및 관리 방법



- ▲ 수신기 정지버튼을 누른 상태로 방치한 경우
- ▲ 화재 오동작시 복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위험요인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 수신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li> <li>2. 오동작시 복구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li> <li>3. 예비전원이 방전된 상태로 방치</li> <li>4. 수신기 주위의 장애물 적재 및 식별되지 않는 장소에 수신기 설치</li> <li>5. 수신기 및 회로 단선시 미보수한 채 장시간 방치로 화재시 사용 불능</li> <li>6. 수신기의 전원을 차단한 경우</li> </ol> </li> <li>• 자동화재 속보설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선(전화선)을 제거한 상태로 관리</li> <li>2. 수신기와 미연동 상태로 자동 경보가 동작하지 않는 상태로 관리</li> <li>3. 전원을 OFF시켜 방치한 경우</li> </o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 수신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든 스위치는 정상 위치로 관리</li> <li>2. 오동작 및 회로 단선시 원인 제거후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관리</li> <li>3. 예비전원 감시램프에 적색등이 들어오는 경우 교체 또는 정비</li> <li>4. 수신기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li> <li>5. 수신기의 주요 기능점검 실시 (회로 도통 및 동작시험, 예비전원시험)</li> </ol> </li> <li>• 자동화재 속보설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재시 수신기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여 자동 경보가 가능토록 관리 (화재의 연동, 유선선로의 구성)</li> <li>2. 전원 및 스위치는 정상 위치로 관리</li> </ol> </li> </ul>

## 자동화재탐지설비

### ■ 점검 및 관리 방법



▲ 적재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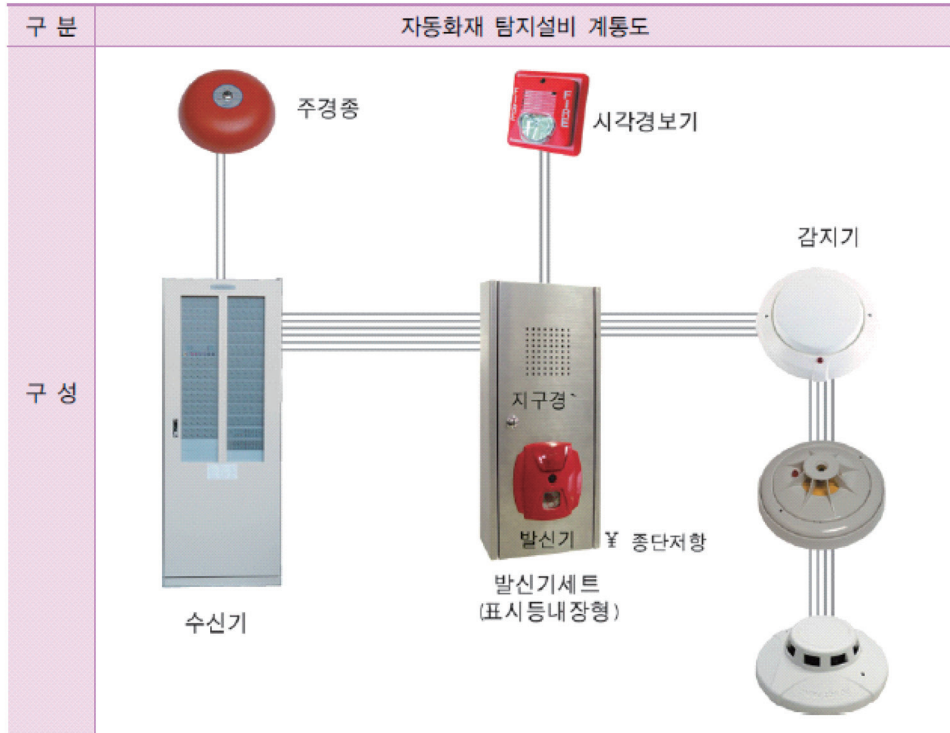
▲ 발신기의 파손을 방지한 경우



▲ 위치표시등의 파손을 방지한 경우

위험요인	개선방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치표시등 회로 단선, 파손 및 탈락</li> <li>2. 발신기의 회로 단선, 누름스위치 파손</li> <li>3. 감지기 회로 단선 및 노후, 탈락</li> <li>4. 지구경종 작동불량 및 선로의 단선</li> <li>5. 발신기앞 적재물의 적재로 식별 불능</li> <li>6. 수신기에서 정지버튼을 눌러 음향 및 시각경보기등이 연동되지 않는 경우</li> <li>7. 인테리어등으로 인한 신규 구획실의 감지기 설치 누락</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관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신기, 위치표시등, 경종, 감지기의 파손, 탈락, 누락여부 점검</li> </ul> </li> <li>2. 작동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지기 : 테스터기를 이용한 점검</li> <li>- 발신기 : 누름스위치에 의한 점검</li> <li>- 지구경종 : 음향 경보 여부 점검</li> <li>- 위치표시등 : 정상 점등 여부 점검</li> </ul> </li> <li>3. 소방시설 앞 장애물등의 적재 금지</li> <li>4. 수신기의 모든 스위치는 정상으로 관리</li> </ol>

구 성



작동 방식

구 분	자동경보방식	수동경보방식
화재의 감지	1. 화재감지기에 의해 자동 감지	1. 발신기의 스위치를 누르는 방법 2. 수신반에서 수동으로 경보하는 방법
경보의 발령	(1) 화재감지기의 화재 감지 또는 발신기의 누름스위치를 누른다. (2) 수신반에서 화재 신호를 수신 (3) 화재지역에 음향으로 경보 발령	
연동설비의 종류	※ 화재감지기 또는 발신기 수동 조작에 의한 화재 신호시 연동하여 작동되는 설비의 종류(설치된 장비의 경우) 1. 음향경보 : 주경종, 지구경종,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2. 경보전파 : 자동화재 속보설비 3. 피난설비 : 유도등 점등(3선식 배선의 경우)	



## 비상구/방화문



### ■ 점검 및 관리 방법



▲ 장애물로 인하여 피난통로가 미확보된 경우



▲ 방화셔터 레일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한 경우

위험요인	개선방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물로 인한 피난통로의 미확보</li> <li>2. 출입문 및 비상구의 잠금장치로 인한 화재시 신속한 피난의 저해</li> <li>3. 방화문에 고임목등을 설치하여 폐쇄 불능</li> <li>4. 화재시 방화문 및 방화셔터가 연동하지 않아 폐쇄되지 않는 경우</li> <li>5. 방화문 및 방화셔터의 파손</li> <li>6. 방화문 및 방화셔터 주변의 물품 적재로 인한 개방 및 폐쇄 불량</li> <li>7. 출입문 및 비상구까지의 피난유도 미실시 (유도등의 미설치 및 파손등)</li> <li>8. 방화셔터 레일등을 파손된 상태로 방치</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화문 및 방화셔터 주위에 물품 적재 금지</li> <li>2. 피난통로상의 물품 및 장애물 등의 제거</li> <li>3. 파손된 방화문 및 방화셔터의 정비</li> <li>4. 피난통로상, 방화문등의 상단에 유도등을 설치하여 위치 식별</li> <li>5. 수신기 스위치는 정상 위치로 관리</li> <li>6. 방화문 및 방화셔터의 정상작동 및 폐쇄 여부 정기 점검 실시</li> <li>7.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방화셔터의 자동 폐쇄 여부 점검(1단강하, 또는 1/2단강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기감지기 동작시 : 방화셔터 1단 강하</li> <li>- 열감지기 동작시 : 방화셔터 2단 강하</li> <li>- 방화셔터 폐쇄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출입문 등의 확인</li> </ul> </li> </ol>



## 구조대

### ■ 점검 및 관리 방법



▲ 구조대 설치장소에 창살과 시건 장치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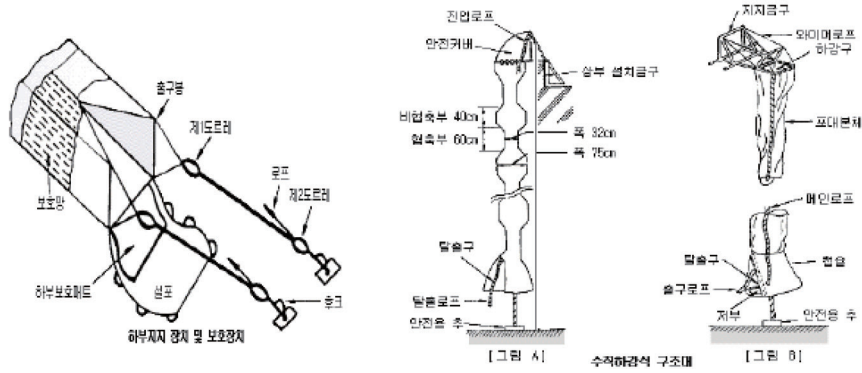
▲ 구조대 주위의 장애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구조대가 올바르게 설치된 경우

위험요인	개선방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난기구 사용장소에 창살등 장애물 설치</li> <li>2. 피난기구 설치 장소 주변 공간 미확보</li> <li>3. 구조대가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경우</li> <li>4. 화재시 적응성이 부적합한 구조대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소한 공간에서 경사하강식 구조대 설치</li> <li>- 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미확보 (협소한 공간, 연못등의 장소, 나무등)</li> </ul> </li> <li>5. 구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개구부가 없거나, 협소한 장소에 구조대 설치</li> <li>6. 구조대의 노후 상태 등의 미점검</li> <li>7. 피난기구(구조대) 설치장소의 식별기구 미설치 (구조대 표지, 피난구 유도등)</li> <li>8. 구조대 사용방법 미부착</li> <li>9. 비상구까지의 이동 통로에 물품 적재</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장소에 구조대 설치</li> <li>2. 주된 출입구와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여 양방향 피난로 확보</li> <li>3. 피난기구 주변 및 통로에 물품 적재 금지</li> <li>4. 피난기구 설치장소에 철창등 장애물 제거</li> <li>5. 구조대는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li> <li>6. 구조대 설치장소에는 구조대 표지와 사용방법을 게시할 것.</li> <li>7. 건물의 특성을 고려한 구조대 설치 (경사하강식 또는 수직하강식)</li> <li>8. 교육훈련을 통한 구조대의 노후 및 파손 등의 점검과 실제 활용가능 여부 검토</li> </ol>

## ■ 구성



▲ 경사하강식 구조대

▲ 수직하강식 구조대

## ■ 사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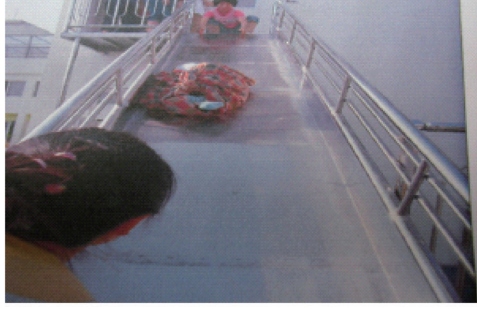

- (1) 구조대의 상자들 들어 창밖의 장애물을 확인 한 후 포대 본체를 천천히 내려 준다.
- (2) 포대 본체를 펼칠 때 비틀림이나 한쪽으로 휘지 않도록 한다.
- (3) 하강전에 착지점의 하부 고정여부를 확인한다.
- (4) 입구틀을 세워 고정시킨 후 발부터 들어간다.
- (5) 통로 안으로 들어가 두 줄을 잡고 대기. 지상의 구조자들이 지지 장치를 붙잡은 상태에서 잡고 있던 두줄을 놓으면 자동으로 몸이 내려온다.
- (6) 두 다리를 벌려 속도를 조절하면서 내려오며 맨살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하강한다.

## ■ 주의사항

1. 구조대를 사용시에는 제조회사의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설치하고 충분히 훈련한다.
2. 구조대는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후크 고리 등의 장소는 사전에 선정하여 놓는다.
3. 하강장소의 후크 고리등이 느슨한 경우 구조대가 느슨해져 추락에 의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한다.

## 미끄럼대/무동력 승강기

### ■ 점검 및 관리 방법

미끄럼대의 설치 및 활용	무동력 승강기의 형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대상 : 영유아 보육시설에 적합</li> <li>2. 경 사 : 25도~35도 이하</li> <li>3. 미끄럼대의 폭 : 50~60cm</li> <li>4. 난간의 높이 : 60cm 이상</li> <li>5. 형 태 : 직선형, 나선형, 반원통형</li> <li>6. 미끄럼대의 최하단부는 약 10cm 정도 이격하여 하강시 충격을 방지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한 생활인</li> <li>- 보조인원의 도움을 받아 피난할 수 있는 생활인</li> </ul> </li> <li>2. 승강기 발판에 양발을 올려놓고 자물쇠 장치를 풀면 안전하게 아래층으로 하강할 수 있다.</li> <li>3. 다시 발판이 자동으로 제자리로 올라가는 형태의 승강기식 피난기구로 동력은 무게추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력이 필요하지 않다.</li> </ol>

## 유도등

### ■ 점검 및 관리 방법



▲ 유도등이 부식되어 점등되지 않는 경우



▲ 장애물로 인한 유도등의 식별이 제한되는 경우



▲ 피난구 유도등이 올바르게 설치된 경우



▲ 통로유도등이 올바르게 설치된 경우

위험요인	개선방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입구 및 피난통로상에 유도등 미설치</li> <li>2. 유도등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작동 불량</li> <li>3. 부적합한 장소에 유도등의 설치로 인한 혼선</li> <li>4. 유도등 램프의 노후시 교체등의 관리 불량</li> <li>5. 분전반등의 위치에서 유도등 전원의 차단</li> <li>6. 커튼등의 장애물로 인한 유도등 식별 불능</li> <li>7. 예비전원의 노후</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도등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출입구 및 비상구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li> <li>2. 유도등의 정상 점등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도등 및 램프의 노후 및 파손 여부 점검</li> <li>- 2선식 배선 : 항상 점등 여부 점검</li> <li>- 3선식 배선 : 화재시 연동하여 작동 여부 점검</li> </ul> </li> <li>3. 전원의 공급 및 예비전원의 정상 여부 점검</li> <li>4. 불필요한 장소에 유도등을 과다하게 설치하여 피난시 혼선을 주지 않도록 조정</li>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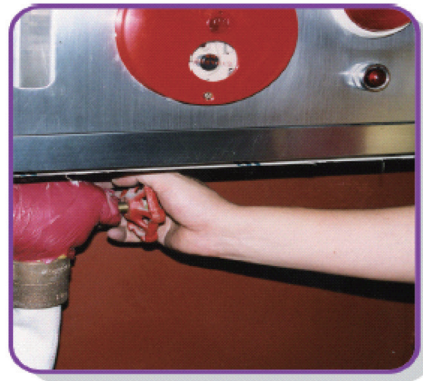
### ■ 사용방법



▲ 소화전함을 연다.



▲ 호스를 전개하여 화점까지 이동한다.



▲ 1. 앵글밸브를 개방한다.  
2. ON/OFF 방식의 경우 ON스위치를 누른다.



▲ 화점에 방수한다.

### ■ 주의사항

1. 펌프가 기동하지 않는 경우 수신반 또는 펌프실의 동력제어반에서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시킬 수 있도록 훈련토록 한다.(펌프가 기동하게 되면 소화전함 상단의 기동표시등이 점등된다.)
2. 방수시 소방호스의 압력이 세므로 두손으로 견고하게 잡는다.
3. 유류 화재시에 소화전을 방사하면 화면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4. 유사시 신속하게 사용이 가능토록 모든 스위치는 정상 상태로 관리하고, 밸브는 폐쇄하지 않도록 한다.

## 스프링클러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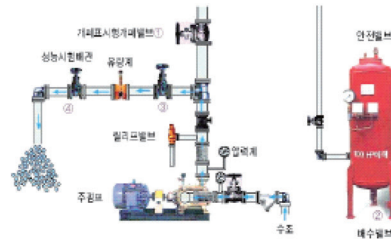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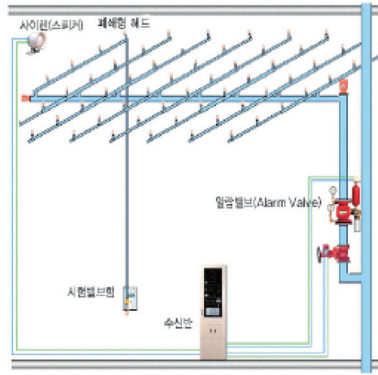
### ■ 점검 및 관리 방법



- ▲ 스프링클러헤드(하향식)
- ▲ 스프링클러헤드(상향식)
- ▲ 알람밸브의 구성 및 명칭

위험요인	개선방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폐밸브를 폐쇄한 상태로 관리</li> <li>2. 유수검지장치 압력스위치의 파손 및 단선</li> <li>3. 개폐밸브 탭퍼스위치의 미설치 및 불량</li> <li>4. 1차/2차측 압력계 불량</li> <li>5. 알람밸브 : 2차측 배관내 압력의 과다</li> <li>6. 준비작동식 : 교차회로 감지기의 단선</li> <li>7. 배관 및 헤드의 파손 및 누수</li> <li>8. 제어반(수신기)내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li> <li>9. 유수검지장치 사이렌의 미설치 및 작동 불량</li> <li>10. 공간 구획으로 인한 헤드의 미설치 및 살수반경의 미달</li> <li>11. 상/하향식 헤드의 잘못된 설치</li> <li>12. 유수검지장치의 오동작 및 미작동으로 인한 2차측 배관으로의 유수 장애</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기적인 외관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관 및 헤드의 파손 및 누수 여부 점검</li> <li>- 개폐밸브의 개방 및 압력계의 점검</li> <li>- 제어반내 스위치의 정상 위치 여부</li> <li>- 헤드의 미설치 및 반경미달 여부 점검</li> <li>- 설치장소에 따른 헤드의 적용성 점검</li> </ul> </li> <li>2. 알람밸브 압력 과다시 말단 시험밸브를 개방하여 압력의 배출</li> <li>3. 감지기 테스터기를 이용한 교차회로 감지기의 점검</li> <li>4. 유수검지장치의 작동 여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수검지장치의 개방 및 작동</li> <li>- 펌프의 자동기동 및 2차측 배관으로 유수, 제어반내 표시 여부 점검</li> <li>- 음향장치(사이렌) 경보여부 점검</li> </ul> </li> </ol>

■ 구성



▲ 계통도

▲ 가압송수장치(펌프)



▲ 유수검지장치

▲ 스프링클러 헤드

## 가스누설경보기

### ■ 점검 및 관리 방법



▲ 가스누설경보기가 미설치된 경우



▲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가 설치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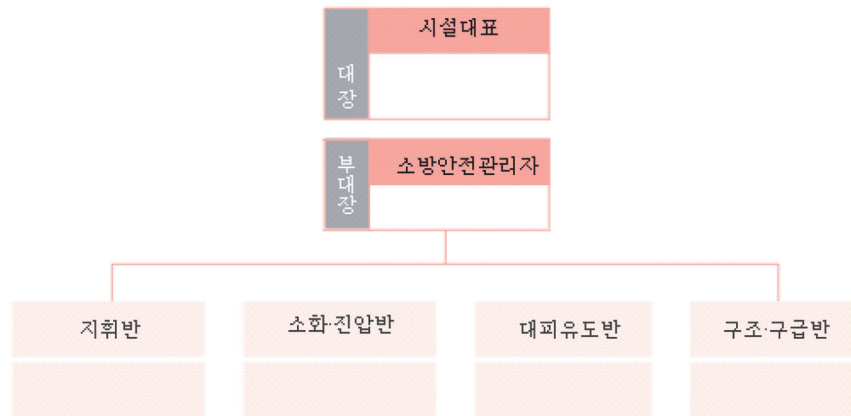
▲ 가스누설경보기의 차단밸브가 설치된 사례

위험요인	개선방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스누설경보기의 미설치</li> <li>2. 가스누설경보기의 전원 차단</li> <li>3. 탐지부의 설치위치 부적합</li> <li>4. 가스누설시 제어반의 음향 미경보</li> <li>5. 가스누설시 자동으로 차단장치의 미작동</li> <li>6. 탐지부의 가스누설 탐지 기능 불량</li> <li>7. 배관등의 가스누설 여부 미점검</li> <li>8. 가스시설 주변의 가연성 물질 방치</li> <li>9. 사용후 가스밸브의 차단 상태 불량</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가스누설경보기 설치</li> <li>2. 제어반의 점검스위치 또는 가스누설 시험을 통해 음향 경보여부 점검</li> <li>3. 가스누설 시험을 통한 차단장치의 작동여부 점검</li> <li>4. 탐지부 설치장소의 적합 여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PG : 바닥면으로부터 30cm이내에 설치</li> <li>- 도시가스 : 천장면으로부터 30cm이내에 설치</li> </ul> </li> <li>5. 제어반의 전원 투입 여부 점검</li> <li>6. 가스시설 주변의 가연성 물질의 제거</li> <li>7. 사용후 가스밸브의 차단 생활화</li> <li>8. 배관등 가스누설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li> <li>9. 가스시설 사용전 환기후 사용</li> <li>10. 주방 후드밸브의 세척 및 이물질 제거</li>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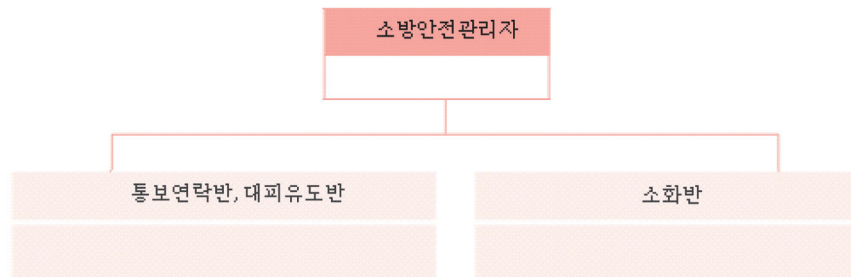


## 02 | 사회복지시설의 자위소방대 구성

### ① 주간 근무시간 기준의 자위소방대



### ② 야간 근무시간 기준의 자위소방대



### 03 | 소방교육 훈련 점검표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우수	보통	미흡	
훈련 전	교육자료 및 기자재의 준비 여부				
	교육훈련 간 다양한 상황 등의 반영여부				
	훈련 시나리오가 자체 특성과 일치하는지 여부				
	자위소방대 각 반의 임무 숙지 상태				
	소방시설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대피 및 응급처치 장소 등의 확보 여부				
	근무요원에 대한 교대조 교육 편성 여부				
	교수요원의 확보 상태				
	교육훈련간 안전 통제 및 안전조치 준비 여부				
	관리가 필요한 생활자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훈련 중	지휘반에 의한 각 반의 임무부여 여부				
	최초 화재 발생 시 경보 전파 수행 여부				
	소화/진압반의 임무수행 상태				
	소화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소화설비 조작 요령 숙지 상태				
	피난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피난기구의 조작요령 숙지 및 대피 유도 신속성				
	피난동선에 밀집되지 않고 신속한 대피 여부				
	상황별 훈련 참가자의 대처능력 상태 (연기발생 등)				
	구조/구급활동 및 응급처치 상태				
	방화설비의 조작 및 실제 활용 여부				
	생활자 및 근무자의 교육 훈련 적극 참여 여부				
훈련 후	교육훈련 결과 보완사항 파악 여부				
	사용한 기자재 및 소방시설 등의 정위치 여부				
	생활자 및 근무자가 훈련 후 정상위치로 복귀 여부				
	훈련 후 강평				

## 04 | 교육훈련 실시결과 기록부

소방 대상물	기관명		소방안전관리등급	□공공 □1급 □2급
	소재지			
	구조			
관계인	기관 또는 법인명(성명)			
	주소			
소방 안전 관리자	성명		선임일자	
	직위		자격구분	
훈련·교육일시				
교육·훈련 구분	□자체훈련 □합동훈련	교육 구분	□자체교육 □그밖의 교육	
훈련 통제관	(서명 또는 인)	교관	(서명 또는 인)	
교육 강사	(서명 또는 인)			

### 훈련자위소방대 행동요령

- 화재예방요령, 화재 시 대처요령, 소방시설사용 훈련, 피난유도 계획

### ※ 작성요령

- 훈련통제관 : 소방기관과의 합동훈련 시 소방대원의 지휘관을 기재합니다.
- 교육·훈련 실시사항 : 훈련교육의 일시·장소·대상인원 및 내용의 개요 기재

## 05 | 소방교육과 훈련절차

진행순서	내용/진행자	참가인원	장소/ 준비물
1	개회사	책임자	
2	훈련시작 전 확인사항	책임자	
3	훈련의 목적설명 (생략가능)	사회자	
4	훈련시작 (최초화재 발생)	훈련 통제관/ 지휘자	방송장비, 메가폰, 연막탄, 메시지 (무작위)
5	최초화재 대응	최초 목격자	
	화재 현장 확인 (화재의 규모 등 판단) 자위소방대 비상소집 및 각 반의 임무 통제한다.	지휘반	
	자위소방대 비상소집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한다.	연락반	
	화재장소에 대한 소화활동을 전개(소화기, 옥내소화전등) 한다.	소화반	
	화재장소에 근접한 인원부터 대피활동 실시한다.	대피반	
	다른 반의 임무지원 후 응급환자 발생 시 해당 임무를 수행한다.	구조반	
6	화재확장	훈련 통제관/ 지휘자	
7	화재대응	각반별	
	소방대 도착 시 소방대장에게 현장 인계 후 지휘/통제를 받는다	지휘반	
8	화재의 확산	훈련 통제관/ 지휘자	
9	소방대장의 통제로 임무 지속 수행	각반별	

진행순서	내용/진행자	참가인원	장소/ 준비물
10 화재의 확장	훈련메시지4호(화재의 확장으로 인한 진입 불가) 본 건물○층○호에 발생한 화재가 확산되어 건물 내 잔여 인원은 신속히 대피하고 건물 내 진입을 통제하며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훈련 통제관 지휘자	
11 각 반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 내 진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반드시 소방대장의 통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li> <li>•각 반은 구조 및 응급활동 위주의 임무를 수행한다.</li> <li>•건물 내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소방대를 통해 구출 활동을 전개하고 소방대장의 지원 요청 시 이에 따른다.</li> </ul>	각반별	
12 화재의 진화	훈련 메시지5호(화재의진화) 본 건물○층○호에 발생한 화재가 진화되었습니다.	훈련 통제관/ 지휘자	
13 강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훈련 후 교육훈련 결과기록부를 작성한다.</li> <li>•훈련 간 보완할 사항 및 장려사항 등을 도출하여 차후 훈련에 반영한다.</li> <li>•훈련장비 등을 정위치하고 각자의 임무에 복귀한다.</li> </ul>	책임자	

## 06 | 비상연락망 편성

### ① 관계 기관

구분	기관명(상호)	전화번호	비고
관할소방서	○○소방서		긴급전화:119
	○○119안전센터		
의료기관	○○병원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		
관할 지자체	○○구청		
경찰서	○○경찰서		
상급기관			
기타			

### ② 자위소방대

구분	성명	연락처	구분	성명	연락처
소방 안전관리자			대피유도반		
지휘반			구조/구급반		구분
					기관장
소화/진압반			기타		

## 07 | 소방시설 점검

### ① 주간 근무 시 점검사항

구분	확인할 사항	비고
시설책임자 (대장/부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 보고체계 확립(119, 시설점검업체, 의료기관 등)</li> <li>• 안전시설 등에 대한 총체적 확인</li> </ul>	
소방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시설의 정상유지 및 작동여부 확인</li> <li>• 불필요한 화기시설의 차단 및 사용의 통제 (주방, 보일러실, 전열기구, 기타 화기 사용 장소)</li> <li>• 출입문 및 비상구의 유사 시 사용 가능 여부 확인</li> <li>• 피난통로 확보 및 장애물 등의 비치 여부 확인</li> </ul>	
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경보 실패 시 대응 요령 확인 (발신기, 비상벨 등)</li> <li>• 화재 발생요인의 제거 및 감시(담뱃불 등)</li> <li>• 화재 시에 대비한 각 개인별 임무숙지(자위소방대 임무참고)</li> </ul>	
시설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문 및 비상구까지의 진입로 확인</li> <li>• 불필요한 화기 등의 사용금지</li> <li>• 비상벨, 투척용 소화기 등의 위치 및 사용법 확인</li> </ul>	

### ② 야간/휴일근무 시

구분	확인할 사항	비고
경보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보고 체계 확립(119, 시설 점검업체, 의료기관 등)</li> <li>- 자위소방대, 관계기관의 비상 연락망 확인</li> <li>• 자동경보 실패 시 대응요령 확인(발신기, 비상벨 등)</li> </ul>	
안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신기 및 자동 화재 속보 설비의 조작스위치 정상여부 확인</li> <li>• 불필요한 화기 시설의 폐쇄 및 차단여부 확인 (주방, 보일러실, 전열기구, 기타 화기 사용 장소)</li> <li>• 출입문 및 비상구의 유사 시 사용 가능 여부확인</li> <li>• 피난통로 확보 및 장애물 등의 비치 여부 확인</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작업 및 화기 등 사용 여부 인수인계</li> <li>• 화재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 계획의 수립 및 확인 (화기 사용장소, 흡연장소 등)</li> </ul>	

### ③ 도시지역에 위치한 시설의 점검

구분	확인할 사항	비고
시설책임자 (대장/부대장) / 소방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차 진입로 확보 여부 확인(진입로, 주차전용 공간)</li> <li>• 피난로의 활용 가능여부 확인(밀집 여부, 피난동선)</li> <li>- 다양한 피난 동선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li> <li>• 피난기구의 실제활용 가능 여부 확인(훈련을 통해)</li> <li>• 수급자 대피장소의 확인 및 확보</li> <li>• 하나의 건축물 중 일부 층만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li> <li>- 해당 건물의 소방 안전관리자와 협조하여 소방시설의 작동, 피난로의 확보 및 피난계획 등의 수립</li> </ul>	

④ 농어촌역에 위치한 시설의 점검

구분	확인할 사항	비고
시설책임자 (대장/부대장) / 소방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 가능한 시간계획의 수립</li> <li>— 관계기관 도착 전까지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한 임무에 따라 자위소방대의 편성 및 임무부여</li> <li>• 산불 등의 화재에 따른 피난 등의 안전대책 수립</li> <li>• 응급처치에 따른 구호약품 등의 확보</li> </ul>	





## 09 |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 ]월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 ① 소화설비

구분	점검사항				조치 여부
		우수	보통	미흡	
소화 기구	소화기 및 사용 방법 표지의 설치 누락 여부				
	화재유형에 따른 적응성 있는 소화기 비치 여부				
	소화기의 약제량 적합 여부 및 부식 등의 유무				
	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 상태 및 사용방법 설치 여부				
	자동식 소화기의 정상 작동 여부				
옥내/외 소화전 설비	소화전 위치표시 등의 정상적인 점 등 여부				
	가압 송수장치가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소화전 주위의 장애물 등은 제거되어 있는가				
	수원의 정량 확보 및 개폐밸브의 개방 여부				
	배관 및 밸브류 등은 부식 및 누수가 없는가				
	소화전내 호스 및 관창의 비치 유무				
	수원 및 배관 주위의 동파 위험 여부는 없는가				
스프링 클러 설비/ 물분무/ 포소화 설비	수원의 정량 확보 여부				
	배관 및 밸브류 등은 부식 및 누수가 없는가				
	각 개폐 밸브의 열림 상태 유지 여부				
	수원 및 배관 주위의 동파 위험여부는 없는가				
	가압 송수장치가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헤드 주위의 살수 장애물은 없는가				
가스계 소화설비	유수 검지장치 및 경보장치는 정상으로 작동 하는가				
	시설에 적합한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가				
	칸막이 등으로 인한 헤드설치 누락 여부				
	포소화설비의 경우 약제량 정상 여부				
	저장용기는 방호 구역 이외에 설치되어 있는가				
가스계 소화설비	저장용기 약제량은 규정량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기동장치, 음향장치, 방출표시 등의 정상 작동여부				
	방호구역 내 자동 폐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수신기 조작 스위치는 정상위치에 있는가				
	제어반 내 예비 전원의 확보 여부				

② 경보설비

구분	점검사항				조치 여부
		우수	보통	미흡	
자동화재 탐지 / 속보설비	수신기 주위에 조작 상 장애물은 없는가				
	수신기 조작 스위치는 정상 위치에 있는가				
	수신기 예비 전원 용량은 정량 확보되어 있는가				
	회로도통 시험 시 단선으로 표시되는 곳은 없는가				
	칸막이 등으로 인한 감지기 설치 누락 여부				
	감지기 및 발신기의 정상 작동여부				
	표시등 및 경종의 정상 작동여부				
	시각 경보기 설치 누락 및 정상 작동여부				
비상 방송 설비	속보설비는 화재와 연동하여 작동 하는가				
	전원 및 스위치는 정상으로 위치하고 있는가				
	퓨즈의 단락 및 계전기 등의 기능은 정상인가				
	화재 시 연동하여 자동으로 방송이 출력 되는가				

③ 피난설비

구분	점검사항				조치 여부
		우수	보통	미흡	
유도등 / 유도표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 누락 여부				
	유도등은 항상 점등되어 있는가(2선식)				
	유도등 및 램프의 노화 및 파손 등의 유무				
	유도등 비상 전원의 정상 유무				
비상 조명등	거실, 복도, 계단 등에 비상조명 등 누락 여부				
	비상 조명등의 비상 전원 적합 여부				
	휴대용 비상조명 등의 설치 누락 여부				
	휴대용 비상조명 등의 정상 작동 여부				
피난기구	적용성 있는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는가				
	피난기구의 고정 장치는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피난상 유효한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는가				
	피난기구의 사용에 장애가 되는 장애물은 없는가				
	피난기구 사용방법 등은 설치되어 있는가				
	피난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식별은 용이한가				
	피난기구는 실제 활용이 가능한가				

④ 소화용수 및 소화활동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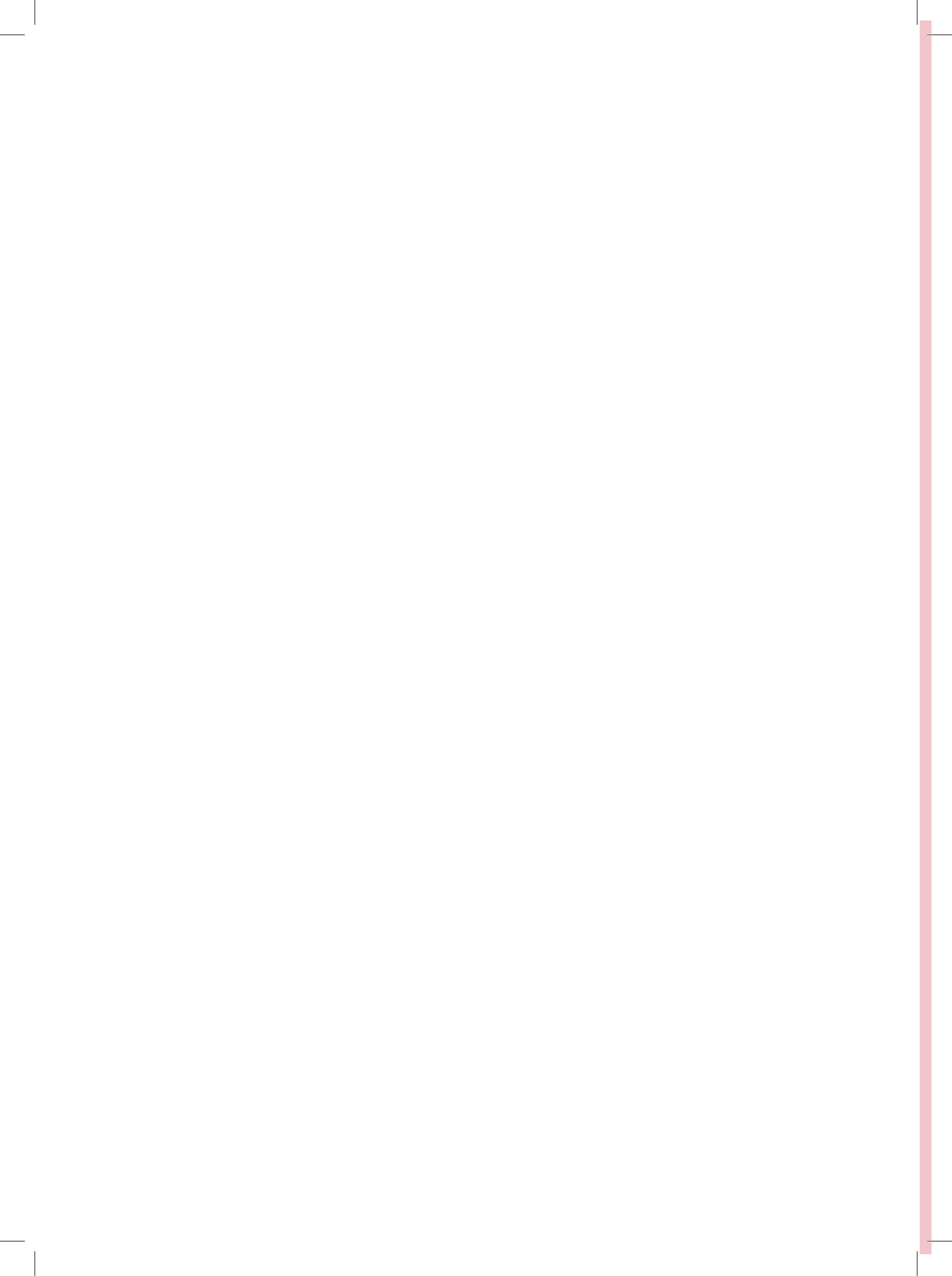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여부
		우수	보통	미흡	
소화용수 설비	소화수조의 흡수관 투입구 및 수원 확보 여부				
	상수도 소화전 주위의 장애물 제거 여부				
	송수구 주위의 소방차 접근 가능 여부				
제연설비	전동기 등의 정상작동 여부				
	화재 시 방화문 및 방화셔터의 자동 폐쇄 여부				
	급/배기구 주위의 장애물로 인한 장애 여부				
연결송수 / 살수설비	송수구 주위의 소방차 접근가능 여부				
	연결 방수 기구함 내 소방호스 및 관창의 비치 여부				
	송수구 주위에 송수 구역 일람표의 비치 유무				
	칸막이 등으로 인한 살수 헤드의 누락 여부				
	헤드 주위에 살수에 장애를 주는 장애물은 없는가				
비상 콘센트	비상 콘센트에 전원의 정상 공급 여부				
	보호함 상부에 적색표시 등 점등여부				
	비상 콘센트 표지 설치 여부				

⑤ 방화 / 기타시설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여부
		우수	보통	미흡	
방화 셔터	화재 시 연동하여 자동으로 폐쇄되어 작동하는가				
	방화셔터 주위에 적재물은 제거되어 있는가				
출입문 / 비상구	비상구가 열쇠 등으로 폐쇄되어 있지 않은가				
	출입문 및 비상구 주위에 적재물은 제거되어 있는가				
	출입문 등이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인가				
	피난로가 주방 등을 경유하고 있지 않은가				
	층별, 면적별, 용도별 방화구획은 되어 있는가				
	방화문은 화재 시 폐쇄가 용이한가				
기타시설	복도 및 계단에 피난상 장애가 되는 적재물은 제거되어 있는가				
	소방차 진입로 및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비상용 승강기의 정상 작동 여부				
	내장재는 불연화 또는 방염처리 되어 있는가				

⑥ 전기·가스 등 화기 사용시설

구분	점검사항				조치 여부
		우수	보통	미흡	
전기 시설	정격 및 허용 전류에 맞는 개폐기 사용 유무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누전 및 단락된 곳은 없는가				
	안전관리자에 의한 안전관리 점검 유무				
	누전차단기의 정상 작동 여부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전열기구가 과열 등으로 위험하지 않은가				
	전열기구 등의 주위에 가연물은 없는가				
	누전경보기 회로 점검 시 이상 유무				
가스시설	가스누설 경보기 또는 자동식 소화기의 설치 유무				
	화재 시 가스누설 경보기가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는가				
	화재 시 가스누설 차단밸브는 자동으로 폐쇄되는가				
	가스시설 주위에 가연물이나 화기 등은 없는가				
	안전관리자에 의한 안전 관리 점검 유무				
	배관 및 화기시설의 가스누설은 없는가				
유류 /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자에 의한 안전관리 점검 유무				
	유류시설 주위에 가연물 및 화기 등은 없는가				
	화재 시 적응성 있는 소화시설은 설치되어 있는가				
	경고 표시 및 외부인의 출입 통제 여부				
기타시설	유류탱크의 파손 및 누설은 없는가				
	보일러실 내 가연물 및 인화성 물질의 제거 유무				
	보일러실은 방화 구획 되어 있는가				
	보일러실에 대한 소화설비 설치 및 대책 수립 유무				
	용접 등의 작업 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는가				
재해방지	담뱃불씨등사용장소에대한안전대책수립유무				
	침수지역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책의 수립 유무				
	건축물 주위의 배수로 확보 유무				
	주위 토사붕괴 등의 위험 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 유무				
	건축물의 균열 또는 변형 등의 발생 유무				
	건축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융기 현상 발생 유무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 차량 지정 유무				
	응급환자 발생 시 유관 기관 연락체계 수립 유무				
응급구조 물품 및 약품의 비치 유무					



1-2

# 안전사고 관리 매뉴얼

1	전기안전	65
2	가스안전	78

본 매뉴얼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매뉴얼(SOP)을 편집한 자료입니다.





# 1 전기안전

## 1. 전기안전 일반사항

### 1. 목적

본 매뉴얼은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의 수급자와 관리자가 감전 · 합선 · 누전 등과 같은 전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응활동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수칙을 규정하여 시설 수급자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전기 정의

- 전기(電氣)란 영어로 일렉트리시티(Electricity) 그리스어로 일렉트론(Electron), 호박이라는 보석에서 유래되었다.
- 전기가 갖는 에너지에 의해서 인체에 전격(쇼크)을 주며 또 누전에 의해서 화재를 발생시킨다.
- 가연성가스, 증기, 분진 등이 존재하는 구역에서는 전기불꽃(스파크)이나 발생한 열이 점화원이 되어 폭발을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
- 전기안전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전기재해의 방지는 물론이며,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하고 사용하는 제반 행위를 말한다.

### 3. 재난 특징

- 전기는 위험의 감지가 어렵고, 발생 시 사망률이 다른 재해에 비해 높다.
- 높은 전압에 의한 사고는 전문적인 전기취급자가 저전압(600V 이하)의 경우는 일반작업자가 재해를 많이 입는다.
- 전도나 추락 등의 2차적인 재해를 동반한다.
- 전기에 대한사용자의 지식이 낮아 전기재난 발생 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 전기는 인체에 10mA 정도의 양이 흐르면 신경근육이 마비되고, 15A(암페어) 초과한 전류가 인체에 흐르면 심장이 정지된다.

### 4. 적용범위

-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정전 등 전기장치에 이상이 생길 때 적용한다.
- 전기 누전이나 단락(합선)과 같은 사용 부주의에 의한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해 활용한다.
- 가정용 · 사무실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시 적용한다.
- 옥내 · 외용 전기장치의 안전점검업무 수행 시 적용한다.

## 2. 전기재난 유형별 안전관리

### 1. 재난 유형

전기사고 유형	정의	예방
누전	전류가 흘러야 할 정상적인 도선으로 흐르지 않고 전선 피복이 손상되어 전기가 새고 있거나 손상된 피복으로 다른 전기기계, 전기기구, 금속재료 등으로 흘러가는 현상	가정에 있는 모든 전기 스위치를 끈 후 배전반의 전력량계가 작동하면 누전이 있는 것으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누전 발생 시 자동으로 전기가 차단 되도록 함.
합선	과전류로 인한 열의 발생으로 전선피복이 녹아 양극과 음극으로 된 두전선이 맞닿은 상태로 이때 스파크와 불꽃이 동시에 일어나 고열이 발생	콘센트에 문어발식 배선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노후된 배선의 교체, 과전류 발생 시 전기를 차단하는 정격용량의 퓨즈 또는 차단기를 설치
감전	전기가 누전되어 흐를 때 사람이나 동물이 전기에 접촉되어 전류가 인체에 통하게 되어 전기를 느끼는 현상	- 전기기기 및 배선 등 충전부 노출금지 - 누전차단기 설치 - 전기기기 스위치 조작 금지 - 젖은 물기 손으로 전기기기 접촉금지 - 안전기는 반드시 정격퓨즈 사용 - 불량제품이나 고장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
감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 전원스위치를 내리고 감전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관찰 · 환자의 의식여부호흡심장정지출혈 등을 확인하여 공호흡심장마사지지혈 등의 조치를 취함		

### 2. 위기경보

- 누전전류 발생 시 누전감지기에 의한 경보가 울리도록 설치한다.
- 많은 콘센트가 꽂혀 있는 경우 과전류가 흐르면 자동 차단되도록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한다.
- 감전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에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시설 내 노출된 전선에 접근하지 않도록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시설 주변의 고압전선이 지나는 곳에 접근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 3. 안전관리 방향

#### ①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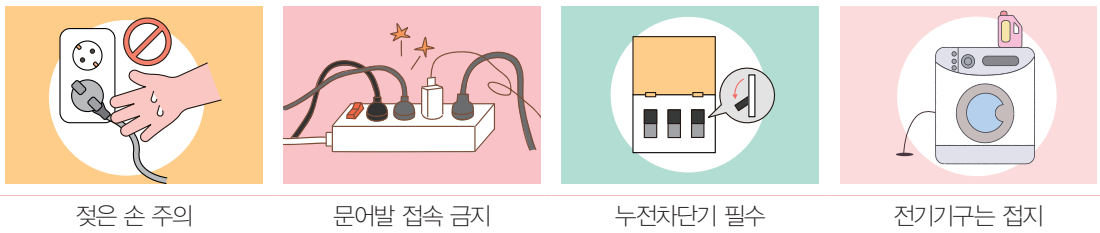
- 시설 수급자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전기로 인한 재해를 줄인다.
- 사전 점검과 계획된 예방활동으로 전기재해 발생을 줄인다.

#### ② 방향

- 수급자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로 전기의 위험성을 제거한다.
- 관리자를 통한 철저한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활동을 통해 시설 내 재해를 최소화 한다.
- 재난 발생 후 신속한 복구활동을 통해 빠르게 정상화하고, 재발방지에 주의한다.

### ③ 전기안전 기초

- 젖은 손은 감전의 위험이 크므로 주의한다.
- 전기 기구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누전차단기의 이상 유무는 동작시험으로 확인한다.
-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하고, 뽑을 때에는 플러그를 잡고 뽑아야 한다.
- 불량 전기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세탁기 등 습기가 많은 창고의 전기기구는 반드시 접지하여야 한다.



젖은 손 주의

문어발 접속 금지

누전차단기 필수

전기기구는 접지

## 3. 전기 화재 종류 및 예방대책

### 1. 전기화재 발생원인

- 단락과 과전류에 의해 발화된다.
- 누전이나 전기불꽃에 의해 발화(저압누전, 고압누전)된다.
- 접속부의 과열이나 절연열화 · 탄화 등에 의해 발화된다.
- 지락·낙뢰·정전기 등에 의해 발화된다.

### 2. 전기기구별 화재

- 전열기로는 전기스토브, 요리용 전기가열기 등이 화재를 일으킨다.
- 전기기기는 형광등, 할로겐히터, 스포트라이트, 냉난방기, 전기냉장고, 연마기, 백열등 스탠드, 전자레인지, 네온등, 텔레비전, 컴퓨터(본체), 환기장치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 전기장치는 콘덴서, 모터, 트랜스, 분전반, 배전용 변압기, 제어반 등에서 주로 화재가 발생한다.
- 배선 및 배선기구에서는 금속 접촉부 과열, 전선단락, 트래킹(절연물의 탄화), 전원코드 등에서 발생한다.
- 전원코드 : 사무기구나 가구에 눌러 찌그러지거나 구부러져 전선 피복과 심선이 손상되어 발열이나 단락의 원인으로 진행·발생한다.
- 히터부 : 할로겐 히터에 의한 열 축적으로 의류 등에 접촉하여 화재를 발생시킨다.
- 기구 내 배선 : 반 단선에 의한 발열이나 금속 접촉부 과열 등으로 발화한다.
- 안정기 : 형광등 안정기 내부의 절연노화 때문에 발열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진다.

- 기판부 :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본체의 단락 및 구조 불완전으로 발화한다.
- 콘덴서부 : 경년 등의 노후화로 화재가 발생한다.
- 트래킹 : 플러그 구멍 절연물 위에 젖은 먼지 등이 부착된 상태로 전류가 흘러 소규모 방전으로 불꽃이 일어나 절연물 표면에 Graphite(흑연)가 생겨 화재로 발전한다.
- 전기설비기기 : 유지 관리 부주의, 취급 부주의, 부실공사, 설치위치의 오류, 인위적인 기구의 취급 부주의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다.

#### 4. 전기화재 예방대책

- 분진이 많은 곳은 과열로 화재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분진방폭형 기기를 사용한다.
- 조명용 전선은 면적이 0.75mm<sup>2</sup> 이상인 코드나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 네온사인인 네온전선을 사용하며 지지점간 이격거리는 1m 이내로 하고, 전선 상호간격은 6cm 이상을 떨어뜨린다.
- 습기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4. 전기안전 대비활동

#### 1. 전기설비 및 주변상태 점검

- 태풍이나 호우경보 등이 발령되면 과거 침수된 곳의 누전차단기를 점검한다.
- 강풍이 예상되면 전기설비와 관련 있는 시설물을 미리 점검한다.

#### 2. 침수대비 비상장비 확인

-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는 시설 내 변전실이나 배수장비 등을 점검한다.
- 시설내의 모터나 전원플러그 등을 점검하여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 3. 정전대비 사전준비

- 시설의 실내외에 노출된 전선이나 전기기기를 확인한다.
- 정전을 대비하여 랜턴, 양초 등을 사전에 준비한다.
- 정전되면 TV가 작동되지 않으므로 건전지용 라디오를 준비한다.

#### 4. 위험요인별 안전수칙

##### ① 위험요인

- 부재 시 전열기구의 스위치를 끄지 않은 상태로 둔다.
- 개폐기 및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와 전열기구 및 차단기 등에 먼지가 쌓여도 그대로 방치한다.

- 플러그와 콘센트의 접촉 불량으로 합선의 원인을 제공한다.
- 노후된 전선의 단락 및 늘어진 전선의 위험성을 느끼지 못한다.
- 비규격품의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의 과열 및 정격용량의 퓨즈, 차단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낙뢰를 대비한 접지시설을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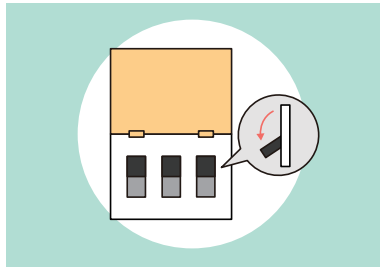
② 수칙

- 전열기구에 ON/OFF때 표지를 붙여 생활화하고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한다.
- 누전차단기는 월 1, 2회 정도 작동유무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 플러그는 콘센트에 정확하게 꼽아야 하며 플러그 제거 시 전선 부위를 잡아당기지 않는다.
- 노후된 전선은 교체하고 늘어진 전선은 정리하여 감전의 위험을 제거한다.
- 규격 제품을 사용하되 난방방식은 개별방식보다는 중앙방식을 선택한다.
- 정격 용량 및 검정된 안전한 차단장치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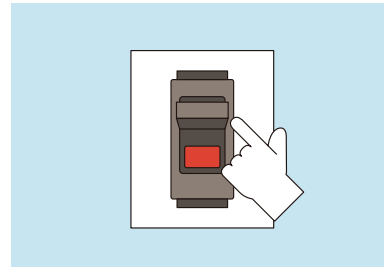
## 5. 전기안전 대응활동

### 1. 우리 시설만 정전된 경우

- 현관 및 벽면에 있는 옥내 배전반의 누전차단기와 개폐기 동작여부를 확인한다.
- 차단기가 내려가 있을 경우에는 차단기를 올려준다.



가정용 차단기



안전 차단기

### 2. 차단기를 올려도 바로 동작돼 다시 내려갈 경우

- 옥내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므로 다시 차단기를 올려보고,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올라갈 경우는 가전기기를 하나씩 콘센트에 접속한다.
- 단, 특정 가전기기를 접속할 때 차단기가 동작하여 떨어질 경우, 가전기기가 누전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이므로, 가전업체에 A/S를 의뢰한다.

### 3.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경우

- 옥내 전등 및 콘센트 회로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옥내 배전반의 누전 차단기와 개폐기를 모두 내리고, 메인 차단기인 누전차단기를 올린다.
- 만약 분기 개폐기가 4개 있는 경우에는 분기 개폐기를 하나씩 올려보고, 특정 분기 개폐기를 올릴 경우 누전차단기가 동작되었다면, 특정 분기 개폐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로 분기 개폐기 회로만을 내려놓고 다른 개폐기는 모두 올린다. 누전차단기가 동작하는 분기 개폐기는 누전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로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경우 옥내 전등 및 콘센트 회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다.(한국전기안전공사 긴급출동서비스에 연락 : 전화번호 1588-7500)



차단기를 순차적으로 올리고 내려가면서 작동상태 점검

### 4.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 폭우로 인한 가옥침수가 예상될 경우에 누전차단기를 차단한다.
- 인입 개폐기 또는 안전기(두꺼비집)를 열어 전기의 공급을 차단한다.
- 정전발생 시 전열기, 전기스토브, TV, 전자레인지, 컴퓨터 등을 끈다.
- 뉴스나 라디오를 통해 재해 상황을 청취한다.

### 5. 재난 발생 후 행동요령

- 침수된 가전제품은 수리 후 전기를 공급한다.
- 펌프나 양수기에 전기 연결 시 물에 잠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 물이 있는 위치에서 전기를 만지지 않는다.



물 있는 곳에선 전기 접촉금지



침수된 가전제품 수리 후 사용

## 6. 전기기기의 상황별 화재 예방활동

### ① 접속부분이 느슨해져 과열로 발생하는 화재예방

- 문어발식 배선을 하지 않는다.
- 연장 코드는 허용 전류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 플러그를 꽂았을 때 플러그가 느슨한 콘센트 및 테이블タップ을 교환한다.
- 코드와 코드를 연결할 때에는 비전문가에게 맡기지 않는다.
- 스위치를 켰을 때 전원이 깜빡이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에게 점검 및 수리를 의뢰한다.

### ② 배선 쇼트(단락)로 발생하는 화재예방

- 코드 위에 가구 등을 놓지 않는다.
- 꺾여 구부러진 상태나 묶은 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연장 코드 등은 스테이플로 고정하지 않는다.

### ③ 트래킹으로 발생하는 화재예방

- 정기적으로 플러그를 빼고 먼지를 제거한다.
- 트래킹현상을 방지하는 플러그 및 부품으로 교환한다.

### ④ 절연노화로 발생하는 화재예방

- 오랫동안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일상적으로 점검한다.
- 점검결과 이상이 있으면 사용을 멈추고 전문가에게 점검 및 수리 의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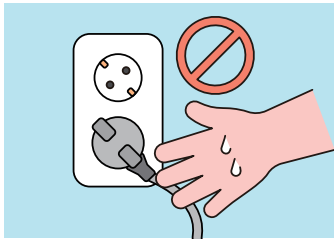
### ⑤ 단선상태에서 발열로 생기는 화재예방

- 플러그를 뺄 때는 코드 부분을 잡고 뽑지 않는다.
- 연장코드 위에 가구 등을 놓지 않는다.
- 꺾여 구부러진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다.

## 6. 수급자 전기안전수칙

### 1. 시설수급자 안전 지키기

- 전기 콘센트가 헐거우면 접촉불량 되어 합선이나 화재위험성이 높아진다.
-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코드를 꽂아쓸 때 위험하다.
- 가전제품을 만질 때 찌릿함을 느끼면 누전되고 있으므로 주의한다.
- 어린이 감전사고 90% 이상이 콘센트에 젓가락을 넣어 생기므로 주의한다.
- 위험한 고전압에 접근은 금한다.
- 물 묻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한다.
- 난방용 콘센트는 적정 용량에 맞게 사용한다.
- 난방용품은 가급적 같은 시간대에 1개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 전기장판, 히터 등의 난방용품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다.
- 옷장, 이불, 소파 등의 가연성 물질 가까이에서는 난방용품 사용을 금한다.
-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은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가동한다.
- 난방용품 구입 시에는 KS 또는 KC 등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한다.
- 난방용품 전선이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플러그는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 됐는지 확인한다.
- 가습기는 될수록 콘센트나 기타 전기제품과 거리를 두어 사용한다.
- 가위, 칼 등으로 전선을 절단하지 않는다.
- 전선줄을 잡아당기지 않는다.



물 묻은 손으로 전기기기 만지면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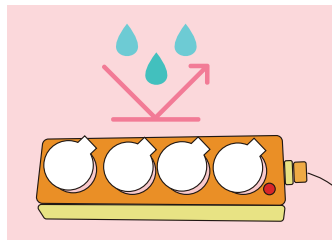
차단기 정상작동 확인은 전기안전 지키기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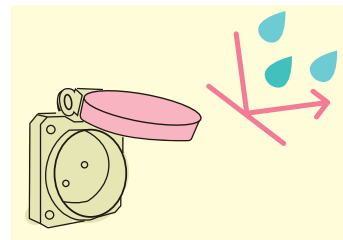
어린이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는 사고가 1위



과다한 콘센트 연결은 화재와 직결



방수형 멀티 콘센트



커버가 있는 방수형 콘센트



## 2. 시설 관리자 안전 지키기

전기안전관리 작업 시의 마음자세는 항상 평정을 유지하고 신중하게 작업에 임한다.

- 전기안전관리 작업 위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 더위로 신체에 땀이 났을 때는 감전사고의 우려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 작업장소의 조명, 환기, 소음은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작업 복장은 간편하고 단정하며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착용한다.
- 전선작업 시는 반지, 손목시계, 금속밴드 등을 반드시 떼고 작업에 임한다.
- 개방된 차단기나 개폐기는 작업 중임을 표시하거나 잠금장치를 한다.
- 전로 개방 시는 고압 고무장갑을 착용하며 정전확인용 사용전압에 맞는 검전기를 사용한다.
- 고압 및 특별고압의 작업 시는 정전 후 개방된 전원 측 전로에 단락 접지용구를 설치한다.
- 어떠한 경우라도 전기 공급상태에서 작업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다.
- 정전작업 시는 작업범위를 명시하여 출입금지구역 및 로프 등을 설치하여 작업장소에 타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 주상작업이나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 시는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주의한다.

## 7. 전기안전 점검하기

### 1. 전기기기 점검관리

#### ■ 난방기구(전기난로)

##### ① 관리 및 문제점

- 콘센트에 플러그가 잘못 꽂혀 과열이 발생한다.
- 난로 주변의 가연물 방치 및 공간 미확보로 위험공간을 만든다.
- 근접한 거리에서 사용으로 인한 화상의 우려가 높다.
-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열의 축적 및 화재로 발전한다.
- 전기장판을 과도하게 접거나 구부리는 경우 합선의 원인이 된다.
- 난방기구에 빨래를 건조시켜 화재발생 가연물을 제공한다.
- 선풍기 모터 등 발열 부분의 먼지를 제거하지 않아 화재를 유발한다.

##### ② 개선방안

- 콘센트에 플러그가 잘 맞도록 꽂는다.
- 난방기구 주변에는 가연물을 제거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조치 한다.
- 멀티탭 등의 정격전류를 확인하고 되도록 1콘센트에 하나의 전열기구 사용을 생활화 한다.

- 난방기구는 허용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장시간 사용을 금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한다.
-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에는 보호덮개를 부착하고, 보호되지 않은 전선이나 불필요한 전선은 정리하여 노출되거나 늘어지지 않도록 한다.

■ 가전용품

① 관리 및 문제점

- 전력소모가 많은 제품의 문어발식 사용으로 과열된다.
- 세탁기, 난방기, 전자렌지, 에어컨 등을 하나의 멀티탭 등으로 연결 사용하여 과열로 화재원인이 된다.
- 하나의 간선에 여러 대의 가전제품을 연결하여 과열된다.
- 환기 및 통풍이 되지 않는 장소나 좁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설치하여 관리가 소홀하게 되어 위험성을 갖는다.
- 실외기 먼지 제거 등 청소를 하지 않아 전선 노후와 먼지 • 빗물에 의한 합선 등을 유발한다.
- 담배꽂초 등이 먼지와 열에 의해 발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 연결배선의 노후 및 절연불량이거나 에어컨의 장시간 가동에 의해 발열된다.
- 옥외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로 인한 온도 상승은 발화원인이 된다.
- 에어컨과 실외기의 사용용량 상이한 경우 과전류를 흘려 위험하다.

② 개선방안

- 전기기기는 환기나 통풍이 잘 되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다.
- 에어컨은 사용 전, 후로 실외기를 청소한 후 사용한다.
- 노후된 연결배선은 교체하고, 에어컨 용량에 부합한 실외기를 사용한다.
- 건물 및 주변에서의 흡연 및 화기를 통제한다.
- 에어컨은 장시간 사용을 금지하고 50분 사용 시 10분 정도 냉각시킨다.
- 실외기 상부에 차광시설 설치로 직사광선에 의한 온도상승을 방지한다.

■ 전기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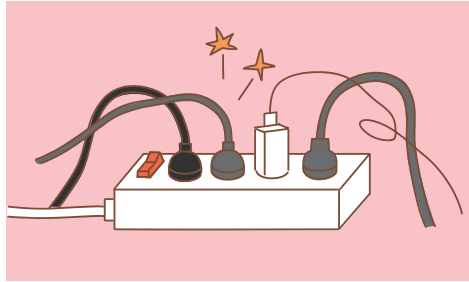
① 설치의 문제점

- 무분별한 문어발식 콘센트의 사용으로 멀티탭이 정격전류 범위를 초과한다.
- 젖은 상태에서 전기기기 및 콘센트를 사용한다.
- 전기플러그가 헐렁하게 콘센트에 꽂힌 채 사용을 계속한다.
- 미사용 콘센트에 대한 보호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위험하다.
- 콘센트를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먼지가 누적되어 가연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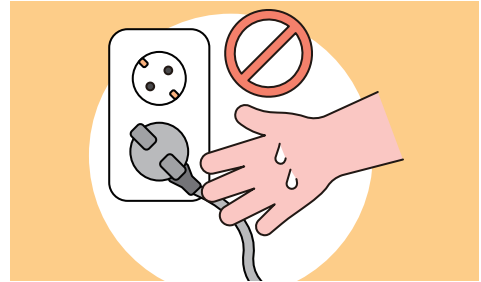
② 개선방안

- 멀티탭 정격전류를 확인하고 전기제품과 비교 후 여유율을 두고 사용한다.

- 습기가 있는 곳이나 젖은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 플러그가 느슨하게 꽂힐 경우 접촉 불량으로 인한 과열로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다.
- 미사용 콘센트 및 멀티탭은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사용을 제한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 콘센트의 인입구는 마른 걸레 등으로 먼지 등을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



문어발식 콘센트의 사용 사례



젖은 상태에서의 콘센트 사용

## 2. 배전관 · 전선의 점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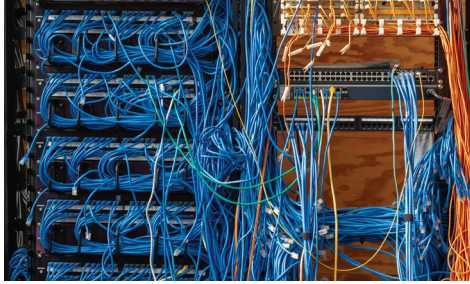
### ■ 배전선

#### ① 관리 문제점

- 사용하는 전선과 미사용 전선이 혼재되어 용도와 위치가 분명치 않을 때 위험하다.
- 용량에 맞지 않는 차단기가 설치되거나 배선용, 누전용 차단기를 작동하지 않을 때 위험하다.
- 전선 끝부분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여 전선이 옥외나 실내에 노출되어 있으면 누전 위험이 있다.
- 배전반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경고문구를 부착하지 않아 일반인 출입을 허용할 때 위험하다.
- 전등/전열기구 등을 연결할 때 무분별하게 전선을 연장하면 위험하다.
- 전열기구와 전선 접속부가 느슨하거나 접속 상태가 불량하면 위험하다.
- 차단기 등 전선접속부의 단자가 느슨하게 풀린 경우 위험하다.

#### ② 개선방안

- 사용하지 않는 전선을 제거하여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 용량에 맞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차단기 시험을 실시한다.
- 각 배전반 및 분전반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이용인의 접근을 통제한다.
- 각 차단기 및 접속부의 단자는 단단하게 조이고, 항상 풀려있는지를 확인한다.
- 전선은 실내 또는 옥외의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관 등에 인입하여 피복의 손상을 방지한다.
- 노후된 전선은 교체한다.
- 전기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미사용 전선에 대한 마감처리가 미흡한 상태



옥외에 노출된 전선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 8. 전기 안전관리자 업무활동

### 1. 안전관리 업무조직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지휘명령계통 및 연락계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조직을 구성한다.
- 시설 근무자가 안전관리의 운영을 총괄 관리한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안전관리의 직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직위에 있는 자를 선임한다.
- 안전관리의 분장과 관련되는 직위계층의 직명, 담당업무의 구분, 직무권한 지휘명령계통 및 연락계통을 작성한다.

### 2.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 전기안전관리자는 책임자를 보좌하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의 감독 의무가 있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의 감독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직무범위

직무내용	구분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보조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1. 서 정한 전기설비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	•지시, 기록 및 관리	•지시이행, 관리보조 등

직무내용	구분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보조원
2 전기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및 확인	•교육 내용 작성, 교육 실시 확인	•교육실시
3 전기 안전 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순회점검, 자체 정기검사 및 업무 감독	•순회점검 자체검사실시
4 전기 설비의 운전 및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운전 및 조작방법 확정교육	•운전 및 조작 실시 또는 지시감독
5 전기 설비의 안전 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기록 방법 등 확인	•기록 및 그 기록의 유지
6 공사 계획의 인가 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공사 계획서 검토 및 수정 작성	•공사 계획서 작성 보조
7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가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의 설치변경 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전력 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있는 감리원의 업무수행 - 공사계획, 공정표 검토 - 설계도서 검토, 확인 - 공사적정 시행 확인 - 사용자재 규격 적합성 검토, 확인	•안전관리자 보조
8 전기 설비의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 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 관리 규정의 작성	•전기 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검토 - 공사계획 신고 - 사용 전 검사 신청	
9 전기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응급 조치 요령 훈련 -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책수립	

## 2

# 가스안전

### 1. 가스안전 일반사항

#### 1. 목적

본 매뉴얼은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의 수급자나 관리자들이 시설에서 사용하던 가스의 누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고, 가스 누출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응활동을 통하여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시설 수급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한 가스안전관리 매뉴얼이다.

#### 2. 가스 정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 땅속에 유기물이 묻혀 오랜 시간 동안 압력과 열·화학작용 등을 통해 생성된 에너지를 말한다.

#### 3. 재난 특징

- 폭발 및 질식이나 중독위험이 있다.
- 불씨가 주어진다면 쉽게 점화하여 폭발성 화재로 변한다.
- 폭발은 가스농도가 일정량 이상 포함된 경우 발생한다.(폭발범위는 LPG 2.1~9.5%, LNG 5~15%)

#### 4. 적용범위

- 시설 내의 실내나 실외에서 가스가 누출되었을 경우 적용한다.

#### 5. 재난유형과 경보

##### ① 재난유형

- 시설에서 사용하는 LNG나 LPG 등 연료용 가스가 누출되면 화재로 인한 폭발 위험성이 높다.
- 이황산가스나 염화수소와 같은 독성 가스는 누출되면 인명피해를 가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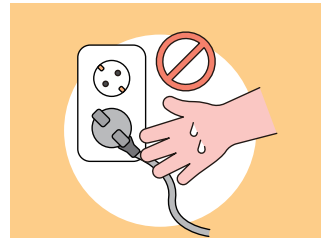
##### ② 위기경보

- 연료용 가스가 누출되면 가스누설경보기를 통해 경보를 발령한다.
- 시설 주변에 위치한 산업체나 위험물취급소에서 누출되는 가스의 누설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소방서, 경찰서 등)에 즉각 신고하여 후속조치를 받는다.

- 누설된 가스는 완전히 제거한 후 시설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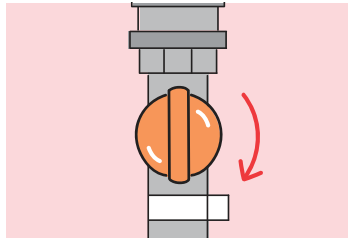
가스취급소에 신고합니다



전기스위치를 만지지 마세요



환기를 시킵니다



밸브를 잠급니다



담배,ライター 사용을 금지합니다

## 6. 가스안전사고

### ① 형태 : 중독, 질식, 화재폭발

- 중독 : 연소가스에 의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이 가장 많으며, 일산화탄소는 무색 · 무취 · 무미의 가스로 누출상태를 판단하기 어렵고, 공기 중에 50ppm까지 허용한다.
- 질식 : 가스 누출로 산소농도가 18% 이하로 떨어지면 호흡이 곤란하다.
- 화재와 폭발 : 가스가 누출되면 연소반응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고, 급격한 가스 누출은 폭발로 이어진다.



CO<sub>2</sub> 중독



가스질식



가스폭발

### ② 가스안전 목표

- 시설 수급자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스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기나 가스저장소 등을 수시 점검한다.
- 시설 주변에 있는 가스저장소나 산업체가 사용하거나 보관중인 가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긴급 사태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 ③ 가스안전 방향

- 가스 누출에 따른 위험성에 대하여 교육하고, 가스 누출 시 긴급 수행하여야 할 대응활동에 대한 예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다.
- 가스기구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기기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가스 누설 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 가스누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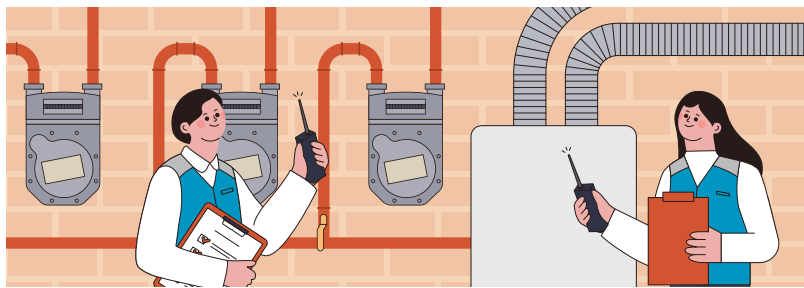
## 2. 가스안전 예방활동

### 1. 예방 및 홍보

- 시설의 운영자나 관리자는 가스에 대한 안전의식 재고를 위해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해 가스안전에 대한 예방과 홍보를 실시한다.
- 가스용기의 보관 및 관리 실태를 점검 · 확인한다.
- 가스를 이용하는 연소기구 주변에서 가스의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 2. 일상점검으로 발생 억제

- 검지기나 발포성 용액 등으로 가스누출을 점검하여야 한다.
- 가스연소기의 상태와 안전장치 및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 가스사용 시에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창문의 개방 및 연소기 작동 시에 환기팬이 연동되는지 확인한다.
- 정압기의 압력 기록지 교체, 필터 차압계 눈금 등을 확인한다.



정기적으로 가스점검 실시

보일러실 배기통 점검

### 3. 시설 수급자 교육

- 관리자는 가스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비계획을 확인하고 안전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관리자는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인원에 대한 가스안전의 중요성과 관리방법 및 재난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 가스용기 및 연소기기별 현황을 종합하여 점검·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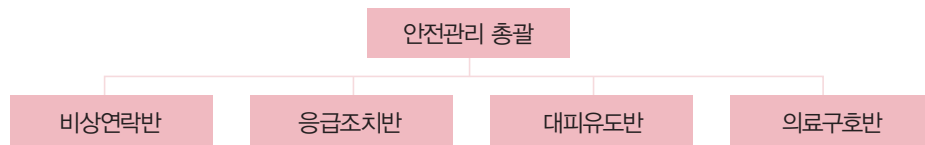
취급소와 안전공급계약

#### 4. 응급조치 조직과 임무

##### ① 조직구성

- 가스가 누출되어 피해가 예상될 때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한다.
- 구성된 조직은 정기적으로 임무를 숙지토록 하기 위해 훈련과 교육을 실시한다.

가스누출 응급조치를 위한 조직구성도



##### ② 조직원 임무

지위	비상시 임무
안전관리 총괄자	상황발생시 각 반의 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처리에 대한 지시를 한다.
비상연락반	신속 정확하게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통보 및 지원요청을 한다. (○○ 빌딩 정압기실 가스배관, 플랜지 연결부에서 13시 00분부터 가스가 누출하고 있습니다)
응급 조치반	가스밸브차단, 누출부위 확인, 고무튜브 등으로 누출부위를 응급조치하고 화재 시 살수 등의 조치를 한다.
대피 유도반	자동차의 진출입을 금지시키고, 비상구 등을 확인하여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 대피방향은 바람의 풍향을 참조하여 사고장소의 후방 지역은 바람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전방 및 측방지역은 바람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대피 유도시킨다.
의료 구호반	직장 내 의무실을 맡으며 인공호흡 실시, 화상에 대비하여 의약품 등을 준비하도록 한다.

#### 5. 가스용기 점검 및 현황

##### ① 가스용기 점검

- 가스용기는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 보관한다.
- 빈 용기는 창고 등에 무분별하게 보관하지 말고 가스용기 설치장소에 보관 후 용기 업체에서 수거

토록 조치한다.

구분	위치	가스종류	사용수량	최대보관수량	점검책임자
가스용기	본관옥외후면	LPG	1	2	
	별관측면	LPG	1	2	

② 연소기기 사용현황

-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기본적인 소화시설을 설치한다.
- 가스누설경보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기구, 수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한다.
- 가스시설 주변에는 가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주변 공간을 확보 후 사용한다.
- 환기 및 통풍이 가능토록 하고, 가스 사용 시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한다.

구분	위치	연소기기종류	가스종류	사용시기	점검책임자
가스 설비	1층주방	가스렌지	도시가스	조리시	
		가스스토브	도시가스	동절기	
	지하보일러실	가스보일러	도시가스	상시	
	2층보일러실	가스보일러	도시가스	상시	

③ 가스시설 표준설치도

- 표준 설치도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제어부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④ LPG 가스용기 확인

- 가스용기에 표시된 각인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 가스용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⑤ 가스배기 방식

- 가스 누출에 대비하여 배출 방식을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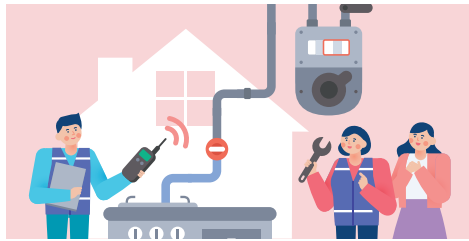
⑥ 이동식 부탄연소기 구조

- 이동용 부탄가스 연소기 구조를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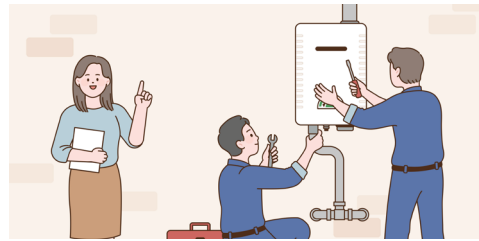
3. 가스안전 대비활동

1. 사용 전 주의사항 - 환기

-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연소기 주변을 비롯한 실내에서 특히 냄새를 맡아 가스가 새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한다.
- 연소기 부근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아야 한다.
- 콧, 호스 등 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스 밴드로 확실하게 조이고, 호스가 낡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즉시 새것으로 교체한다.
- 연소 기구는 자주 청소하여 불꽃 구멍 등에 음식찌꺼기 등이 끼어있지 않도록 유의한다.



정기적으로 가스점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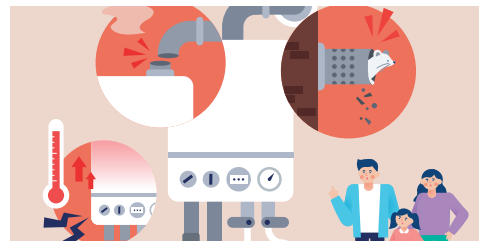
보일러실 배기통 점검

2. 사용 중 주의사항 - 불꽃 확인

- 가스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연소기에 부착된 콧은 물론 중간밸브도 확실하게 잠그는 습관을 갖는다.
- 장기간 외출 시에는 중간밸브와 함께 용기밸브도 잠그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가스계량기 옆에 설치되어 있는 메인밸브까지 잠근다.
- 가스를 다 사용하고 난 빈 용기 안에는 약간의 가스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뚜껑을 닫은 후 화기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정기적으로 가스점검 실시



보일러실 배기통 점검

### 3. 정상 시 누설점검

- 가스가 새었을 때는 냄새로 누출을 쉽게 알 수 있으나, 적은 양이 누출되는 경우나 후각기능에 장애가 있으면 누출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사용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되는지 여부를 자주 점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된다.
- 누출점검 방법은 간단해서 가스가 누출될 위험이 있는 부위에 비눗물이나 점검액을 발라 기포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 점검할 때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방용 액체세제를 물과 1:1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비눗방울이 잘 일어나도록 한 다음 붓이나 스펀지에 묻혀서 호스의 연결부분 주위에 발라 비눗방울이 생기면 누출로 판별한다.
- 누출을 발견하면 용기밸브나 메인밸브를 잠그고 판매점 등에 연락하여 보수를 받은 후 다시 사용해야 한다.
- 비눗물 점검은 요일을 정해놓고 수시로 실행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 4. 가스안전 대응활동

### 1. 재난발생 시 조치

#### ① 긴급조치

-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는 화기사용을 금지하고 누출부위를 막는다.
- 저장탱크의 배관 및 용기 집합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에는 밸브를 닫고 주변의 화기사용을 금지시킨다.
- 저장탱크 및 용기 집합대에서 안전밸브가 방출되는 경우에는 모든 가스 사용을 중지하고 주변의 화기 사용금지와 함께 출입을 통제한다.
- 인화되었을 경우는 주변 용기에 화염이 10분 이상 휩싸이면 폭발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람을 대피시킨다.

#### ② 가스를 흡입했을 때

- 독성은 없지만 가스를 대량으로 흡입하면 산소결핍을 일으키므로 신선한 공기가 통하는 장소로 옮긴다.
- 가스 흡입으로 호흡이 곤란한 때는 인공호흡, 산소흡입 등을 실시한다.

#### ③ LPG로 동상을 입은 경우

- 갑자기 따뜻하게 하지 말고 냉수 등으로 서서히 따뜻하게 한다.
- 환부는 가제 등으로 보호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 의류가 얼어서 떼어내기 어려울 경우는無理하게 떼어내지 말고 그 주위부분을 잘라내도록 한다.

## ④ 화상 입은 경우

- 깨끗한 물로 30분 이상 식히고 가능한 빨리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 화상을 받은 부위의 물집 등을 터트려서는 안 되고 환부를 가제 등으로 보호한 후 즉시 치료를 받도록 한다.

## 2. 가스누출 시 응급조치

- 가스공급을 차단하고 환기한다.
  - 가스냄새로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하면 먼저 연소기의 점화극과 중간밸브, 용기밸브를 잠궜서 가스공급을 차단하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누출된 가스를 밖으로 몰아내고 신선한 공기로 환기 시킨다. LPG의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방바닥으로 가라앉으므로 침착히 빗자루 등으로 쓸어내듯 환기시킨다.
- 가스 누출 시 전기기구 사용은 절대 안 됨
  - 가스가 누출되어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 등을 사용하면 스파크에 의해서 점화되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기구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판매점이나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조치
  - 가스 누출 시 주변에 알려져 도움을 받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한다. 이렇게 한 후, LPG 판매점이나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다시 사용한다.

## 3. 종류별 위해(危害) 시 응급조치

## ① LPG · 도시가스 경우

## ㉠ 흡입했을 경우

- 독성은 없지만 가스를 대량으로 흡입하면 산소결핍을 일으키므로 신선한 공기가 통하는 장소로 옮긴다.
- 호흡이 곤란한 때는 인공호흡이나 산소흡입 등을 실시한다.

## ㉡ LPG로 동상 입은 경우

- 갑자기 따뜻하게 하지 말고 냉수 등으로 서서히 따뜻하게 해야 한다.
- 환부는 가제 등으로 보호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 의류가 얼어서 떼어내기 어려울 경우는 무리하게 떼어내지 말고 그 주위부분을 잘라내도록 한다.

## ㉢ 화상을 입은 경우

- 깨끗한 물로 30분 이상 식히고 가능한 빨리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 화상을 받은 부위의 물집 등을 터트려서는 안 되고 환부를 가제 등으로 보호한 후 즉시 치료를 받도록 한다.

## ② LPG(액화석유가스)

LPG는 공기보다 무거운 폭발성 가스이므로 가스누출 시 쉽게 체류하여 인화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 저장탱크(소형)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 탱크본체에서 가스가 소량 누출되는 경우 화기사용을 금하고 누출가스를 확산시키고 누출부위를 일시적으로 막는다.
- 탱크본체에서 가스가 대량 누출된 경우는 사용을 중지하고 부근의 화기 및 출입을 금지하고 누출부위를 응급조치 한다.
- 즉시 조치를 할 수 없을 경우는 소화하지 않고 살수장치를 가동시켜 탱크를 냉각하며 화재를 제어한다.

### ㉡ 저장탱크 배관 및 용기 집합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 즉시 주밸브를 잠그고 주변의 화기사용 및 출입을 금지한다.
- 검지기, 발포성 용액으로 누출부위를 확인하여 고무튜브 등으로 응급조치 한다.
- 밸브와 용기의 부착부, 조정기 부착부, 호스 및 관 연결부 등에서 누출이 되는 경우는 용기밸브를 잠그고 누출부위를 더 조이거나, 패킹을 넣고 다시 조임한다.

### ㉢ 저장탱크(소형) 안전밸브에서 방출되는 경우

- 신속히 사용을 중지하고 주변의 화기사용 및 출입을 금지한다.
-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통풍시킨다.
- 내부압력이 상승된 경우이므로 살수하여 냉각한다.

### ㉣ 인화되었을 경우

- 신속히 사용을 중지하고 당해 용기 또는 다른 용기에 살수한다.
- 용기나 소형저장탱크 전체가 화염에 10분 이상 휩싸여 가열되는 경우는 폭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을 대피시킨다.

## ③ LNG(액화천연가스)

### ㉠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 신속히 주 밸브를 잠그고 주변의 화기사용 및 출입을 금지시킨다.
- 연소기 사용을 중지한다.
- 소량 누출일 때는 검지기 또는 발포성용액으로 누출부위를 확인하여 고무튜브 등으로 응급조치한다.
- 대량누출일 경우는 주변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

## ㉠ 정압기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된 경우

- 정압기 전단측 주 밸브를 신속히 차단한다.
- 안전밸브 작동으로 가스가 방출되는 경우 화기사용 및 출입을 금지하고 사람들을 신속히 대피시킨다.

## ㉡ 인화되었을 경우

- 신속히 주 밸브를 잠그고 소화기나 물을 사용하여 화기를 진압한다.
- 사람들을 대피시킨다.

## 6. 가스안전 복구활동

### 1. 가스누출 실은 완전환기 후 사용

- 가스가 누출된 실내나 가스 저장소 등은 모든 가스가 외부로 모두 환기되었는지 확인 후 업무를 시작해야 안전하다.
- 누출 가스 중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에 가라앉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바닥부분의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무색·무취의 가스인 경우 일반적으로 환기 후 잔류가스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주의하여 점검한 후 사용해야 한다.

### 2. 장마철 침수지역의 복구활동

- 도시가스 및 LPG 시설은 모두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LPG 시설의 경우 가스시설이 유실되거나 가스용기 자체가 물에 잠기게 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 가스렌지 및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복구할 때는 진흙과 같은 이물질질을 깨끗한 물로 씻어 완전히 말린 후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고 사용한다.
- LPG 용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조정기가 물에 젖었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LPG 용기에 부착된 밸브를 돌릴 경우, 조정기 내부의 고무패킹이 찢어지면서 제 기능을 못하여 용기 내부의 고압가스가 그대로 방출되거나 고압가스가 호스를 이탈시켜 가스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정기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 물에 젖었던 가스보일러를 점검받지 않은 채 전원 플러그를 꽂으면 보일러 내부의 기기판이 타버리는 것은 물론이며, 안전장치가 타서 가스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침수 후 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에 물이 찬 것을 모르고 보일러를 가동시킬 경우, 보일러에서 나오는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또 보일러 자체가 그을러 보일러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일러사의 A/S를 받고 나서 사용해야 한다.

## 7. 사고사례 확인으로 본 가스안전관리

### 1. 가스시설 부적합 사고

#### ① 퓨즈 콕 미설치

- 호스 이탈 등으로 인한 가스가 다량 유출시 차단기능이 없어 화재, 폭발사고의 위험이 높다.  
– 퓨즈콕은 가스의 다량 유출시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호스 3m 이상 사용 또는 호스 4T형 이음,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 호스를 길게 늘어뜨려 사용하는 경우 사람들의 왕래에 의한 충격 시 쉽게 이탈될 수 있으며, 호스 T형 이음 사용 시 연결부위 이완으로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 ③ 중간밸브나 전단배관 미설치 사고

- 염화비닐호스는 찢어지거나 밸브에서 빠지기 쉬워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 중간밸브는 사용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④ 용기 옥내 보관 및 통풍 불량

- 용기를 통풍이 불량한 장소(옥내)에 설치할 경우 가스누출 시 체류되어 폭발의 위험이 있다.  
– 실외에 용기보관실을 설치하고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에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원활한 곳에 보관한다.

#### ⑤ 미검사 가스용품 사용

- 미검사 가스용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접화가 되지 않거나 불이 꺼졌을 경우 가스를 차단하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초래한다.  
– 연소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필증이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 2. 가스용기 관리불량 사고

#### ① 배관조정, 도색불량, 환기불량 장소 설치

- 고정이 불량할 경우 흔들림 등에 의해 배관간의 조임이 느슨해져 가스가 누출될 수 있다.  
– 도색이 훼손된 경우, 부식으로 배관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 벽속 등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스누출 시 체류되어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 배관은 도색하여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단단히 고정하여 설치한다.

#### ② 전용 보일러실 미설치, 환기불량 장소 설치, 급·배기 불량

- 보일러 설치장소가 잘못되었거나 환기 또는 급·배기 불량에 의해 누출되어 실내로 유입된 보일러 폐가스에 인체가 노출될 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뇌의 손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다.  
– 가스보일러는 반드시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 상태 및 급·배기 상태를 확인한다.



③ 용기 넘어짐 방지 불량

- 용기가 넘어질 경우 용기에 부착된 조정기, 호스 등이 이탈되어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 체인 등으로 고정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④ 압력조정기 유량 또는 압력 부적합

- 가스렌지 등 연소기에 불이 점화되지 않아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다.
  - 연소기에 적합한 유량 및 압력을 확인하고, 적합한 조정기를 사용한다.

⑤ 마감조치 미실시

- 가스배관에 마감 조치가 안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용자가 밸브를 개방하여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나 폭발을 초래할 수 있다.
  - 배관설치나 연소기 철거 시 배관 말단에 마감 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사한 후 사용 전에 마감 조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8. 일반 가스안전수칙

### 1. 공통 안전수칙

- 연소가스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 가스 연소기구는 수시로 청소하여 음식물 찌꺼기에 의해 불꽃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 가스누출 점검 확인은 비눗물이나 주방세제를 사용하여 호스 주변에 발라 거품이 일어나는지 확인한다.
- 가스 누설 시 선풍기나 전기제품을 활용하여 제거할 경우 정전기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기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 LPG 가스의 호스 연결부는 수시로 확인한다.
- 이사 때 가스 연결은 반드시 전문가를 불러 연결토록 한다.
-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이나 연통 구멍 등의 배기관 관련 부분은 수시로 확인한다.
- 휴대용의 경우 가스 누설여부를 확인한 후 점화하여야 한다.
  - 휴대용 가스렌지에 큰 그릇을 올려놓고 조리하면 사고의 원인이 된다.
  - 2개 휴대용 가스렌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사고 발생률이 높다.



가스연결은 전문점에 맡김

## 2. 관리자 안전수칙

### ① 위험요인에 의한 문제점

- 사람이 부재 시 가스기구의 밸브를 차단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 실내에 가스용기를 보관하는 행위나 실내에서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행위는 위험하다.
- 가스누설경보기나 차단장치가 미작동 되거나 설치되지 않았으면 위험하다.
- 가스시설 주변의 가연물 방치 및 환기가 불량하면 위험하다.
- 용기와의 연결호스가 너무 길게 늘어져 있으면 위험하다.
- 가스 보관 장소의 다른 인화물질 및 가연물이 혼재되어 있으면 위험하다.
- 가스시설 주위의 소화기구 미비치 및 주방 후드 등 기름 때 등 청소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 ② 위험해결 위한 안전수칙

- 가스시설 장소에 대한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여 사용을 통제한다.
- 가스용기는 실외의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고 잠금장치 등을 통해 관리자와 접근을 통제한다.
- 시설 내 간이 가스용기의 사용은 금지하고 가스누설경보기와 차단기가 설치된 상태에서 가스시설을 사용한다.
- 가스사용 전에는 환기하고, 점화유무를 확인하며, 주변의 가연물을 제거한다.
- 휴대용 가스통은 잔여가스 배출 후 구멍을 뚫어 폐기한다.
- 가스누설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월1회 실시한다.
- 호스보다는 배관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호스는 가급적 1m 이내의 길이로 사용한다.
- 가스용기 보관 장소에는 가스용기 외 다른 인화물질이나 가연물을 보관하지 않는다.
- 화기 사용 장소 주변에는 소화 기구를 비치한다.
- 주방후드 등의 기름때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 3. 수급자 안전수칙

### ① 수급자 위험요인

- 가스렌지, 가스보일러와 같은 가스기구를 취급하면 위험하다.
- 가스밸브는 사용자 이외는 만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 휴대용 가스렌지에 사용하는 가스통을 안전관리 한다.
- 가스 누설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수급자 위험요인 해소방안

- 가스 누설을 느낄 때 즉시 관리자에 알린다.
- 가스기구를 사용한 사람이 사용 후 밸브를 잠그도록 한다.
- 가스누출 여부의 확인은 냄새로 확인한다.



전기렌지 주변의 가연물 방치로 화재 확산



통제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가스 조리기구 사용

#### 4. 가스 저장용기

##### ① 위험요인

- 저장용기의 설치장소가 미지정 되거나 다른 가연물질과 혼재하여 저장하면 위험하다.
- 화기 취급 장소 주변에 가스용기를 설치하거나 저장용기를 고정하지 않은 경우 위험하다.
- 가스 연결호스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용기를 실내에 보관하는 경우 위험하다.
- 빗물,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거나 설치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변환하는 경우 위험하다.
- 가스종류에 맞지 않는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된 경우 위험하다.

##### ② 위험성 해결

- 저장용기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고 철저히 통제한다.
- “화기엄금”표지를 설치하고 시건 장치로 보안 조치한다.
- 저장용기 주변의 가연물을 제거하고, 저장용기는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 화기 취급 장소에서 이격하여 별도 옥외에 보관한다.
- 호스는 지양하고 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불가피한 경우 호스는 3m 이내로 설치한다.
- 옥외에 설치하지 말고 차광 및 빗물 등의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 휴대용 가스렌지는 실내에서 사용을 금지시키고 허가자 외에는 임의조작 및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한다.



가스 저장용기 설치장소에 아무렇게나 방치



가스 연결호스가 과도하게 길게 설치된 경우

## 9.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 1. 일상점검

#### ① 가스시설은 법정검사필요

- 가스는 높은 압력과 폭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음매가 조금만 헐거워지거나 배관들에 균열과 같은 사소한 결함이 발생하여도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가스는 정기적으로 시설의 안전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검사대상

- 가정용이나 소규모 업소의 시설은 가스공급자가 점검하도록 의무규정을 만들어 점검한다.
-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나 보호시설, 지하실에 있는 가스 사용시설들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 사용가스별 검사대상

사용가스	검사대상
LP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가정용 제외)에 시설</li> <li>•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li> <li>•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li> <li>•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의 시설을 갖춘 사용시설</li> <li>• 소형저장탱크를 갖춘 사용시설</li> <li>•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li> </ul>
도시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예정사용량 2,0003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제1종 보호시설 내는 1,0003 이상)</li> <li>• 그 외 시설은 도시가스회사에서 검사</li> </ul>

### 2. 자율점검

#### ① 실시요령

- 일반적인 가스 사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사용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시설관리의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자체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 강화와 생활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자율 점검 시 주요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 배관, 호스 등 연결부위에서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 사용기간이 오래되어 노후 및 손상된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 연소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 장시간 사용하지 않던 보일러 등을 사용할 때는 사전점검은 필수로 한다.
  - LPG 사용의 경우 용기가 실내에 설치 되었는지, 용기보관 상태는 양호한지 등 확인한다.

## ② 매월 4일은 가스시설 안전점검의 날

- 모두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시설의 가스안전은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 점검결과 가스시설의 이상이나 손상된 곳이 있으면 가스공급소 또는 도시가스회사로 연락하여 수리를 받도록 한다.

## 10. 가스안전관리 평가

### 1. 완성검사

건축물의 신축에 따라 처음 사용한 시설이거나 사용 중 시설을 변경한 후 사용할 때 실시한다.

### 2. 정기검사

#### ①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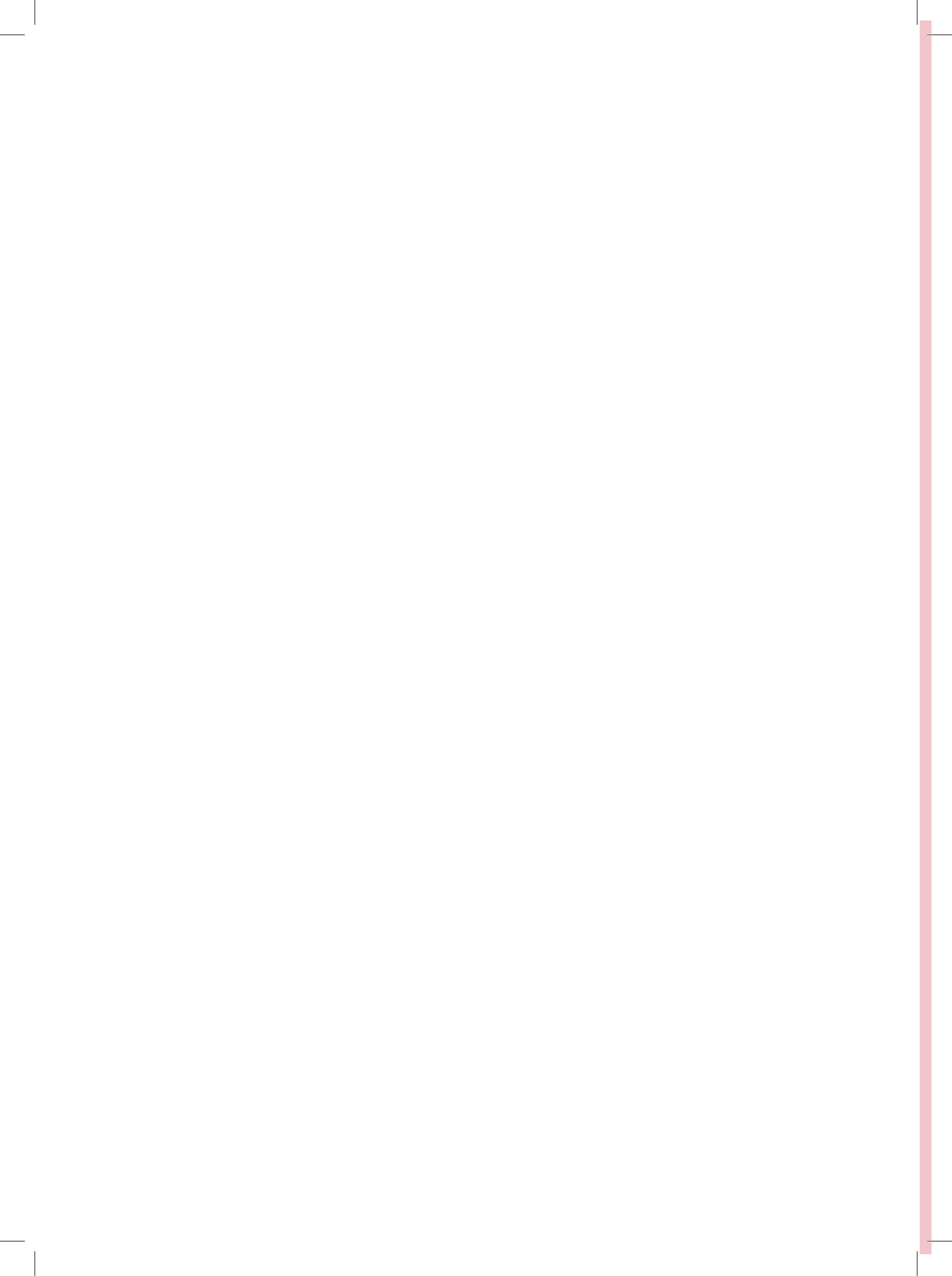
- 정해진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안전한지 검사한다.
- 용기 보관상태, 가스누출 자동차단기의 설치·작동여부, 습기로 인한 부식 방지조치, 가스 호스의 상태, 중간밸브, 연소기의 상태 등을 검사한다.

#### ② 자율점검

- 가스 사고는 대부분 사용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시설관리의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자체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강화와 생활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 ③ 자율점검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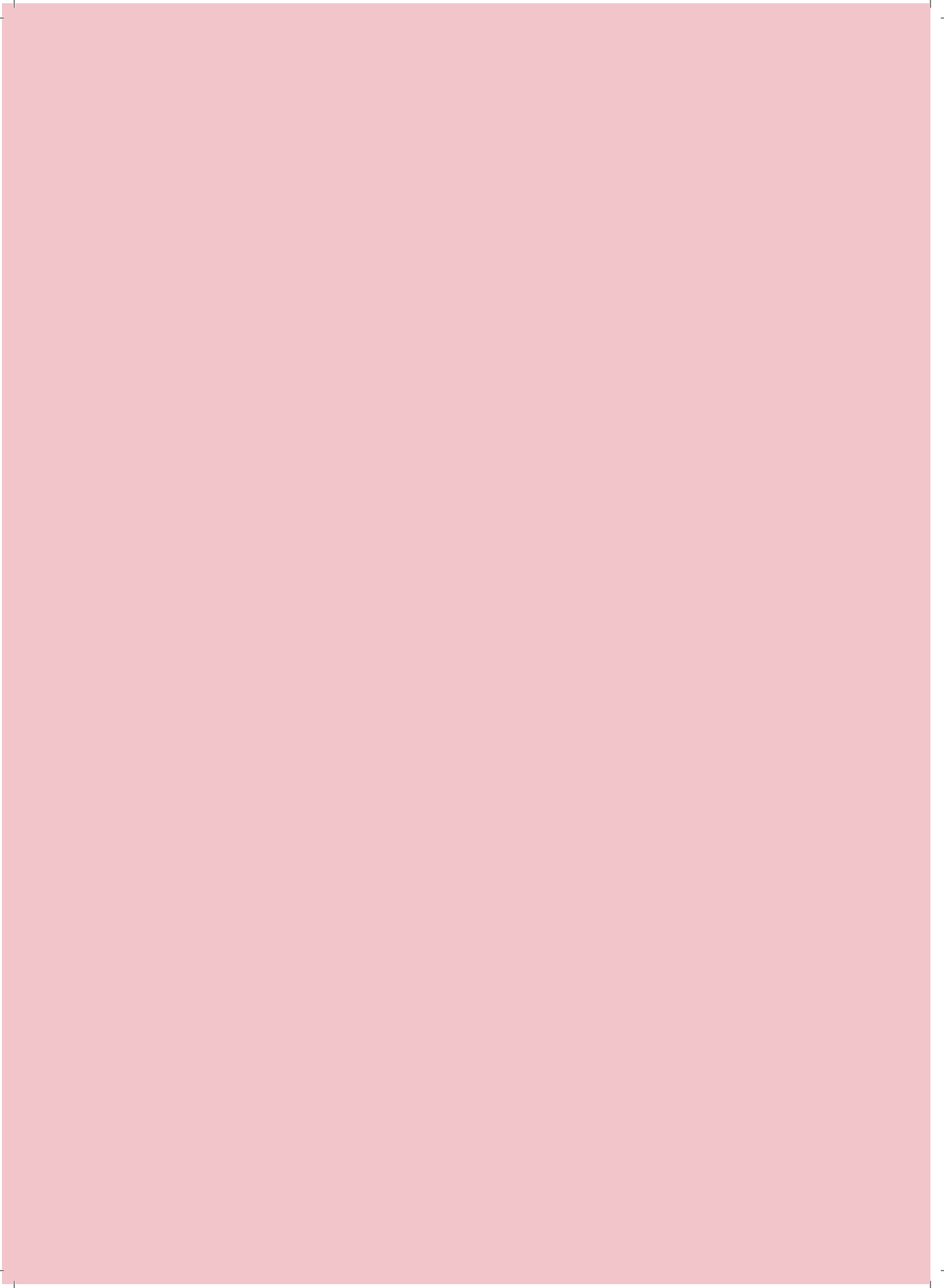
- 배관, 호스 등 연결부위에서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 사용기간이 오래되어 노후 및 손상된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 연소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 장시간 사용하지 않았던 보일러 등을 사용할 때 사전점검은 필수이다.
- LPG 사용 경우는 용기가 실내에 설치되었는지 용기보관 상태의 양호여부를 확인한다.



# 자연재난 관리 매뉴얼

1	태풍·호우재난	97
2	지진·지진해일 재난	108
3	황사재난	124
4	대설재난	132
5	한파	133
6	낙뢰재난	134
7	다중시설 대형사고	135
8	미세먼지	136

본 매뉴얼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매뉴얼(SOP)을 편집한 자료입니다.





# 1 태풍 · 호우재난

## 1. 태풍 · 호우재난 일반사항

### 1. 목적

이 매뉴얼은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 대규모 풍수해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사태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유아, 아동, 노인, 정신질환자 등과 이런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재난관리 행동요령과 방향을 규정하기 위해 작성된 매뉴얼이다.

### 2. 적용범위

- 태풍으로 인한 재난 위기관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설의 관계자 대비활동 및 대응활동에 적용한다.
- 태풍이나 호우로 발생하는 시설 및 주변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대책과 긴급 지원체계의 가동이 필요할 때 적용한다.
- 태풍으로 강풍, 풍랑, 해일 등으로 시설의 파손 및 훼손과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될 때 적용한다.
-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하천 범람, 산사태, 매몰 등의 인적 및 물적 피해. 재난피해 발생 시 적용한다.

### 3. 관련 법

- 근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제229호 2008.10.8)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 기상법
  - 재해구호법

### 4. 관련 용어

- 태풍 : 중심 부근 최대풍속 17m/sec 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성저기압
- 태풍 주의보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경보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구분	3급	2급	1급
바람(m/s)	17~24	25~32	33 이상
비(mm)	100~249	250~399	400 이상

- 호우 : 큰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특히 단시간에 많은 양이 내리는 비
- 호우 주의보 : 1일 80mm 이상의 비가 오는 경우 발령
- 호우 경보 : 1일 150mm 이상의 비가 오는 경우 발령

구분	호우현상
10~20 mm/h	세게 내리는 비
20~30 mm/h	장대비
30~50 mm/h	물통으로 퍼붓는 듯한 비
50~60 mm/h	폭포수와 같이 내리어 쿵쿵소리가 남
80 mm/h 이상	가슴이 답답한 압박감이 공포를 느낌

- 강풍 1 10분간 평균풍속이 14m/sec(28kt, knot) 이상인 바람

## 5. 재난 특징(국립방재연구원, 재난관리론)

- 발생 후 피해가 매우 크지만 발생 전에는 그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 자신이나 가족이 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관심하다.
- 시간적·공간적인 발생 빈도에 따라 피해규모가 크게 다르다.
- 사전 예방이나 철저한 대비활동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재난유형, 형태, 규모 등에 따라 피해범위가 다르다.
- 재난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고,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 2. 태풍 · 호우재난 위기관리

### 1. 위기관리 형태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 산사태 등으로 시설물 및 시설 수급자들에게 인적 · 물적 피해가 발생한다.
- 집중호우는 지형적인 특성과 강우전선의 불안정 등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좁은 지역에 내려 국지성 집중호우로 피해를 가져온다.
-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내리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산사태로 시설물 붕괴 · 매몰 위험 또는 진입로, 부속건물 침수피해 등이 발생한다.

### 2. 위기관리 목표

- 신속한 상황전파 및 태풍 진행상황을 주시(라디오, TV 등 재난방송 시청)한다.
- 태풍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신속한 대응조치를 실시한다.
- 시설 담당자별 소관사항에 대한 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 시설 수급자에 대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조치를 수행한다.

### 3. 위기 발생 시 관리자 판단

- 태풍의 진로, 중심기압, 크기, 강도 및 동반되는 풍속, 강수의 량 등에 따라 대응 절차를 판단한다.
-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권 등을 순시적으로 판단하여 수급자에게 전달한다.
- 호우의 강우강도, 강수 지역의 분포, 국지·게릴라성 호우 여부 등을 판단한다.
- 호우피해 예상구역의 여건, 확대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판단한다.

### 4. 재난별 피해형태

구분	피해형태
강풍	- 주요 시설물 파괴 - 대규모 정전사태 - 유리창의 깨짐, 갈라짐 - 기타 사회복지 시설물 피해
호우	- 침수, 범람, 산사태, 시설물 파괴 - 교통두절로 인원 및 물자 수송 곤란 - 대규모 정전사태와 사회복지시설물 피해
지진 해일	- 시설물 붕괴 - 화재 발생과 폭발 위험성

자연재난관리

### 5. 위기경보 수준

- 시설 관리자는 재난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별 경보를 발령한다.
- 경보상황을 수시로 수급자들에게 전달한다.

구분	판단기준	비고
관심 (Blue)	- 태풍 빈발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 - 호우 빈발시기	징후 감시활동
주의 (Yellow)	- 태풍예비특보 또는 태풍주의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호우예비특보 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협조체제 가동
경계 (Orange)	-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대비계획 점검
심각 (Red)	- 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즉각 대응태세 돌입

### 3. 태풍·호우재난 안전관리

#### 1. 목표

-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예방 및 대비 태세를 사전에 구축한다.
- 재난 발생 시 초기 응급대책 및 긴급 지원체계의 신속한 가동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 2. 안전관리 방향

- 태풍·호우 발생에 따른 시설물 및 인명피해 경감제도 개선
  - 사회복지시설 및 주변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전 재해영향성 평가 등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 태풍 진로 예측의 정교화 및 신속한 경보
  - 태풍에 의한 위기발생에 대한 사전 대비태세를 구비하고 점검한다.
  - 태풍, 호우와 관련된 대응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점검한다.
  - 자체적으로 시설물 점검과 정비 및 수방 자재를 확보하고 비축한다.
  - 태풍 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다.
  - 초기 대응 등 위기유형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발생 시 응급대책 및 긴급 지원체계 가동
  - 신속하고 치밀한 응급대책 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 긴급 대응체계 활동으로 조기복구를 통해 시설의 정상화를 꾀한다.

### 4. 태풍·호우재난 예방 활동

#### 1. 안전관리 계획수립

- 시설물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자체 풍수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보완한다.
- 모의훈련 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매년 자연재난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정·보완한다.

#### 2. 시설 및 주변시설 안전점검

##### ① 시설 및 주변시설 점검

- 시설 및 주변시설 등을 포함한 주변지역까지 재난에 대한 위험성 점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시설 내 건축물과 주변 배수구, 하수관거 등 배수시설의 점검을 실시한다.

- 인근 대피시설의 수용인원, 대피경로, 구호물자 등을 점검한다.

② 정보전달 시설점검

- 시설 수급자에게 재난을 알리는 방송시스템 등 정보전달 시설의 점검과 기능을 확인한다.

3. 재난대비 훈련실시

- 시설의 장은 자체 재난대비 훈련계획 및 매뉴얼을 통해 대피 유도 훈련, 연락체계 구축, 정보전달, 임무별 역할 등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 훈련 시 지자체, 유관기관, 시설 내 관리자, 수급자 등 모두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훈련을 생활화해야 한다.

4. 재난대비 교육실시

- 관리자의 자연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 숙지 교육을 실시한다.
- 재난의 기초지식 및 위험성, 평상 사비상시의 행동요령, 재난 발생 시 역할 등에 대해 재난대비 교육을 실시한다.
- 관리자는 예방 체크리스트를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예방단계의 시설 관리자 체크리스트

내 용	체크사항		
	적정	보통	미흡
사회복지시설 자체 풍수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보완하고 있는가?			
자연재난 안전관리 매뉴얼의 업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사회복지시설 및 주변시설의 점검이 명확하게 잘 이루어졌는가?			
방송장비, 통신장비 등 정보전달 시설의 점검이 명확하게 잘 이루어졌는가?			
지자체, 유관기관, 시설내 관리자, 수급자 등 모두 참여한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훈련에 대한 개선사항을 매뉴얼에 보완하여 매년 개선하고 있는가?			
사회복지시설 안전 담당자 및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5. 태풍 · 호우재난 대비활동

1. 주요활동

① 재난상황정보인지

- 사회복지시설 직원은 지속적인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 사회복지시설 수급자에게 재난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토록 알려준다.

## ② 재난상황 업무조치

- 재난 발생에 따른 시설 직원들의 담당 업무내용을 확인토록 한다.
-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에는 소집기준에 따라 직원들을 소집한다.
- 관련 기관과의 연락체계를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유지한다.

## ③ 연락체계 점검

- 지자체, 소방, 응급의료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한다.
- 시설 수급자의 보호자 및 가족 등에게도 사전에 연락체계를 확보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 야간에 재난 발생 시 시설 주변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여 둔다.

## 2. 방재물자 및 구호품 확보

### ① 전기, 수도, 가스의 대체수단 확보

- 태풍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전, 단수, 가스 공급 미흡 등에 대한 자가발전 장치 등의 가동상태를 확인한다.

### ② 방재물자 및 구호물품 확보

- 시설 및 주변 피해로 인한 수방자재 등을 미리 준비한다.
- 의약품 등을 준비하여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다.
- 식량, 식수, 생필품 등을 사전에 준비한다.

## 3. 관리자 담당업무 확인

### ① 재난 발생 시 담당업무 및 역할확인

- 재난 발생 우려 시 관리자의 담당별 업무 및 역할을 확인 후 내용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피 등을 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준비한다.
- 정보 수집 및 연락 담당반은 기상 정보 확인, 기관으로부터의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 구호반은 구호운반 공구의 점검 및 배포, 의약품 등을 확인한다.
- 피난 유도반은 대피 장소 및 경로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한다.
- 물자반은 구호세트, 의약품, 식료품 등 다양한 물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 4. 재난 발생 시 대피방법 확인

### ① 피난지 확보

- 본 시설에 협조하는 타 시설 등을 피난처로 복수 확보한다.
- 시설 주변에 국가에서 지정한 안전한 대피시설을 사전 확인하여 둔다.
- 장애인, 유아, 아동, 노인, 정신질환자 등을 이송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한다.
- 수급자 중 도보로 이용하는 피난이 어려운 수급자 수를 산출하여 그에 맞는 차량을 확보한다.
- 차량확보가 어려운 경우 이웃 지역주민이나 공공기관(지자체, 소방, 경찰 등)의 협력을 통해 차량을 확보한다.

### ② 대피시설 적정성 검토

- 대피시설은 수급자 상태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설을 선정한다.
- 시설 관리자는 수급자에게 대피방법을 인지시켜 주며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입소자마다 대피하는 방법(도보, 휠체어 등)을 색깔별로 지정하여 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③ 대피시설로 대피 실현성 검토

- 재난 발생 시 공간적 시간적 특징에 대해 대피 가능성을 검토한다.
- 주간이나 야간별로 상황에 따라 대피방법을 준비한다.
- 상주 직원 수에 따라 대피로 확보 및 대피방법을 준비한다.
- 대규모 재난에 따른 대피의 실현성 검토 후 대응방법을 준비한다.

### ④ 안전한 대피경로 확보

- 대피시설로 대피하는데 있어서 안전한 대피경로를 몇 개 확보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대피유도 및 대피지원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은 대피경로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예상피난 소요시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수급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인지시켜 준다.
- 대피 시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의료박스, 구호박스, 재난용 구호세트 등을 준비한다.

## 5. 가족, 보호자에 대한 인수기준 설정

### ①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인수방안 검토

- 시설 대표는 풍수해에 의한 시설의 훼손으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지정한 인수기준에 맞춰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인수한다.
- 가족, 보호자 등과의 사전 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하게 인수시기를 결정한다.

②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 임무 · 역할

구분	발령기준 및 재난상황	조치사항
관심 (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풍, 호우 빈발 시기</li> <li>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징후감시활동(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li> <li>태풍위기경보“관심”발령에 따른 대응 준비 실시</li> </ul>
주의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풍 예비특보 또는 태풍주의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li> <li>호우 예비특보 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상황모니터링</li> <li>재난위기 상황 판단 및 위기 경보 발령접수 및 전파</li> <li>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대처상황 수시확인</li> <li>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소방서, 지방자치단체)</li> <li>복지시설 피해 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확인</li> </ul>
경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li> <li>호우경보가 발령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상황 정보수집 및 전파</li> <li>재난위기 상황 판단 및 위기 경보 발령접수 및 전파</li> <li>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근무상황과 대처상황 확인</li> <li>사회복지시설의 피해 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확인</li> </ul>
심각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풍경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li> <li>호우경보가 발령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상황 정보수집 및 전파</li> <li>재난위기 상황판단 및 위기경보 발령 접수 및 전파</li> <li>유관기관별 협조체계 점검확인</li> <li>학교 시설물 피해 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li> </ul>

대비단계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체크리스트

내용	체크사항		
	적정	보통	미흡
기상정보 및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지자체, 유관기관, 가족 등과의 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태풍발생에 따른 방재물자 및 구호물품을 확보하였는가?			
초동 체제준비가 완료되었는가? (대피방법 인지, 경계체제 준비 등)			
가족 및 보호자에게 인수에 대한 명확한 정보(인수기준 등)를 설명해 주었는가?			
의약품, 위생재료비등의 구호물품 점검이 잘 이루어졌는가?			
비상식량, 식수 등의 생필품의 장비 점검이 잘 이루어졌는가?			
수급자의 피난방법 등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되었는가?			
상황별 대피방법에 대해 숙지가 되어있는가?(시간적, 공간적 상황에 따른 대피방법, 피난장소, 피난경로확보 등)			
대피를 위한 장비 및 복장은 마련이 되었는가?			



## 6. 태풍·호우재난 대응활동

### 1. 재난상황별 조치

#### ① 재난발생 상황 인지

-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인지한다.
- 시설 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수급자에게 전달한다.

#### ② 재난상황별 업무 조치사항 실시

- 침수에 따른 관리자 역할별 조치사항을 실시한다.
- 산사태 등 위험상황 등을 인지 후 즉시 조치사항을 시행한다.

### 2. 대피활동 조치

#### ① 대피활동 준비

- 재난 발생에 따른 집결지를 선정하여 둔다.
- 집결지로 이동시 사회복지시설 수급자들의 특성에 맞게 대피 지원 및 유도원이 배치되어 신속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집결지로 대피한다.

#### ② 대피방송 조치사항 실시

- 대피유도 내용은 방송설비의 사용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방법으로도 실시한다.
- 대피방송 시에는 차분한 어조로 동일한 내용을 2회 정도 반복하여 실시하고 패닉방지에 노력한다.

#### ③ 대피 시 행동요령 조치사항 실시

- 대피 시 엘리베이터 사용은 원칙적으로 피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시설 관리자 수가 부족한 경우 지역의 협력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부상자 발생 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상태에 따라 응급의료 및 소방서에 연락을 취한다.

### 3. 시설 유형별 대피 조치사항

#### ① 노인복지시설 대피 조치사항

- 노인복지시설의 수급자는 대부분이 이동 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대피에 대한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대응해야 한다.
- 대피 유도원 및 노인 지원인력이 부족할 경우 주변 지역의 봉사자 등을 신속하게 협조 받아 신속하고 빠르게 대피시킨다.

② 의료시설 대피 조치사항

- 의료시설에서는 중증환자에서 경상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가 있기 때문에 병의 특성에 맞게 대응한다.(이송수단, 이송시설, 대피장소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조치를 취해야 함)
- 특히 인공 투석환자, 난치병 등의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주의를 두고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해야한다.

4. 대피관련 확인 점검

① 대피인원 확인 및 점검

- 대피시설로 모든 인원이 무사하게 이동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 대피시설로 이동이 완료되었을 경우 수급자의 건강 및 상태를 확인한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변화가 있을 경우 의사, 간호사 등의 도움을 받거나 근처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실시한다.

② 2차 재난발생에 따른 예방조치

- 태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재난인 홍수, 산사태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사전예방을 실시한다.
- 주변 산림이 있을 경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사회복지시설 주변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위한 순찰을 실시한다.

5. 대응활동 점검하기

대응단계 시설 관리자의 체크리스트

내용	체크사항		
	적정	보통	미흡
재난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사회복지시설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재난 상황보고는 잘 이루어졌는가?			
대피 준비부터 집결지 선정 등 일련체계에 맞게 잘 이루어졌는가?			
대피 시 구호 물자 및 생필품은 잘 준비되어 대피가 실시 되었는가?			
대피시설과 경로는 안전하게 선택이 되었는가?			
대피시설에서 입소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피 시 행동요령은 잘 이루어졌는가?			
사회복지시설별 특성에 맞는 수급자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가?			
대피 인원 확인 및 점검이 잘 이루어졌는가?			
2차 재난에 대한 예방조치가 잘 이루어졌는가?			

## 7. 태풍·호우재난 복구활동

### 1.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요청

#### ① 시설 및 주변시설물 피해조사 실시

- 태풍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피해현황을 조사한다.
- 사회복지시설 내 인명 피해현황을 조사한다.
- 피해원인과 양상에 대한 조사자료를 DB화하여 관리한다.

#### ② 시설 피해현황에 대한 복구요청

- 시설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비용을 요청한다.
- 시설 복구대책은 피해유형별로 소관부처에서 수립하여 추진토록 한다.

#### ③ 수습조치는 재난관리체계에 준하여 처리

- 태풍 발생에 따른 복구활동을 실시한다.
- 피해 잔해에 따른 처리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방역소독, 전가통신시설 복구 등을 실시한다.

#### ④ 피해기록 및 평가결과 활용

- 피해사례의 영상, 기록 등 자료로 보관한다.
- 태풍 발생 시 부터 대응까지의 상황을 실제 대응일지로 기록한다.
- 시설 및 주변의 시설물 피해상황을 촬영하여 보존한다.

### 2. 태풍 대응활동 평가 및 결과전파

- 태풍발생에 따른 시설 대응활동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 결과로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매뉴얼에 보완한다.
- 태풍 대응활동에 대한 잘된 점 및 잘못된 점에 대한 결과를 전파한다.

#### 복구단계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체크리스트

내용	체크사항		
	적정	보통	미흡
신속하게 피해 현황에 대한 자체조사가 잘 이루어졌는가?			
사회복지시설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복구 및 비용 요청은 잘 이루어졌는가?			
복구에 대한 수습 조치는 재난관리 체계에 준하여 잘 처리가 되었는가?			
피해 사례의 영상, 기록 등 자료의 보관은 잘 이루어졌는가?			
태풍 대응활동의 평가 및 결과 전파는 잘 이루어졌는가?			

## 2

# 지진·지진해일 재난

### 1. 지진·지진해일 재난 일반사항

#### 1. 목적

이 매뉴얼은 지진이나 지진해일에 의해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내 수급자나 관리자 등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서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단계별로 활동하는 행동요령과 방향을 규정하기 위해 작성한 매뉴얼이다.

#### 2. 적용범위

- 지진이 닥쳐 올 때 위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관리자나 유관기관의 대응활동에 적용한다.
- 지진 또는 지진해일의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상황에 적용한다.
- 지진발생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응급대책 및 긴급 지원체계의 가동이 필요하거나, 대규모의 지진으로 인해 지반이 파괴되고 시설이 붕괴되어 대량의 사상자 및 이재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된다.

#### 3. 관련 법

##### ① 근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제229호 2008.10.8)

- 관련법령 : 지진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해구호법

##### ② 관련 규정, 지침 등

- 예보업무규정(기상청 훈령), 방재기상업무지침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
- 중앙지진피해조사단 운영규정(국민안전처 훈령)

#### 4. 지진·지진해일 관련 용어

##### ① 지진

- 지구 내부의 활동과 판구조 운동으로 인해 지구내부, 특히 지각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

리는 자연현상이다.

- 대류현상으로 지각과 마찰이 발생하면서 지각판 변동으로 지진이 발생한다.
- 지진의 강도는 리히터(Richter)로 표시한다.

지진강도	피해 정도
1 ~ 3(약 지진)	민감한 사람이 느낌(약 지진)
5 이하	벽에 금이 가고, 유리가 파손되는 강도
7 이하	땅에 금이 가고 건물이 파괴되는 강도

## ② 지진해일(쓰나미)

- 바다 밑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지반이 하강 또는 상승됨으로써 발생하는 긴 주기를 갖는 해양파를 의미한다.
- 쓰나미는 해안가에 접근하면 해안지형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파고가 높아짐으로써 해안지역의 침수 및 해안구조물에 심한 피해가 발생한다.



산사태, 절개지의 무너짐에 주의



해일시 신속하게 대피

자연재난관리

## 2. 지진·지진해일 재난 위기관리활동

### 1. 위기관리 형태

- 지진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인근 주변시설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다
- 지진해일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또는 발생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다.

구분	1차 피해	2차 피해
지반 파괴	지반변형/붕괴/액상화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물의 2차 붕괴
	산사태, 매몰	교통중절, 인명 피해
지진 건물 또는 구조물의 붕괴	건물전도/붕괴	인명피해, 이재민의 발생, 교통중절, 긴급 수송곤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단절
	화재	시설물 화재피해 및 사상자 발생
	원자력발전소 등의 파괴	방사능 피폭, 오염 등 전기 공급의 중단

구분	1차 피해	2차 피해
지진 해일	범람 침수, 붕괴	인명피해, 이재민의 발생

### ① 위기대응 지침

- 신속한 지진해일 상황 정보 및 경보를 전파한다.
- 신속한 긴급 대응 조치
  - 시설 수급자들을 신속하게 안전한곳으로 대피시킨다.
  - 시설 내 위험지역에 대하여 통제를 실시한다.

### ② 위기대응 판단

- 지진 발생 후 재난 대응 시 여진 및 2차 피해방지를 대비한다.
- 본 지진으로 인해 손상된 시설물 및 구조물의 여진에 따른 추가 붕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건물 및 구조물로 진입을 막는다.
- 지진으로 파손된 전기, 가스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재 공급시 안전성을 고려한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 3. 지진·지진해일 재난 안전관리 방향

### 1. 목표

- 지속적인 지진 대비활동 및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전파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한다.
- 지진 발생 시 신속한 피해상황과 그에 따른 초동대응 조치로 발생 초기의 혼란 방지, 2차 피해 최소화 및 조기 복구활동을 시행한다.

### 2. 방향

- 시설 및 주변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 신속한 보고, 피해상황 파악 및 초기 대응조치를 시행한다.
- 지진대비 교육 훈련 및 시설 수급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신속한 초동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관기관 간의 공조로 조기복구를 추진한다.
- 초기 대응 등 위기유형별 대응체계를 갖춘다.

안전관리활동의 기본방향

종류	주의보	경보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한반도 주변해역(21N~45N, 110E~145E)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자연재난 관리

## 4. 지진·지진해일 재난 재난 예방활동

### 1. 안전관리 대책

#### ① 자연재난 안전대책

- 사회복지시설 자체 내 지진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보안을 실시한다.
- 모의훈련 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매년 사회복지시설 지진 재난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정 및 보완한다.

#### ② 시설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시설 및 주변시설의 점검을 실시한다.
- 시설 및 주변시설 등을 포함한 주변지역까지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점검하여 보고한다.
- 인근 대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수용인원, 대피경로, 구호물자 구비 등의 상태를 점검한다.
- 정보전달 시설의 점검으로 시설 내의 방송시스템 등 정보전달 시설의 점검과 기능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2. 재난대비 훈련과 교육실시

#### ① 재난대비 훈련실시

- 시설 내의 방재훈련을 실시한다.
- 시설의 장은 자체 재난대비 훈련계획 및 매뉴얼을 통해 대피 유도 훈련, 연락체계 구축, 정보전달, 임무별 역할 등에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 훈련 시 지자체, 유관기관, 시설 내 관리자, 수급자 등 모두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훈련을 생활화한다.

#### ② 재난대비 교육실시

- 관리자의 자연재난 안전관리 매뉴얼 숙지 교육을 실시한다.
- 재난의 기초지식 및 위험성, 평상사비상시의 행동요령, 지진 발생 시 역할 등에 대해 재난대비 교육을 실시한다.

**예방단계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체크리스트**

내용	체크사항		
	적정	보통	미흡
사회복지시설 자체 지진 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보완하고 있는가?			
사회복지시설 지진 재난 안전관리 매뉴얼의 업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방송장비, 통신장비 등 전보전달 시설의 점검이 명확하게 잘 이루어졌는가?			
지자체, 유관기관, 시설내관리자, 수급자 등 모두 참여한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훈련에 대한 개선사항을 매뉴얼에 매년 보완하고 있는가?			
사회복지시설 안전 담당자 및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5. 지진·지진해일 재난 대비활동

### 1. 지진발생 대비태세 구축 및 점검

- 대규모 지진발생 시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TV · 라디오 등을 활용한 재난방송을 실시한다.
- 지자체, 소방, 응급의료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한다.
- 시설 수급자의 보호자 및 가족 등에게도 사전에 연락체계를 확보하여 비상시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및 복구장비를 준비한다.

### 2. 관리자 담당업무 및 역할확인

- 재난 발생우려에 따른 담당업무 및 역할을 확인한다.
- 관리자는 담당별 업무 및 역할을 확인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피 등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한다.
- 정보수집 및 연락 담당반은 기상정보 확인, 기관으로부터의 재난상황 등을 확인하여 전파한다.
- 구호반은 구호운반 공구의 점검 및 배포, 의약품 등을 확인한다.
- 피난 유도반은 대피 장소 및 경로에 대해 확인 · 점검한다.
- 물자반은 구호세트, 의약품, 식료품 등 다양한 물자의 보관 상태를 확인 · 점검한다.

### 3. 재난 발생 시 대피방법 확인

#### ① 피난지 확보

- 각 시설이 미리 협조하는 다른 피난처를 복수로 확보한다.
- 시설 주변에 국가에서 지정한 안전한 대피시설을 확인한다.
- 장애인, 유아, 아동, 노인, 정신질환자 등을 이송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한다.



- 수급자 중 도보로 이용하는 피난이 어려운 수급자 수를 산출하여 그에 맞는 차량을 확보한다.
- 차량확보가 어려운 경우 이웃 지역주민이나 공공기관(지자체, 소방, 경찰 등)의 협력을 통해 차량을 확보한다.

## ② 대피시설 적정성 검토

- 대피시설은 수급자 상태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설을 선정한다.
- 시설 관리자는 수급자에게 대피방법을 인지시켜 주며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입소자마다 대피하는 방법(도보, 휠체어 등)을 색깔별로 지정하여 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③ 대피시설로 대피 실현성 검토

- 재난 발생 시 공간적 시간적 특징에 대해 대피 가능성을 검토한다.
- 주간이나 야간별로 상황에 따라 대피방법을 준비한다.
- 상주 직원 수에 따라 대피로 확보 및 대피방법을 준비한다.
- 대규모 재난에 따른 대피의 실현성 검토 후 대응방법을 준비한다.

## ④ 안전한 대피경로 확보

- 대피시설로 대피하는데 있어서 안전한 대피경로를 몇 개 확보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대피유도 및 대피지원을 실시하는 시설 직원은 대피경로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예상피난 소요시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수급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인지시켜 준다.
- 대피 시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의료박스, 구호박스, 재난용 구호세트 등을 준비한다.

## 4. 가족, 보호자 등에 대한 인수기준 설정

### ① 시설 수급자의 인수방안 검토

- 시설 대표는 지진, 지진 해일 등에 의한 시설의 훼손으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지정한 인수기준에 맞춰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인수한다.
- 가족, 보호자 등과의 사전 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하게 인수시기를 결정한다.

### ②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의 임무 · 역할

- 풍수해 재난과 동일

대비단계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체크리스트

내용	체크사항		
	적정	보통	미흡
지자체, 유관기관, 가족 등과의 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지진발생에 따른 방재물자 및 구호물품을 확보하였는가?			
초동체제 준비가 완료 되었는가? (대피방법 인지, 경계체제 준비 등)			
가족 및 보호자에게 인수에 대한 명확한 정보 (인수기준 등)를 설명해주었는가?			
의약품, 위생재료비 등의 구호물품 점검이 잘 이루어졌는가?			
비상식량, 식수 등의 생필품의 장비점검이 잘 이루어졌는가?			
수급자의 피난방법 등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 되었는가?			
상황별 대피방법에 대해 숙지가 되어 있는가? (시간적 공간적 상황에 따른 대피방법, 피난장소, 피난 경로확보 등)			
대피를 위한 장비 및 복장은 마련이 되었는가?			

## 6. 지진·지진해일 재난 대응활동

### 1. 재난상황인지

#### ① 재난발생상황 지속적 인지

-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인지한다.
- 시설 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수급자에게 재난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준다.

#### ② 재난 상황별 업무 및 조치사항

-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관리자의 역할을 시행한다.
- 지진으로 인해 산사태 등의 2차 피해가 발생 위험상황에 대해 인지한 후 역할별 대응조치를 실시한다.
-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의 홍수, 산사태 등의 피해 위험성에 따른 순찰을 실시한다.
-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상황을 보고(지자체, 소방서 등)한다.

### 2. 대피활동 실시

#### ① 대피준비 활동

-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해 시설 건축물 피해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집결지 설정하여 대피시킨다.
- 집결지로 이동 시 시설 수급자들의 특성에 맞게 대피 지원 및 유도원이 배치되어 신속하고 혼란스

- 럽지 않게 집결토록 한다.
- 대피유도내용은 방송설비의 사용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대피방송 시에는 차분한 어조로 동일한 내용을 2회 정도 반복하여 실시하고 패닉방지에 노력한다.

**② 대피 시 행동요령**

- 대피 시 엘리베이터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피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시설 관리자의 인원이 부족한 경우 지역의 협력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한다.
- 부상자 발생 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상태에 따라 응급의료 및 소방서에 연락을 실시한다.

**3. 노인복지시설 대피행동**

- 노인복지시설의 수급자는 대부분이 이동 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대피에 대한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대응해야 한다.
- 대피 유도원 및 노인 지원인력이 부족할 경우 주변 지역의 봉사자 등을 신속하게 협조받아 신속하고 빠르게 대피시킨다.

**4. 대피 후 행동**

**① 대피인원 확인 및 점검**

- 대피시설로 모든 인원이 무사하게 이동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 대피시설로 이동이 완료되었을 경우 수급자의 건강 및 상태를 확인한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의사, 간호사 등의 도움을 받거나 근처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실시한다.

**② 2차 재난 발생에 따른 예방조치**

- 지진이나 지진해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재난인 홍수, 산사태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사전에 방을 실시한다.
- 시설 주변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위한 순찰을 실시한다.

**대응단계 시설 관리자 체크리스트**

내용	체크사항		
	적정	보통	미흡
재난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사회복지시설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재난상황 보고는 잘 이루어졌는가?			
대피준비부터 집결지 선정 등 일련체계에 맞게 잘 이루어졌는가?			
대피시 구호물자 및 생필품은 잘 준비되어 대피가 실시되었는가?			
대피시설과 경로는 안전하게 선택이 되었는가?			

내용	체크사항		
	적정	보통	미흡
대피시설에서 입소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피 시 행동요령은 잘 이루어졌는가?			
사회복지시설별 특성에 맞는 수급자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가?			
대피인원 확인 및 점검이 잘 이루어졌는가?			
2차재난에 대한 예방조치가 잘 이루어졌는가?			

## 7. 지진·지진해일 재난 복구활동

### 1.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요청

#### ① 시설 및 주변시설물 피해조사

-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시설의 피해현황을 조사한다.
- 시설 내의 인명피해 현황을 조사한다.
- 피해원인과 양상에 대한 조사자료를 DB화하여 관리한다.

#### ② 시설 피해현황에 대한 복구요청

- 시설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비용을 요청한다.
- 시설 복구대책은 피해유형별로 소관부처에서 수립하여 추진한다.

#### ③ 수습조치는 재난관리체계에 준하여 처리

-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해 발생된 피해 복구활동을 실시한다.
- 이재민 수용, 급식, 생필품 및 구급약품을 공급 • 지원한다.
- 예비군, 민방위대 및 군 인력, 자원봉사자 등의 복구활동을 요청한다.
- 피해 잔해물은 행정기관의 조치에 따라 처리한다.
- 방역소독, 전기통신시설 등에 대해 복구를 실시한다.

#### ④ 피해기록 및 평가결과 활용

- 피해사례의 영상, 기록 등을 자료로 보관한다.
- 지진 및 지진해일로 발생 시 부터 대응까지의 실제 대응일지로 기록한다.
- 시설 및 주변 시설물 피해상황을 촬영하여 보존한다.

## 2. 지진·지진해일 대응활동 평가

- 지진·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시설 대응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매뉴얼에 보완한다.
-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활동에 대한 잘된 점 및 잘못된 점에 대한 결과를 전파한다.

### 복구단계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체크리스트

내용	체크사항		
	적정	보통	미흡
신속하게 피해 현황에 대한 자체조사가 잘 이루어졌는가?			
사회복지시설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복구 및 비용 요청은 잘 이루어졌는가?			
복구에 대한 수습조치는 재난관리 체계에 준하여 잘 처리가 되었는가?			
피해사례의 영상, 기록 등 자료의 보관은 잘 이루어졌는가?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활동의 평가 및 결과 전파는 잘 이루어졌는가?			

## 8. 지진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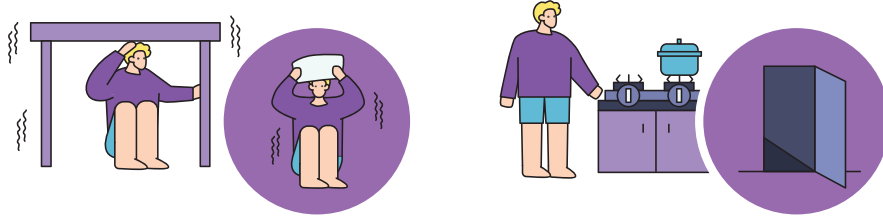
### 1. 지진발생 시 일반행동

- 지진 발생 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이므로 이 시간 동안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 화재가 났을 때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끄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 전기 등을 차단한다.
- 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기회는 3번으로 크게 흔들리기 전, 큰 흔들림이 멈춘 직후, 발화된 직후 화재의 규모가 작을 때이다.
- 지진 발생 때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하므로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된다.
-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한다.
- 만일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구조 요청한다.
- 큰 진동이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 블록담,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 2. 사회복지시설 안에서 지진을 느꼈을 때

- 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몸을 보호한다.
  -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이다.

- 우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꼭 잡고 몸을 피한다.
-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② 불이 났을 경우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한다.

- 작은 지진이라도 즉시 불을 끄고, 서로 알리고 협력하여 초기소화를 실시한다.
- 대지진 발생 시에는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개개인이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평소부터 작은 지진이라도 불을 끄는 습관을 익히도록 한다.
- 가족은 물론 이웃사람들과도 협력해서 초기에 소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 지진발생 시 불을 끌 기회는 3번!



첫번째 기회  
크게 흔들리기 전, 즉 흔들림이 작을 때이다. 작은 흔들림을 느낀 순간에 즉시 「지진이구나. 불을 꺼라!」라고 소리를 치고 사용 중인 가스렌지나 난로 등의 불을 끄는다.



두번째 기회  
큰 흔들림이 멈췄을 때이다. 크게 흔들릴 때는 요리중인 그릇 등이 떨어질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하므로 큰 흔들림이 멈춘 후 또 「불을 꺼라!」라고 소리를 쳐서 불을 끄는다.



세번째 기회  
발화된 직후이다. 만일 불이 나도 1~2분 이내에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소화기나 소화용 큰 그릇을 불이 날 수 있는 근처에 항상 비치해 둬서 둔다.

#### 4.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 나가지 말자!

##### ① 집 밖은 위험이 가득, 먼저 안전을 확인한다.

- 최근에 건축된 건물은 내진설계를 했기 때문에 무너질 우려가 적다.
- 건물이 흔들리고 있을 때는 서둘러 밖으로 뛰어 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 등 낙하물이 떨어지므로 대단히 위험하다.
- 또한 블록담,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에 가서는 안 된다.

##### ②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

- 비상시의 대피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둔다.
-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파트의 경우 문이 비틀어져 갇힌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 만일 갇힐 사태를 대비해서 대피방법에 관해 미리 준비한다.



#### 5. 사회복지시설 밖에서 지진을 느꼈을 때

- 야외에서는 머리를 보호하고 위험물로부터 몸을 피한다.
- 땅이 크게 흔들려 서 있기 어려우면 무엇이든 잡거나 기대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용하여 대문기둥이나 담 등을 잡게 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 번화가나 빌딩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 낙하물이다.
- 가방이나 손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것들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한다.
- 지진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빌딩가에 있을 때는 건물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상황에 따라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다.

#### 6.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진을 느꼈을 때

-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한다.

-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연기가 짙게 되므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도록 한다.



### 7. 엘리베이터에서 지진을 느꼈을 때

- 안전을 확인해서 가장 가까운 층에서 신속하게 대피를 한다.
- 지진이나 화재 발생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는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한다.
- 만일 갇혔을 경우에는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한다.



### 8. 자동차 운전 중 지진을 느꼈을 때

-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난 듯 한 상태가 되어 핸들이 불안정하게 되면서 제대로 운전 못하게 된다. 충분히 주의를 하면서 교차로를 피해서 길 오른쪽에 정차시키도록 한다.
- 대피하는 사람들이나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중앙부분을 비워 둔다.
- 도심에서는 거의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될 수 있다. 자동차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부근에 경찰관이 있으면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화재발생 시에 차안에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창문은 닫고, 자동차 키를 꽂아 둔 채로, 문을 잠그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피신하도록 한다.





### 9.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서로 협력해서 필요한 때에는 미리 배워둔 응급구호를 사용한다.
- 대규모 지진 시에는 많은 부상자의 발생이 예상되며, 정전이나 교통정체 등으로 구조대, 의료기관도 평소와 같은 활동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부상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평소에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을 배워둔다.

### 10. 피난은 마지막 수단

- 대피권고가 나면 서로 협력해서 대피해야 한다.
- 화재가 확산되어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경찰관 등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 시에는 최소한의 소지품만 가지고 걸어서 가도록 한다.
- 노약자 등의 피난은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평소에 이웃사람들과 미리 의논해서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11. 올바른 정보를 따라 올바른 행동

- 라디오나 방재기관에 의한 올바른 정보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 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올바른 정보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 시·군·구나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접 얻은 정보를 신뢰하고, 결코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를 믿고 행동해선 안 된다.

## 8. 지진해일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 1. 지진해일 내습 시 주의사항

- 지진해일 특보가 발표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서로에게 알리도록 한다.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 발생 후 동해안에는 약 1~2시간 이내에 지진해일이 도달하므로 해안가에서 는 작업을 중단한다.
- 위험물(부유 가능한 물건, 충돌 시 충격이 큰 물건, 유류 등)을 이동시키며,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 하도록 한다.
- 해안가에 있을 때 강한 진동을 느꼈을 경우는 국지적인 해일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약 2~3분 이 내에 해일이 내습할 수 있으므로 지진해일 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신속히 고지대로 이동하도 록 한다.

### 2. 스스로 대처하는 지진해일 일반상식

- 일본 서해안의 지진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보고되면, 일반적으로 약 1~2시간 이내에 동 해안에 지진해일이 도달하게 된다.
- 지진해일 도달 가능 영역은 동해안 전역이고, 파고 3~4m 정도의 지진해일이 내습할 수 있다.
- 지진해일은 물이 빠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이 때 항 바닥이 드러나기도 한다.
- 지진해일은 일반적으로 여러 번 도달하는데 제 1파보다 2, 3파의 크기가 더 큰 경우도 있고, 지진해 일에 의한 해면의 진동은 10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 지진해일 내습 속도는 사람의 움직임보다 빠르고, 그 힘이 강력하여 약 30cm 정도의 해일파고라도 성인이 걷기 어려우며, 약 1m 정도의 해일이라면 건물이 파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 해안가의 선박 등 다른 물건들이 지진해일에 의해 육지로 운반되어 주택에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물체들이 유류탱크 등에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지진해일은 바다로 통해 있는 하천을 따라 역상하기도 한다.

## 9. 지진규모와 진도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

### 1. 지진규모와 진도

규모	진도	내용
2.9 미만	1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수준
3.0 ~	2	•소수의 사람들, 특히 건물의 윗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섬세하게 매 달린 물체 진동
3.9	3	•실내에서 현저하게 느끼나,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정지하고 있 는 차는 약간 흔들리며, 트럭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진동을 느낌

규모	진도	내용
4.0 ~ 4.9	4	•지진동안 실내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나 옥외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는 수준. 밤에는 잠을 깨우며 그릇, 창문, 문 등이 소란하며 벽이 갈라지는 소리를 냄. 대형 트럭이 벽을 받는 느낌을 주고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움직임이 뚜렷함
	5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며, 약간의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짐. 어떤 곳에서는 석고에 금이 가며 불안정한 물체는 뒤집어짐. 나무, 전선주 등 다른 높은 물체의 교란이 심하며 추시계가 정지
5.0 ~ 5.9	6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 나가며 무거운 가구가 움직임. 석고가 떨어지고 굴뚝에 피해가 발생
	7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 나오는 수준으로 잘 설계된 건물에 피해가 없을 수 있으나 보통 건축물에는 약간의 피해가 있으며, 부실한 건축물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운전자가 느낄 수 있음
6.0 ~ 6.9	8	•잘 설계된 구조물에는 약간 피해가 있고 보통 건축물에는 부분적인 붕괴(崩壞)와 더불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며, 부실한 건축물에는 심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수준 •창벽이 무너지고 굴뚝, 기둥, 벽들이 무너짐. 무거운 가구가 뒤집어지며 모래와 진흙이 솟아남. 우물 수면이 변하고 운전자가 방해를 받음
	9	•특별히 설계된 구조물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수준으로 잘 설계된 구조물은 기울어지고 실제 구조물에는 큰 피해가 발생되며 부분적으로 붕괴됨. 건물은 기초에서 벗어남. 땅은 명백하게 갈라지며 지하 파이프도 구부러짐
7.0 이상	10	•잘 지어진 목조 구조물이 파괴되는 수준으로 대부분의 석조 건물과 구조물이 기초와 함께 무너지며, 땅이 심하게 갈라지고 철도가 휘어짐. 강둑이나 경사면에서 산사태가 생기며 모래와 진흙이 이동됨. 물이 분출되며 독이 붕괴됨
	11	•남아 있는 석조 구조물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교량이 부서지고 땅에 넓은 균열이 발생되며, 지하 파이프가 완전히 파괴됨. 연약한 땅이 폭꺼지고 지층이 어긋나며, 기차 선로가 심하게 휘어짐
	12	•전면적인 피해 수준으로 지표면에 파동이 보이고 시야와 수평면이 뒤틀리고 물체가 하늘로 던져짐

자연재난 관리

# 3

## 황사재난

### 1. 황사재난 일반사항

#### 1. 목적

이 매뉴얼은 황사 발생으로 장기요양기관 등(이하 '시설') 수급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파 및 수습으로 황사의 효과적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시설 관리자 및 관련 유관기관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매뉴얼이다.

#### 2. 적용범위

- 대규모 황사 발생 시 위기대응 업무와 관련 있는 시설 관리자 및 유관기관의 황사피해 대응 및 사후 관리 등에 적용한다.
-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황사 재난발생시 적용되는 매뉴얼이다.
- 시설 수급자나 관리자 등의 재난대비 행동요령으로 적용한다.

#### 3. 관련 법

근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제229호 2008.10.8.)

##### ①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국가 재난관리차원에서의 황사 피해 대응체계
- 기상법 : 황사 예·특보제 운영
-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② 관련규정, 지침 등

- 예보업무규정 (기상청 훈령), 방재기상업무지침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
- 중앙지진피해조사단 운영규정 (중앙소방본부훈령)

## 4. 관련용어

- 황사는 바람에 의해 불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또는 그 모래흙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옅은 황사, 짙은 황사, 매우 짙은 황사로 분류한다.

## 2. 황사재난 위기관리 경보

### 1. 위기관리 형태

#### ① 황사 물리적 작용에 의한 직접 피해

- 대기의 혼탁으로 인해 가시도 저하로 시정장애를 초래하여 항공기, 여객선 운행 중단 또는 도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 미세먼지농도의 급격한 증가로 호흡기질환, 안질환 등 건강에 피해를 준다.
- 식물 잎 표면에 먼지침적 및 투광률 저하로 식물생장의 지장 및 가축의 호흡기계 질환 등을 야기시킨다.
- 반도체 등 정밀산업의 불량품 발생률 또는 방지비용증가, 야외생산, 레저, 스포츠 등 실외(Outdoor) 서비스산업의 일시적 중단 또는 둔화, 그리고 청소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 ② 황사 오염물질에 의한 간접피해

- 황사먼지가 박테리아 등 미생물의 운반매체 역할을 담당하여 황사 발생지와 이동 경로 지역의 대기 중 미생물의 종류 및 밀도를 변화시키고 도시와 농업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미세먼지 및 중금속의 증가로 2차 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양 증가와 먼지 표면의 화학변환 작용을 일으킨다.
- 황사의 중국 내 오염지대 통과 시 유해 중금속 오염도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 2. 안전관리 목표

#### ① 목표

- 황사 발생에 따른 시설 수급자 피해 최소화 및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 황사 발생 시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그에 따른 초동대응 조치로 발생 초기의 혼란 방지, 2차 피해 최소화 및 조기복구를 유도한다.

#### ② 방향

- 신속한 보고, 피해상황 파악 및 초기 대응조치를 시행한다.
- 황사 발생에 따른 유관기관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점검한다.

- 신속한 초동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 화재 발생에 따른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의 지속으로 피해를 줄인다.

### 3. 위기 경보

#### ① 대규모 화재 발생경보

- 화재로 인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
- 화재 발생 시기를 위험 경보단계인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단계로 세분화하여 상황에 따른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위기경보 수준	판단기준
관심 (Blue)	- 화재 빈발 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화재의 발생
주의 (Yellow)	- 화재 예비특보 또는 화재주의보가 발령되고 화재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 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경계 (Orange)	- 화재경보가 발령되고 화재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심각 (Red)	- 화재경보가 발령되고 화재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 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 ② 위기경보 수준

#### ③ 화재 예보 및 특보 발령기준

- 화재주의보(짙은 화재) :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400 ~ 800 $\mu\text{g}/\text{m}^3$  범위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한다.
- 화재경보(매우 짙은 화재) :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 $\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구분	내용
화재 예보기준	- 옅은 화재 : 화재로 인해 1시간 평균 농도가 400 $\mu\text{g}/\text{m}^2$ 미만 - 짙은 화재 : 화재로 인해 1시간 평균 농도가 400~800 $\mu\text{g}/\text{m}^2$ - 매우 짙은 화재 : 화재로 인해 1시간 평균 농도가 800 $\mu\text{g}/\text{m}^2$ 이상
화재 특보기준	- 화재주의보 : 1시간 평균 농도가 400 $\mu\text{g}/\text{m}^2$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시 - 화재경보 : 1시간 평균 농도가 800 $\mu\text{g}/\text{m}^2$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시

### 3. 황사재난 예방활동

#### 1. 안전대책

##### ① 안전대책 마련

- 시설 자체 내 황사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보완한다.
- 모의훈련 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매년 시설 황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정 및 보완한다.

##### ② 예방시설 및 장비점검

- 사회복지시설 내의 일제방송시스템 등 정보전달시설의 점검과 기능을 확인한다.

#### 2. 재난대비 훈련과 교육실시

##### ① 재난대비 훈련실시

- 시설의 장은 자체 재난대비 훈련계획 및 매뉴얼을 통해 대피 유도 훈련, 연락체계 구축, 정보전달, 임무별 역할 등에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 훈련 시 지자체, 유관기관, 시설 내 관리자, 수급자 등 모두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생활화한다.

##### ② 재난대비 교육실시

- 관리자의 자연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 숙지 교육을 실시한다.
- 재난의 기초지식 및 위험성, 평상사비상시의 행동요령, 재난 발생 시 역할 등에 대해 재난대비 교육을 실시한다.

#### 예방단계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체크리스트

내용	체크사항		
	적정	보통	미흡
사회복지시설 자체 황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보완하고 있는가?			
사회복지시설 황사 안전관리매뉴얼의 업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방송장비, 통신장비 등 정보전달 시설의 점검이 명확하게 잘 이루어졌는가?			
황사에 대비 한 마스크 등 비상용품은 준비를 하였는가?			
자체훈련 후 도출된 개선사항을 매뉴얼에 매년 보완하고 있는가?			
사회복지시설 안전담당자 및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4. 화재재난 대비·대응활동

### 1. 대비활동

#### ① 화재발생정보수집

- 지자체와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화재 강도 및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 화재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과 의견을 수렴한다.
- 언론매체(TV, 라디오, 인터넷 등)를 통한 화재상황 정보를 수집한다.
- 화재발생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지자체, 소방서, 응급의료체계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신속한 상황을 전파한다.

#### ② 화재 발생 사전조치 및 점검

- 사군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 및 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 확인 . 점검한다.
-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한 시설의 확충·정비, 보강시험가동 등을 실시한다.
- 특이사항 발생 시 지자체, 소방, 응급의료체계 상황을 보고한다.

#### ③ 화재대처 국민행동요령 홍보

- 화재 대비 주의사항 및 행동요령 전파를 실시한다.
- 시설 수급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화재대책과 주민행동요령을 홍보한다.
- 화재에 대한 상황을 명확하게 전파한다.
- 시설 수급자 및 보호자의 외출 자제를 홍보한다.

### 대비단계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체크리스트

내용	체크사항		
	적정	보통	미흡
지자체, 소방서, 응급의료체계, 보호자 등 과의 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는 상황에 대한 전달이 잘 이루어졌는가?			
화재에 대비한 마스크 등 비상용품은 준비를 하였는가?			
의약품, 위생 재료비 등의 구호물품 점검이 잘 이루어졌는가?			
비상식량, 식수 등의 생필품의 장비점검이 잘 이루어졌는가?			

### 2. 대응활동

#### ① 재난 발생의 지속적 상황인지

- 화재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여 전파한다.
- 지속적으로 화재 발생에 따른 상황 및 정보를 수집한다.



- 시설 수급자에게 재난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토록 한다.

② 시설 내 피해 상황 보고

- 황사로 인한 시설 내 인명피해 현황을 보고한다.
- 황사 발생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역할별 조치사항을 전달한다.
- 시설 수급자 및 보호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 실시 및 응급의료 체계를 보고한다.
- 황사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상황을 보고한다.
- 시설 수급자의 건강피해 발생상황을 수시로 파악한다.

③ 자체대응활동실시

- 시설 내 자체 대응활동을 실시한다.
- 시설 자체 황사피해방지 대응체제를 관리자 중심으로 구축 • 운영한다.
- 시설 내 이용객 및 보호자 야외활동을 자제 시킨다.
- 황사발생 조치사항으로 창문 닫기, 마스크 쓰기, 물 마시기 등을 지도한다.

대응단계 시설 관리자 체크리스트

내용	체크사항		
	적정	보통	미흡
재난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인지하고 있는가?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재난상황을 잘 전달되고있는가?			
사회복지시설내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황사 발생에 따른 자체 대응체계는 잘 구축되었는가?			
사회복지시설 관리자의 역할별 조치사항은 제대로 이루어지고있는가?			
사회복지시설별 특성에 맞는 수급자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가?			
야외활동에 대한 통제는 잘 이루어졌는가?			

5. 황사재난 복구활동

1. 시설 대청소 실시

① 황사특보 상황 종료 후 시설 내·외부 대청소 실시

- 황사의 재 비산(飛散)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 등 대청소를 실시한다.
- 황사로 인한 시설 및 주변시설 피해현황을 조사한다.

② 피해 기록 및 평가결과활용

- 피해사례의 영상, 기록 등 자료를 보관한다.
- 황사 발생 시 부터 대응까지의 실제 대응일지를 기록한다.
- 시설 및 주변 시설물 피해현황을 사진으로 보존한다.

2. 대응활동 평가 및 결과 기록

① 황사 대응활동 평가 및 결과 전파

- 황사 발생에 따른 시설 대응활동 및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매뉴얼 및 대책으로 보완하여 실시한다.
- 황사 대응활동에 대한 잘된 점 및 잘못된 점에 대한 결과를 전파한다.

복구단계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체크리스트

내용	체크사항		
	적정	보통	미흡
복구에 대한 수습 조치는 재난 관리체계에 준하여 잘 처리가 되었는가?			
황사의 재비산을 막기 위한 청소 등의 활동은 잘 이루어졌는가?			
황사 발생에 따른 피해 조사는 잘 이루어졌는가?			
피해사례의 영상, 기록 등 자료의 보관은 잘 이루어졌는가?			
황사 발생에 따른 대응 활동의 평가 및 결과 전파는 잘 이루어졌는가?			

6. 황사재난 시설 수급자 행동요령

1. 수급자 행동요령

① 황사발생 전(황사예보 시)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한다.
-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한다.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한다.

② 황사발생 중(황사특보 발령 시)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는다.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한다.

- 식품 가공, 조리 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을 방지한다.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실외활동을 금지시킨다.

③ 황사 종료 후(황사특보 해제 후)

- 실내 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한다.
-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가안질 등 환자는 쉬도록 한다.

2. 황사로 인한 질환 대처방법

질환별	주증상	대처방법
호흡기질환 (기관지염, 천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흡곤란</li> <li>• 목의 통증</li> <li>• 기관지, 기도점막의 염증</li> <li>• 기침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식 환자는 황사가 심할 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간다.</li> <li>• 창문 등을 닫아 외부 공기의 유입 차단한다.</li> <li>• 공기정화기와 가습기로 실내공기를 정화시키고 습도를 조절한다.</li> <li>• 물을 많이 마신다.</li> </ul>
안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의 가려움증</li> <li>• 눈물이 남</li> <li>• 눈이 빨갛게 충혈됨</li> <li>• 눈에 뭔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과 통증</li> <li>• 눈을 비비면 끈끈한 분비물이 나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보호안경을 끼고 콘택트렌즈의 착용은 삼간다.</li> <li>• 귀가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눈을 깨끗이 씻어낸다.</li> <li>• 소금물은 눈을 자극하므로 피해야 한다.</li> <li>• 결막염 초기증세가 의심되면 깨끗한 찬물에 눈을 대고 깜빡거리거나 얼음찜질을 해주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li> </ul>
이비인후과 질환 (알레르기 비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채기가 계속됨</li> <li>• 많은 콧물이 흐름</li> <li>• 코막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li> <li>• 귀가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콧속을 씻어 낸다.</li> </ul>
피부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의 가려움증, 두드러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출 시에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긴소매 옷을 입는다.</li> <li>• 귀가 후에는 반드시 손과 발등을 깨끗이 씻는다.</li> <li>• 피부에 로션 등을 발라 휴먼지가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한다.</li> </ul>

## 4

# 대설재난

## 대설재난 발생 시 안전관리

### 1. 위기징후(대설) 파악

- 기상청 기상정보를 통해 기상정보 및 특보를 수집한다.
- 위성영상, 각종 수치자료 등을 바탕으로 예상 강설량 또는 적설량을 분석, 파악한다.
- 기상청 (www.kma.go.kr), 방재 기상정보시스템(afso.kma.go.kr)을 활용한다.
- 대설관련 위기경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재난대비 조치를 시행한다.

### 2. 위기징후 판단

- 대설예상 강설, 적설량, 피해예정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다.
- 대설 재난상황의심각성, 확대가능성, 파급효과를 파악한다.
- 필요 장비 · 인력 등의 확보를 위한 가능성을 파악한다.

### 3. 관심(Blue)단계 조치사항

- 기상청 등의 자료(기습 폭설 등)를 바탕으로 기상상황 관측 및 예보를 모니터링 한다.
- 대설 발생 시 기간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로 기간 내에는 기상예보를 주시한다.

### 4. 주의(Yellow)단계 조치사항

-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설 및 기습 폭설 등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중앙재난종합상황실에서의 상황 판단 참고 및 대설재난 가능성, 심각성, 대설발생 지역범위 및 예상적설량 등을 참고하여 비상근무 실시여부 및 규모 등 대처계획을 논의한다.

### 5. 경계(Orange)단계 조치사항

-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설 및 기습 폭설 등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재난위기상황판단 및 위기경보발령을 접수하여 시설 내에 전파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확인한다.

### 6. 심각(Red)단계 조치사항

- 중앙재난종합상황실에서의 상황 판단 참고 및 대설재난 가능성, 심각성, 대설발생 지역범위 및 예상적설량 등을 참고하여 비상근무 실시여부 및 규모 등 대처계획을 논의한다.

## 5

## 한파

## 한파재난 발생 시 안전관리

## 1. 수급자 행동요령

-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한다.
- 심한 한기 · 피로,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등을 느낄 경우에는 저체온증을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간다.
- 급작스런 기온 강하 시 심장 및 혈관계통, 호흡기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 노인 ·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한다.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의 보온에 유의하고 특히 머리 부분의 보온에 신경 쓴다.
-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당뇨환자, 만성 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 동상에 걸렸을 때는 조이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하게 해주며 동상부위를 잘 씻고 말린다.

## 2. 외출 시 안전대책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 낮에 외출하고 가급적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 시설 관리자에게 행선지와 시간계획을 미리 알려준다.
- 되도록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지름길이나 이면도로를 피한다.
- 만약 자동차에 고립될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구조요청을 한다.
- 자동차에 있을 때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서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6

## 낙뢰재난

### 낙뢰재난 발생 시 안전관리

#### 1. 낙뢰 피해

- 번개는 천둥 번개, 태풍이 발생할 때 일어나는 재해로서 경미한 것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천둥번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집, 건물, 또는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 집안에 대피한 경우, 욕조, 수도꼭지, 그리고 개수대 (싱크대)를 만져서는 안 된다.
- 야외에 위치하여 안전한 건물, 자동차로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숲 속인 경우 작은 나무가 자라는 저지대로 대피한다.

#### 2. 발생 시 행동요령

- 개방된 지역인 경우 계곡이나 협곡 등의 저지대로 이동하지 않는다. 이 경우 돌발적인 홍수에 의한 빠른 수위의 상승을 조심한다.
- 개방된 지역에서 홀로 서 있는 나무 아래로 대피해서는 안 된다.
- 언덕의 꼭대기에 위치하지 말고, 해변이나 배에 들어가지 않는다.
- 고립된 헛간이나 작은 건물에 대피해서는 안 된다.
- 넓은 호수 등의 개방된 물로부터 떨어져야 하며, 탄소성 낙싯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금속성물질 (건인차, 농기구, 오토바이, 골프수레, 골프채, 자전거 등)로부터 멀리 떨어진다.
- 철조망, 빨래줄, 금속관, 철도 등 원거리에서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금속 성의 긴 구조물로부터 떨어진다.
- 평탄한 지대나 고원과 같은 곳에 위치하여 머리가 다른 지형보다 높은 경우, 무릎 사이로 머리를 숙이고 팔로 감싸야 한다.

# 7

## 다중시설 대형사고

### 다중시설 대형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 1. 위기발생 원인

- 의도적 원인: 방화, 테러 등에 의한 화재
- 비의도적 원인 :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실화
- 전기, 담배, 가스, 불티, 유류, 불량난, 난로 등

#### 2. 위기대응 지침

- 신속한 사태 수습/조치, 피해 확산방지
- 효과적인 예방활동 및 단계별대응계획수립
- 신속한 재난 상황접수· 보고체제 확립
- 현장 위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초기 대응체제 구축
- 2차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활동 실시

#### 3. 위기대응 단계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화재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발생상황(6하 원칙) : 신고자 인적사항, 화재 상황</li> <li>• 화재상황 보고서 작성(최초)</li> </ul>	소방서상황실 (119)
초기진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 유형에 따라 자체 소화전 및 소화기 등으로 초기진압</li> <li>• 현장상황 모니터링 지속 통보</li> </ul>	소방서신고후 자체장비초기진압 (당직자)
상황보고 및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유형별 관련 유관기관 통보 :전기가스안전공사 등</li> <li>• 화재상황 보고서 작성(중간)</li> </ul>	유관기관 상황보고
현장활동지원 (초동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 지원 :소방관서 현장지휘대 지휘</li> <li>• 피해 영향 평가 및 사고 원인조사분석</li> <li>• 상황보고서(최종)</li> </ul>	현장지휘대 (소방관서) 당해기관
화재규모에 따른 상황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상황종료 및 복구</li> <li>• 대규모→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li> </ul>	현장지휘대 (소방관서)

# 8

## 미세먼지

### 1. 개요

#### 1. 목적

이 매뉴얼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대응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건강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된 매뉴얼이다.

### 2. 적용범위

#### 가. 적용대상

-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 취약계층의 특성 〉

- (어르신) 약한 면역력, 폐기능, 심혈관기능과 방어체계, 혹은 질병으로 진단 되지 않는 심혈관이나 폐의 문제로 인해 대기오염에 취약
- ※ 미세먼지 취약계층 중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

#### 나. 적용상황

-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이상인 경우
-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나쁨'이상)가 발생하거나, 해당 광역 자치단체에서 주의보·경보가 발령되어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경우

(대응단계별 요건)

구분	요건
고농도예보	익일 예보 24시간 평균농도 PM10 81 $\mu\text{g}/\text{m}^3$ 또는 PM2.5 36 $\mu\text{g}/\text{m}^3$ 이상
고농도발생	PM10 81 $\mu\text{g}/\text{m}^3$ 또는 PM2.5 36 $\mu\text{g}/\text{m}^3$ 이상 1시간 지속
주의보	PM10 150 $\mu\text{g}/\text{m}^3$ 또는 PM2.5 75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경보	PM10 300 $\mu\text{g}/\text{m}^3$ 또는 PM2.5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 미세먼지(PM2.5) 경보기준(주의보·경보) 개정 시행('18.7.1)



### 3. 법적근거

#### 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 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 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 다. 「대기환경보전법」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 시도지사는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

#### 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 미세먼지(PM10, PM2.5) 농도에 따라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법령상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 사도는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써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일부를 조정 가능

#### 마.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 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대상지역과 예측되는 대기오염도 등급 등
- ※ PM10과 PM2.5 중 더 나쁜 예보 등급을 미세먼지 예보등급으로 발표하며, 인체위해도를 고려한 국민 행동요령도 포함

#### 바.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권고기준)

- 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소유자 등이 관리하여야 하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 4. 용어정의

용어	정의
미세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크기에 따라 PM10(10 $\mu$ m 이하)과 PM2.5(2.5 $\mu$ m 이하)로 구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 미세먼지 “나쁨”이상 예보(17시 기준) ※ PM10 81 $\mu$ g/m <sup>3</sup> 이상 또는 PM2.5 36 $\mu$ g/m <sup>3</sup>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 미세먼지 1시간 농도 “나쁨”이상인 경우 ※ PM10 81 $\mu\text{g}/\text{m}^3$ 이상 또는 PM2.5 36 $\mu\text{g}/\text{m}^3$ 이상
미세먼지 대응	· 미세먼지를 사전에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환류하기 위해 정부·광역자치단체 등이 기획·집행·통제·보고하는 제반활동
주관기관	· 유형별 미세먼지 관리활동의 주된 책임을 지는 중앙행정·공공기관
유관기관	· 유형별 미세먼지 관리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일선기관	· 취약계층의 주요 활동공간인 노인요양시설
예비저감 조치	·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다음날(내일), 즉 비상저감조치가 예상되는 날 하루 전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 (공공부문)
비상저감 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차량운행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미세먼지 예보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지역별로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
미세먼지 경보	·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시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
경보 발령해제	· 미세먼지 농도가 경보해제기준에 해당하는 등 대기오염경보발령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가 즉시 경보를 해제 · 주의보의 경우 발령을 해제하고 경보의 경우 주의보로 전환

## 2.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기본방향

### 1. 대응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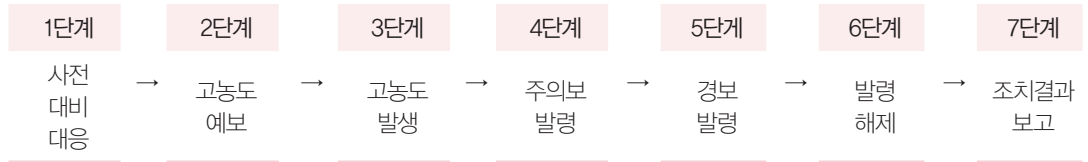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총괄(환경부)
  - 유관기관 협조 및 상황 전파 등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전파(광역자치단체)
  - 고농도 미세먼지 관측 및 예측을 위한 예보시스템 구축
  - 방송, 인터넷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파
  - \* 방송, SMS, FAX, 포털사이트, 기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 경보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해제(광역자치단체)
  - 경보(주의보, 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 대응조치 이행 및 대국민 홍보(노인요양시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영·유아, 학생, 어르신 등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실시 및 조치결과 보고

## 2.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체계

- 발령권자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전파방법 : 문자(담당자), 팩스(기관), SNS, 에어코리아(환경부) 및 시도 홈페이지

## 3.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 가. 대응단계



### 나. 기관별 단계별 조치사항 요약

구분	사전대비 대응	고농도 예보	고농도 발생	주의보 발령	경보발령	발령해제	조치결과등 보고
광역자치 단체(시도)	연락체계 점검 사전대응 계획마련	예보 확인	발생상황 확인대응 조치 협조요청 모니터링 강화	주의보 발령 전파, 조치사항 전파·이행이동상황 파악 등	경보 발령 전파, 재난문자 방송(CBS) 송출 지역상황반 운영	발령해제 전파	시도 조치결과 보고
기초자치 단체 (시군구)	연락체계점검 사전대응 계획 마련	예보 확인	대응조치 실시요청 대처상황 확인	발령상황 확인, 대처상황 확인, 조치사항 확인	발령상황 확인, 대처상황 확인, 조치사항 확인	발령해제 전파	조치결과 보고 (종료 후 7일 이내, 취합 및 시도 보고)
노인요양 시설	매뉴얼 숙지 및 사전 준비	예보 확인, 행동요령 공지 대응방안 검토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활동) 자제 등 대응조치 실시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등 대응조치 실시	발령상황 수시확인, 실외수업 금지, 질한자 파악 등 대응조치 실시	해제상황 수시확인, 실내외 환기, 청소 등 실시	조치결과 보고 (종료 후 시군구 보고(7일 이내, 시도 보고))

자연재난 관리

## 4. 대응단계별 조치사항

### 가. (1단계) 사전대비·대응 (노인요양시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시설 내 어르신 비상연락망 구축
- 어르신 및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
-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등) 등 비치 및 점검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mu\text{g}/\text{m}^3$  이하) 준수
- 실내 미세먼지 권고기준(PM2.5 70 $\mu\text{g}/\text{m}^3$  이하) 준수 노력

### 나. (2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 1) 상황

- 익일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이상일 경우(11시, 17시 기준)

〈 예보 “나쁨”이상 요건 〉

- (미세먼지 PM10) 해당지역의 PM10 24시간 평균농도가 81 $\mu\text{g}/\text{m}^3$  이상으로 예상될 때
- (미세먼지 PM2.5) 해당지역의 PM2.5 24시간 평균농도가 36 $\mu\text{g}/\text{m}^3$  이상으로 예상될 때

#### 2) 조치사항

##### 가) 광역자치단체(시도)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확인, 대응체계 점검, 필요시 일선기관 전파

##### 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확인, 필요시 일선기관 미세먼지 담당자에게 예보상황 전파
  - ※ 에어코리아([airkorea.or.kr](http://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질’앱 등 활용

##### 다) 노인요양시설

-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창틀, 바닥청소, 공기청정기 등 상태 점검
- 담당자는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 에어코리아([airkorea.or.kr](http://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질’앱 등 활용

**다. (3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나쁨”이상)**

**1) 상황**

- 고농도 미세먼지(“나쁨”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09:00~18:00)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요건 〉

- (미세먼지 PM10)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PM10 81 $\mu\text{g}/\text{m}^3$  이상 1시간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PM2.5)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PM2.5 36 $\mu\text{g}/\text{m}^3$  이상 1시간이상 지속인 때

**2) 조치사항**

**가) 광역자치단체(시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 확인, 고농도 악화지속 등 필요시 관계기관 대응조치 협조 요청(문자 발송 등)
-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관측 강화, 이동상황 및 강도 등 파악

**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 확인, 고농도 악화지속 등 필요시 노인요양시설 등 대응조치 실시 요청 및 대처상황 확인

**다) 노인요양시설**

-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안내문, 비상연락망 등으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 실외활동 자제, 실내생활 권고 및 바깥공기 유입차단(창문닫기)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라. (4단계)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1) 상황**

-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어르신 등 취약 계층에 건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주의보 발령 요건 〉

-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기준 개정 시행(18.7.1)

-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PM2.5) 〉

구분	발령 기준
예비 저감조치 (D-2일 발령)	① 당일(D-2일) 17시 예보기준으로 모레(D일) 초미세먼지 "매우나쁨"이 예측된 경우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초미세먼지(PM2.5)가 50 $\mu\text{g}/\text{m}^3$ 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비상 저감조치 (D-1일 발령)	① 당일(D-1) 0~16시 초미세먼지(PM2.5)평균 50 $\mu\text{g}/\text{m}^3$ 초과 및 내일(D-day)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50 $\mu\text{g}/\text{m}^3$ 초과 예상 ② 당일(D-1) 주의보(75 $\mu\text{g}/\text{m}^3$ 이상2시간) 및 내일(D-day) 평균 24시간 초미세먼지(PM2.5)가 50 $\mu\text{g}/\text{m}^3$ 초과 예상 ③ 내일(D-day)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75 $\mu\text{g}/\text{m}^3$ 초과 예상

2) 조치사항

가) 광역자치단체(시도)

- 미세먼지 주의보 및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행정조치 등 조치사항 전파 및 이행
-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관측 강화, 이동상황 및 강도 등 파악
- 내일 초미세먼지 '매우나쁨'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휴업 등의 권고여부 결정(미세먼지 경보발령 조치사항 참조)

〈 참고 : 주의보 발령 시 행정조치 사항 〉

- 행정기관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짜홀수제 시행, 관용차량 운행 감축 등)
- 대국민들에게 자동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 공회전 금지 권장
- 도로 물청소 시행(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공공기관 운영 대형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및 실외수업 체육시설 운영 제한
- 민간 운영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 및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일부중지 권고

〈 참고 : 예비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조치 사항 〉

- 공공기관 차량 2부제(짜홀수제 시행), 관용차량 운행 감축 등(공공)
-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조치 (공공)

〈 참고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조치 사항 〉

- 공공기관 차량 2부제(짝홀수제 시행), 관용차량 운행 감축 등(공공)
- 노후차량(사도조례로 정함)의 운행제한(공공+민간)
-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조치(공공+민간)

### 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노인요양시설 등 대처상황 확인 및 필요시 조치사항 접수보고
- \* 행정조치 사항(※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한 행정조치 시행)

### 다) 노인요양시설

- 담당자는 주의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을 성실히 수행
  -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질'앱 등 활용
- 어르신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생활 권고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이행
  - ※ 증상 모니터링, 실내 청정공간 돌봄, 보호자 연락을 통한 조기귀가 등 상황에 따른 대처
- 실내공기질 관리(예 : 공기정화장치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관리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 마. (5단계) 미세먼지 경보 발령

### 1) 상황

-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어 어르신 등 취약 계층에 건강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

〈 경보 발령 요건 〉

-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2) 조치사항

#### 가) 광역자치단체(시도)

- 지역상황반 구성·운영

-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재난문자방송(CBS) 송출
- 행정조치 등 조치사항 전파 및 이행
-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관측 강화, 이동상황 및 강도 등 파악
- 사도지사는 필요 시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휴업, 탄력적 근무제를 권고
  - ※ 요건 : ① 내일 '매우나쁨'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 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노인요양시설 등 대처상황 확인 및 조치사항 접수보고
  - \* 행정조치 사항(※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한 행정조치 시행)

#### 다) 노인요양시설

- 담당자는 경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을 성실히 수행
-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실외활동 금지 및 실내생활 권고
-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관리대책 이행
  - ※ 증상모니터링, 실내 청정공간 돌봄, 보호자 연락 및 조기 귀가 등 상황에 따른 대처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증상완화돌봄 등)
- 실내공기질 관리(예 : 공기정화장치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관리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 바. (6단계)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 1) 상황

-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발령 해제 요건 〉

##### ○ 주의보

-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mu\text{g}/\text{m}^3$  미만인 때
- (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mu\text{g}/\text{m}^3$  미만인 때

##### ○ 경보

- (미세먼지 PM10)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미만인 때 주의보로 전환
- (미세먼지 PM2.5)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mu\text{g}/\text{m}^3$  미만인 때 주의보로 전환

#### 2) 주의보 발령 해제 시 조치사항 (노인요양시설)

-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 창문 개방 등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등 파악, 환자는 휴식돌봄 또는 조기 귀가 등 관리 (조기귀가 등 실시할 경우 별도 안전대책 마련)

## 2) 경보 발령 해제 시 조치사항 (노인요양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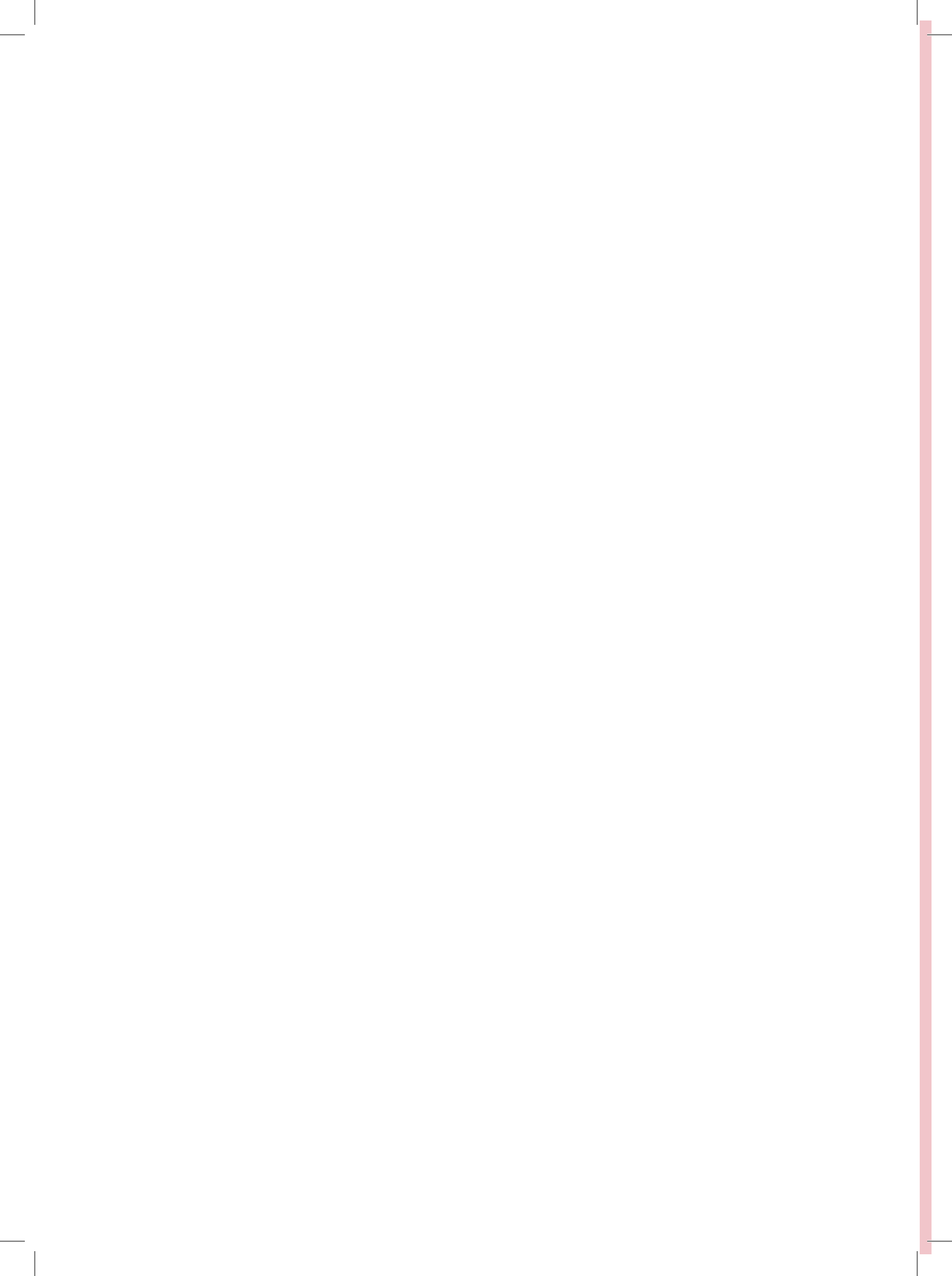
- 조치결과를 관계기관\*에 보고(경보 종료 후 7일 이내\*\*)
- \* 노인요양시설 → 시군·구담당부서 → 시도 담당부서
- \*\* 토요일·공휴일은 기간 산입에서 제외하며, 미세먼지 경보 상황이 연속하여 발생할 경우 마지막 경보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함께 보고 가능

## 사. (7단계) 미세먼지 경보 조치결과 등 보고

### 1) 보고내용 및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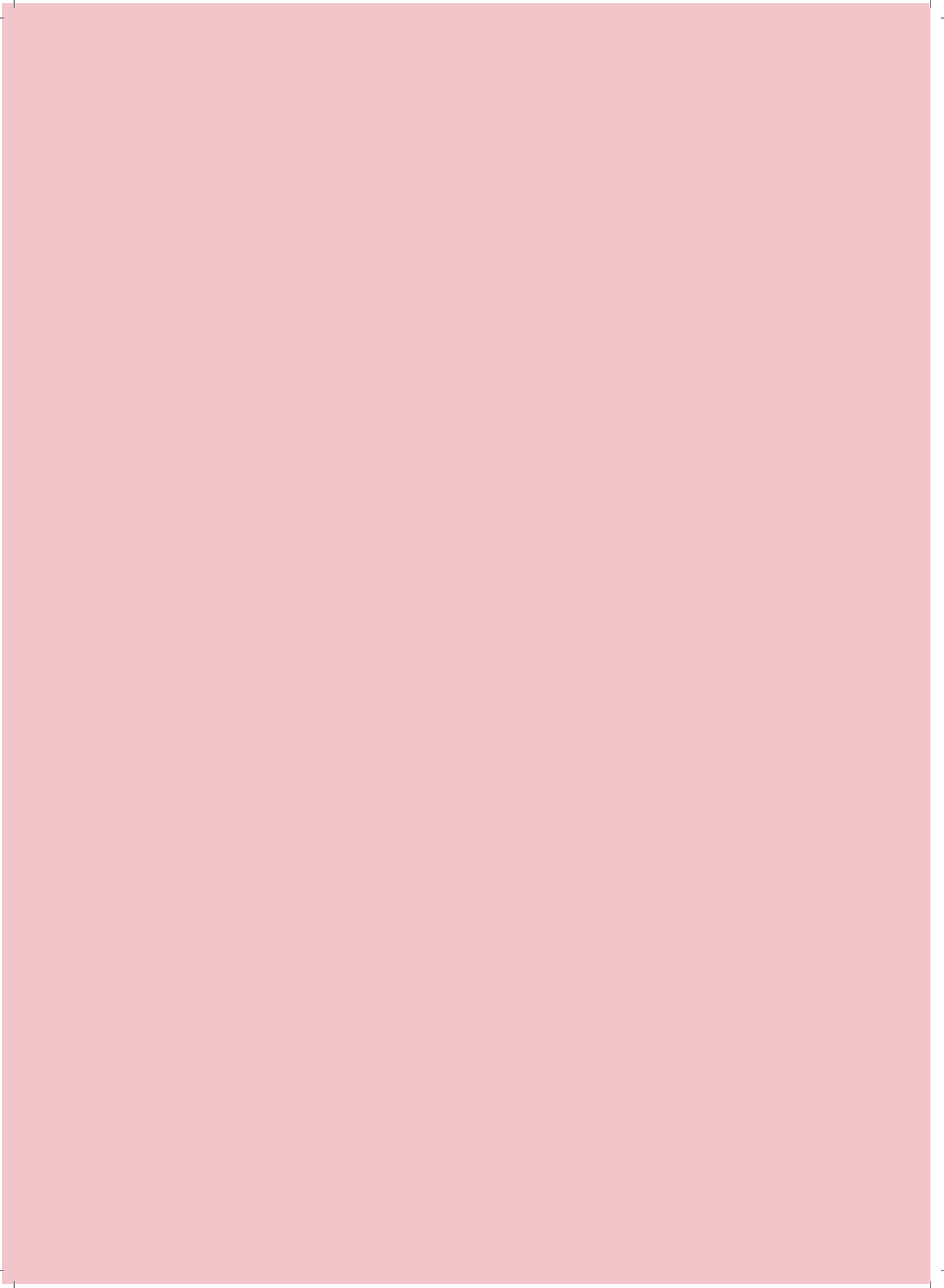
- (담당자 현황) 요양시설은 시군·구 요양시설 소관부서 보고 후 시도는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등 현황을 복지부(요양보험 운영과) 취합보고(서식1)
- (경보 조치결과) 경보 발생시 요양시설은 조치결과 시군·구 요양시설 소관부서 보고(서식3) 및 시도는 시군·구 조치현황을 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취합보고(서식2)
- \* 시군·구는 시도에 요양시설 경보발생 후 1주일 이내 취합 후 조치결과 제출
- \*\* 주의보 발생 시에는 보고하지 않음

### 2) 보고주기 : 반기 1회 (3,9월)



\*

붙임·참고



## 붙임 보고서식

### [서식 1]

#### 20○○년도 상/하반기 노인요양시설 담당자 지정 현황

□ 지정 현황 : 총 ○○개 기관 ○○명

연번	광역 자치단체	구분	기관현황(개)	지정기관(개)	담당인원(명)	비고(지정비율)
1		○○ 요양시설				
2						

\* 지정비율은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기관을 해당 광역자치단체 각 기관현황으로 나눈 값(%)

□ 세부 내역

연번	광역 자치단체	구분	시설명	담당자	직위	전화 번호	팩스 번호	비고 (앱설치)
1		요양시설	○○요양시설	○○○	원장			
2			○○요양시설	△△△	국장			
3								
4								
5								
			이하		생략			

\* 당해 내용은 작성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엑셀 등으로 작성제출가능

[서식 2] (광역자치단체 총괄부서)

20○○년도 ○반기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발령에 따른 조치현황

□ 경보발령 현황 : 총 ○회

〈 경보발령 개요 〉

연번	광역 자치 단체	발령일	오염물 질	권역	발령 농도 ( $\mu\text{g}/\text{m}^3$ )	해제 농도 ( $\mu\text{g}/\text{m}^3$ )	최고 농도 ( $\mu\text{g}/\text{m}^3$ )	발령 시간	해제시 간	비고
	〈예	시〉								
		1,5 ~1,6	PM-10	서북권	200	50	280	09	00	※기타 특 이사항

\* 당해 내용은 작성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엑셀 등으로 작성제출가능

□ 경보상황 전파

○ 총 개 기관에 경보 발령상황 전파

- (부연설명)

〈 경보발령 상황전파 및 조치내역 〉

구분	기관	방법	조치 내역
요양 시설	00요양시설 등 00개	모바일 앱, FAX, 문자발송	실외활동·금지 요청
언론기관	00일보 등 00개소	보도자료	00방송 TV 자막 00회
기타			대기오염전광판 표출 00개소 홈페이지 00, 버스 홍보 00
소계	000 (개)	-	

\* 특히 건강취약계층 관련시설의 경우 실외활동 금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교육 실시 등 조치내역을 상세히 기재

□ 조치 결과

○ 총 개 기관에서 □□□□, △△△ 등의 조치 실시

- (부연설명)

〈 경보발령에 따른 조치결과 〉

구분	기관	조치 결과
노인요양 시설	요양시설	현장방문 일정 조정 : 00요양시설 등 00개소 실외활동(체육활동)을 실내로 조정 : 00개소

[서식 3] (노인요양시설)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결과

- 기관명 : ○○○ 노인요양시설
- 제출일 : '○○.○.○ 09:00
- 경보발령 개요
  - (발령일시) '○○.○.○ 09:00
  - (경보농도)  $\mu\text{g}/\text{m}^3$
  - (해제일시) '○○.○.○ 09:00
- 기관별 조치사항
  - 
  -
- 기관별 조치결과
  - 
  - 
  -
- 기타(관계기관 협조 필요사항)

## 참고 1 노인요양시설 대응요령

□ 노인요양시설 미세먼지 담당자는 대응단계별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기관별 여건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단계	대응요령
<b>평시</b> 사전준비사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30분씩 실시</li> <li>• 미세먼지 '나쁨'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 (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li> <li>•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 (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li> <li>•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li> <li>• 출입구에 먼지제거용바닥매트 설치,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 착용</li> <li>•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li> <li>• 시설 내 어르신 비상연락망 구축</li> <li>• 어르신 및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 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및 홍보</li> <li>•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 -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li> <li>•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등) 등 비치 및 점검</li> <li>•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math>\mu\text{g}/\text{m}^3</math>) 준수</li> <li>• 실내 미세먼지 권고기준(PM2.5 70<math>\mu\text{g}/\text{m}^3</math>) 준수 노력</li> </ul>
<b>고농도 예보</b> 익일예보 "나쁨"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li> <li>•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질'모바일 앱 활용</li> </ul>
<b>고농도 발생</b> 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li> <li>• 어르신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li> <li>• 실외활동 자제, 실내생활 권고,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li> <li>•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필요한어르신 관리대책 이행</li> <li>•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li> </ul>
<b>주의보</b>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생활 권고</li> <li>•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식재료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li> </ul>
<b>경보</b>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외활동 금지 및 실내생활 권고</li> <li>•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등)</li> </ul>

※ 각 단계별 대응요령은 이전 단계의 대응요령을 포함



## 참고 2 고농도 미세먼지 7대 대응요령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실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주의사항> 임신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

###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 환기요령 〉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외부 미세먼지 '나쁨'이상시 자연환기를 자제하되, 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환기
  - ※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하는 실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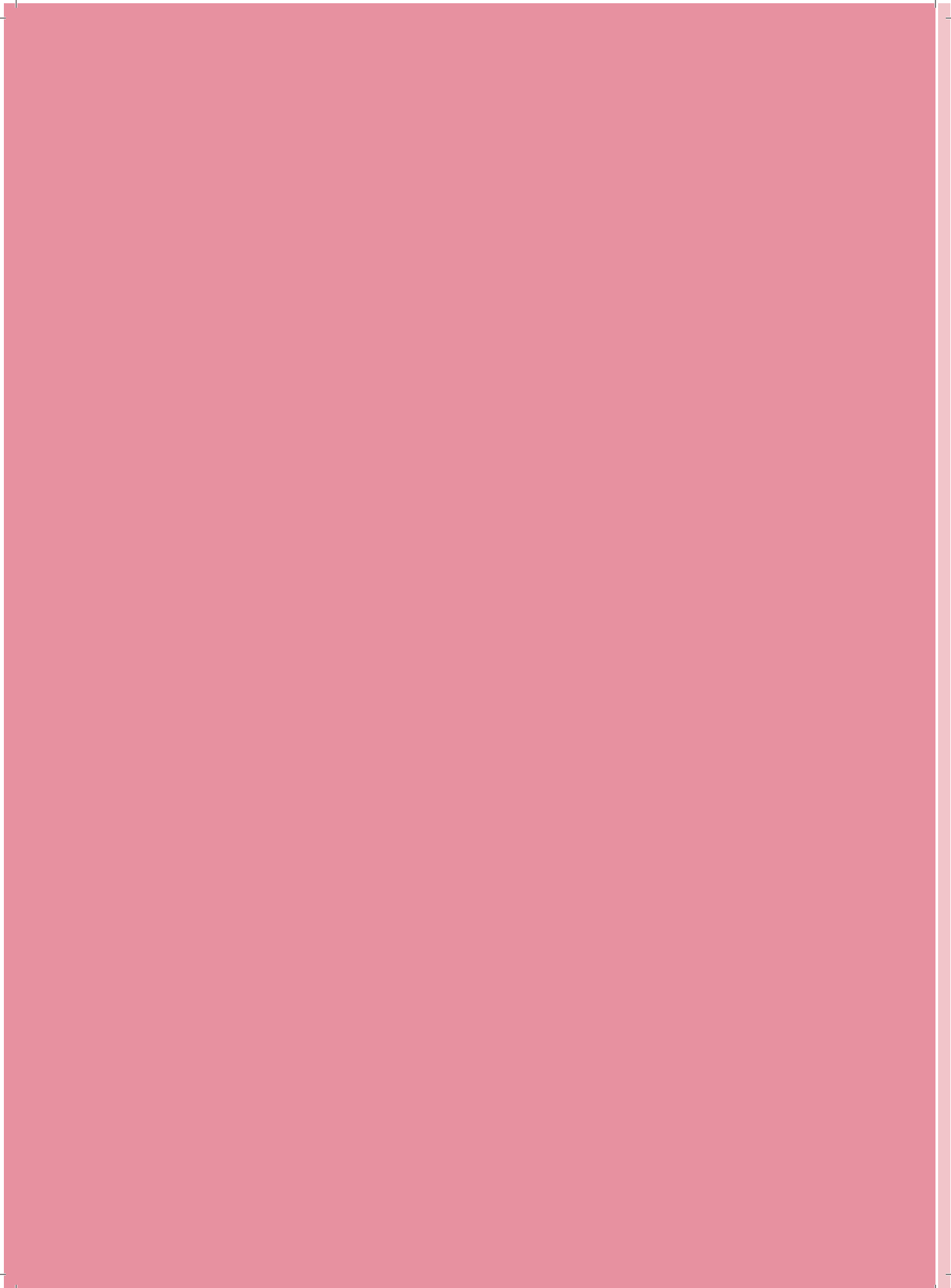
###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 2

## 인권 및 낙상



## 2-1

# 노인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지침

1 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지침	159
2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167

### [부록]

·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 지표	179
· 중앙 및 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187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재	189

본 매뉴얼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신고 의무자 교육교재'를 인용하였습니다.



## 1

# 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지침

## 1. 목적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2. 제정 배경

-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인구·고령화사회대책팀’을 발족(2003.10) 하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수립(2004.1)하여 보고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5)’를 운영하여 브릿지 플랜 2020(2016.12)을 발표함
- 노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정신적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의 건강보호,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조와 제4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와 제5조에서는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함
-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 12)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독립, 참여, 보호, 자아 실현, 존엄의 5개 영역의 18개 원칙을,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2002년)은 건강과 영양, 주택과 환경,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에서 취해야 할 98개 권고 조항을 명시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1.)에서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주요내용으로 한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 지침」을 최초 마련함(2006.5)
- 사회보장위원회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2014.10.)에서는 시설내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시설학대 평가 강화 등을 명시함
- 노인복지법 개정(2015. 12)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노인학대 시설의 위반사실의 공표 등 노인복지시설내의 노인학대 행위자와 시설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명시함, 또

한 제39조의5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 인권정책 개발 등을 명시함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하려는 자와 종사자·수급자의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2018.4)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이에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리와 존엄한 노후생활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 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 정치 등) 관계에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이성교재,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 시설 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

###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 1. 입소 전 단계

### ① 시설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운영주체, 위치, 환경, 서비스내용 등)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 시설은 카페, 블로그, 메신저, 기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노력 하며, 노인과 보호자가 시설에 대한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정보 수집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 경우 안내책자 등을 제공하며, 질문에 친 절하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에 정보요청 시 정보제공에 의해 제3자(동료 생활노인 등)의 피해가 발생하 지 않는 범위에서 성실히 임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선택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2. 입소 계약단계

### ②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 활동 참여, 권리와 의무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 입소 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항목과 비용 등) 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입소절차, 운영 규칙 및 규정, 기관 라운딩 등 시설 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대상자 특성에 맞게 설명 또는 공지해야 한다.
- 노인이 시설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받게 되는 상황이 공유 되어야 한다.

### ③ 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 공정한 입소 계약을 맺을 권리

- 입소 계약과정에서 노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며, 존중되어야 한다.
- 가족 등 타인의 강요가 아닌 노인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러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시설은 돌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을 배척하는 등 편익에 의해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입소노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의료적 서비스가 더 필요하거나 입소정원 초과 등 합리적 사유로 입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노인 및 보호자에게 타 시설 소개 등 노인이 적합한 서비스를 공백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입소 계약 시 당사자(시설, 노인, 보호자 등)들은 노인이 시설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정보(노인의 성격, 취향 등)를 나누며, 계약서는 서명 후 당사자들이 각 한 부씩 보관한다.
  - ※ 입소 계약 '당사자'는 입소자 본인이 원칙이며, 인지기력 부족 등의 사유로 본인에 의한 입소 계약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하여야 함

### 3. 생활단계

#### 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 및 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노인이 서비스 변경 요청 시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시설 내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며, 강요나 강압이 아닌 자유 선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 노인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이 늦어질 때 그 이유를 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개인적 생활스타일(헤어스타일,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자기결정과 선택이 어려운 노인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
- 노인 및 보호자가 부적절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노인 및 보호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②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 휠체어 등 보조기구 이동 공간 확보, 미끄럼 방지,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등 저하된 신체기능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기, 온도, 습도, 소음, 채광, 조명, 청소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소방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장치(비상벨 등)를 필요한 장소(생활실, 화장실, 욕실 등)의 사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 ③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개인정보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입소상담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한 비밀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돌봄,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입소 노인의 개인적 사생활이 농담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 입소 노인이 원할 때 정보통신기기(유무선 전화기 등) 사용,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④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치매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돌봄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에 대한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니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의한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입소 노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 생활노인,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하며, 막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⑤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등 신체조건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노인에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 서비스의 제공시 안전을 이유로 신체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⑥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시설은 급여제공 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 다만,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일시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시설은 생활노인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노인의 심신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⑦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생활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 종사자의 편익에 따라 식사시간이 조정되지 않도록 하며, 연하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연하곤란

- 식사 제공 방안에 따라 적절한 음식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 노인의 건강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체근육재활 및 밀착 돌봄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기저귀 케어가 불필요한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배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시 노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건강상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건강권이 우선시 되도록 보호자와 상의하는 등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시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어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⑧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내 자발적 모임 참여 등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 하는 것에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 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시설장은 노인의 지역행사 참여, 자원봉사자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자유로운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삶의 방식 등 문화적 차이와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프로그램 기획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⑨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 할 권리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인물품을 관리·보관하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사물함 등을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금전 및 물품관리와 사용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 노인에게 후원금품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개인 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 ⑩ 이성교재,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 노인의 이성교재를 금기시하거나 흥밋거리로 다루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 노인의 성적욕구를 인간의 기본욕구로서 선입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 흡연, 음주 등 특정 기호품 사용에 대해 개별적인 욕구가 표현된 경우, 시설에 생활하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어진 시설환경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⑪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과 보호자의 불만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 시설생활의 불편함과 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건의함, 고충처리 위원회 등)를 마련해야 한다.
- 노인과 보호자의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과 보호자가 불만, 불평, 고충처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4. 퇴소단계

### ①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 하고 퇴소 후 거주지(원가정 복귀, 전원, 입원 등)를 선택할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 및 보호자의 퇴소 결정은 최대한 존중 되어야 하며, 노인의 퇴소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한 회유, 강요, 협박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 다른 시설로 전원을 검토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할 필요가 있는 노인은 전원 상담 등을 통해 자유

로운 의사표현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 퇴소 후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생활노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보호자의 방임, 생활노인의 개인적 성향, 종사자와의 불화 등 부당한 사유로 노인의 퇴소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 퇴소 이후에도 노인의 삶이 적정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 등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아보고 노인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의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 강령 〉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건강상태,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노인의 면회나 외출, 외박 기회를 거부하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 노인의 이성교재 등 사생활이 놀림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2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 1. 관련 근거 및 노인학대 신고

- 사회보장위원회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2014.10.)에서 시설내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학대사례 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시설학대 평가 강화 등을 명시함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군의 장 및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해야함
- 학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명단·이력 공표, 시설종사자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시설 운영·취업 제한 등 시설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2015.12, 시행)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4~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등
- 노인학대 신고전화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129), 정부 민원안내콜센터(110), 경찰(112),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노인학대 신고 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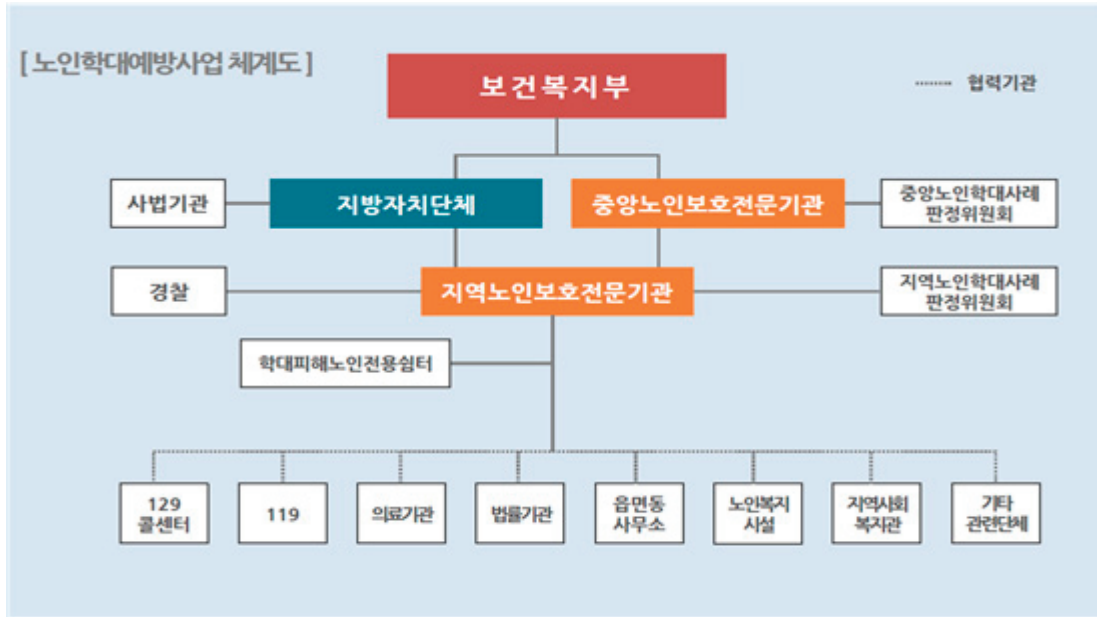
### 2.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3.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 노인학대예방사업 업무 체계도 〉



#### 1.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보호전문상담원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 2. 시도

-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내 보호체계 구축,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활동에 관한 교육·홍보와 지원 등
- ※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가정의 달로 함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생활시설 학대 발생시설 자료 취합 등 관리(광역시도 → 보건복지부)



### 3. 사군구

- 담당공무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7항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 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의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기초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 학대 발생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 관할지역 내 시설학대 발생 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사법경찰관리 등과 동행하여 현장조사 및 학대피해 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실시
  - 담당 공무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동행 요청시 반드시 참석해야 함
- 관할 지역 내 시설학대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은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하여야 함.
- 사군·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에 따라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노인폭행, 성폭행, 방임, 정서학대 등)로 제6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시설장 성명 및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음. 이 경우 공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횡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13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시에는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동안 공표하여야 함(이하 생략)
- 생활시설내 노인학대 발생 시설 조치 결과(행정처분 결과 등)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군·구에서 광역 시도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조치결과를 통보 해야함
- 사군·구청의 장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함

#### 4.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의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학대사례 판정,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한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 생활시설 학대 발생시설 조치결과를 시·군·구에서 받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지역노인 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법인명, 대표자명, 시설명, 시설장명, 주소, 학대행위자, 위반행위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

#### 5. 노인복지시설

- 시설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보 해야하며, 시설수급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조사 협조,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 내 종사자 및 수급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 발생 현황 작성 및 시군구에 조치결과 보고 등
-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39조의17제5항)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최대 10년 이내) 시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개요 〉

- (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시행령 제20조의9에서10, 시행규칙 제29조의19에서20
- (대상)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노인관련기관 취업 제한명령 받은 사람
- (제한 기관) 제39조의17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노인관련기관
- (제한기간)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선고(‘19.6.12일부터 적용)
  - 법률 개정 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개정법 부칙(제15880호)에 따라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 3년 초과인 징역 또는 금고형, 치료감호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5년 취업제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치료감호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3년 취업제한
    - 벌금형 :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취업제한
  -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 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자 신분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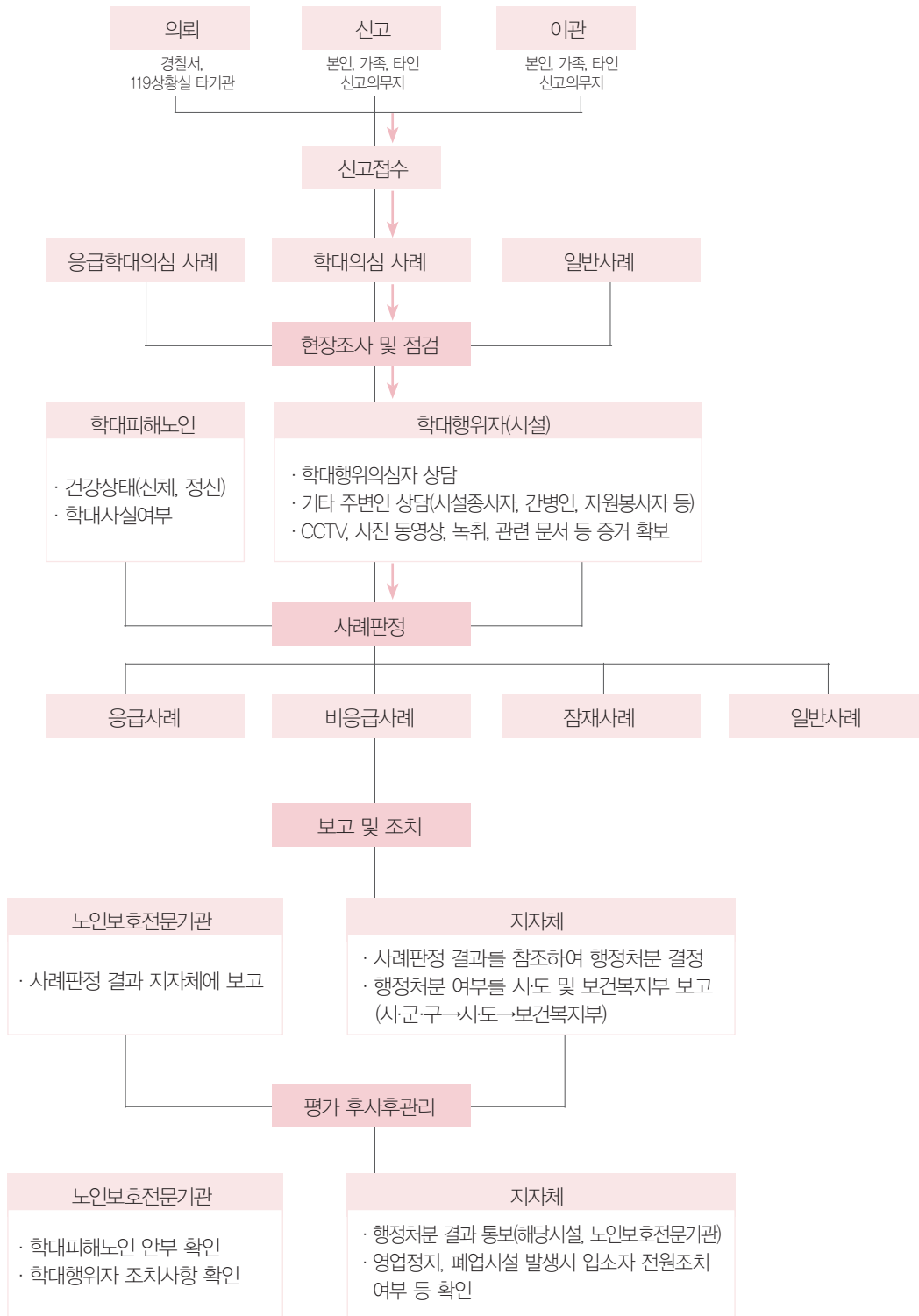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함
  - ※ 노인복지법 제55조의3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노인복지법 제 57조)

## 4.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설 입소 노인 학대사례 업무진행도



## 5.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 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징후가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에 알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신고 관련 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전화110),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에 알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고,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 노인복지법 제60조 양벌규정에 의해 노인의 신체에 대한 상해행위에 대해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시설의 장은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노인의 영양상태 및 급식 위생상태(유통기한 지난 음식 등)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2. 조사와 사정

### 〈노인복지시설〉

- 학대사실을 알게 된 시설운영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학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조작 또는 삭제하면 안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조사 또는 질문을 통하여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학대행위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육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신고된 노인학대 학대 사례는 조사원료와 함께 그 사실을 사군·구에 소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3. 학대사례의 판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를 받은 사군·구는 조치결과를 즉시 사도에 보고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사도는 즉시 복지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에 따른다.

-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의 조사 등을 통해, 어느 한 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4.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노인복지시설〉

- 시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결과를 반영하여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시설의 계획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학대피해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학대 의심 또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의 격리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 시설의 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현장조사 원료와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의 격리와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의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 및 조치에 따라 이행되도록 한다.
-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각 법률에 의거하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평가와 사후조치

-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학대피해 노인의 안전이 확보 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발생 시설의 장은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과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권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인권교육(방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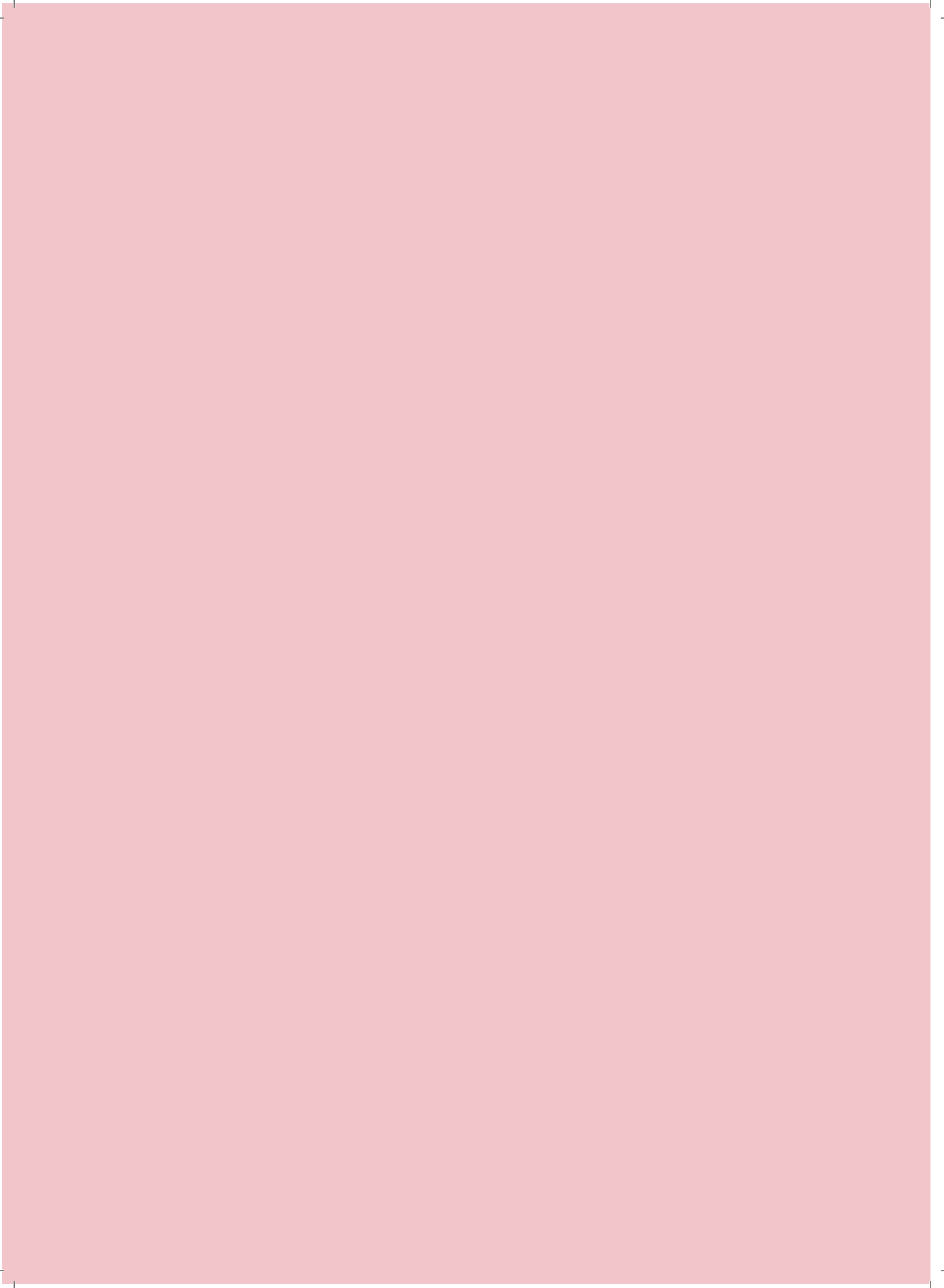


\*

#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지침

## 부록

1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 지표	179
2	중앙 및 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187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재	189



## 부록-1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

- 2023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2023.4)에 제시된 노인학대의 유형별 대표적 행위는 다음과 같음

### |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 지표 1 : 노인을 폭행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신체 일부를 이용하여 노인을 폭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먹으로 친다.</li> <li>· 뺨(따귀)을 툭툭 치거나 때린다.</li> <li>· 꼬집는다.</li> <li>· 할퀴는다.</li> <li>· 머리를 쥐어박는다.</li> <li>· 발로 친다.</li> <li>· 멍이 들 정도로 탁탁 친다.</li> <li>· 밀치거나 넘어뜨린다.</li> <li>·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친다.</li> <li>· 머리채를 움켜잡거나 잡아당긴다.</li> <li>· 머리,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아 흔든다.</li> <li>· 팔 또는 발을 비튼다.</li> </ul>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을 폭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막대기, 끈, 빗자루 등으로 구타한다.</li> <li>· 신문, 서류철 등으로 친다.</li> <li>· 베개 등으로 친다.</li> <li>· 이불 등을 덮은 후 때린다.</li> <li>· 물건을 던져 노인이 맞는다.</li> <li>·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한다.</li> <li>·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li> </ul>
노인을 누르거나 억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멍살을 추켜잡는다.</li> <li>· 목을 조르거나 누른다.</li> <li>· 몸을 제압하거나 누른다.</li> <li>· 발로 몸을 밟아 누른다.</li> <li>· 입을 막거나 입술을 짝 잡는다.</li> <li>· 몸을 벽이나 구석으로 밀어붙인다.</li> </ul>
노인의 몸을 함부로 다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의 일부를 잡고서 끌고 다닌다.</li> <li>· 사지를 붙잡고 이동시킨다.</li> <li>· 손이나 발로 툭툭치며 다룬다.</li> <li>· 짐짝처럼 마구 다룬다.</li> <li>· 손 대신 발로 노인을 다룬다.</li> </ul>

- 지표 2 :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억제대로 노인의 신체를 구속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 유지 또는 치료 목적 외에 억제대(벨트, 조끼, 장갑 등)를 사용한다.</li> <li>·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와 사후 정황보고 또는 본인 동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한다.</li> <li>· 전신 억제대를 사용한다.</li> <li>· 장시간 억제대를 사용한다.</li> </ul>
억제대 외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의 몸을 묶거나 구속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억제대가 아닌 도구(끈, 천, 수갑, 테이프 등)로 몸 또는 몸의 일부를 구속한다.</li> <li>· 억제대가 아닌 도구로 침대, 기동 등에 묶는다.</li> <li>· 침대 난간 높이를 높게 하거나 철책을 설치하여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li> </ul>
노인을 감금하거나 격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 또는 격리실 등에 자물쇠, 끈, 막대기 등을 설치하여 못나오게 한다.</li> <li>· 방 또는 일부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위협적으로 막는다.</li> <li>· 벽만 응시하여 보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li> <li>· 시설 밖으로 못나가게 감금하거나 감시하며 막는다.</li> </ul>

- 지표 3 :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위험한 도구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칼이나 가위, 주사기 등을 들이대어 협박하거나 위협한다.</li> </ul>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 파손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건(의자, 양동이, 화분, 유리컵 등)을 던져 협박하거나 위협한다.</li> <li>· 벽을 치거나 거울을 깨는 등의 행위로 협박하거나 위협한다.</li> <li>· 주변에 있는 집기나 물품(예: 의자, 침대, 침구 등)을 발로 걷어차며 협박하거나 위협한다.</li> </ul>

- 지표 4 :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의 기본 생존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단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수상태에 빠질 정도로 물을 주지 않거나 단절한다.</li> <li>· 영양실조에 빠질 만큼 최소량의 음식도 주지 않거나 단절한다.</li> </ul>
노인에게 강제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의료처치를 하여 생명을 저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면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등을 강제로 먹인다.</li> <li>· 강제로 주사를 놓는다.</li> <li>· 강제로 불필요한 의료처치를 한다.</li> </ul>
노인의 치료 및 생존에 필요한 약물 및 주사를 단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가 처방한 약이나 주사제 또는 생존에 필요한 약물 및 주사를 단절하여 치료를 방해한다.</li> </ul>
노인의 기본 생존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단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 난방을 단절한다.</li> <li>· 수도, 전기, 가스를 단절한다.</li> </ul>

- 지표 5 :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원하지 않은 일(노동)을 강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원치 않음에도 농지 경작 또는 임야 정리 등의 일을 시킨다.</li> <li>· 노인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원치 않음에도 시설 청소, 조리, 설거지 등의 일을 시킨다.</li> <li>· 노인에게 사택 또는 시설장 집의 일을 시킨다.</li> <li>· 강제로 다른 노인을 돌보게 한다(식사수발, 기저귀 교체, 목욕 등).</li> </ul>
노인을 감금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또는 다른 공간에 가두고 일을 시킨다.</li> <li>· 노예처럼 일을 시킨다.</li> </ul>

### |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 지표 1 : 노인을 무시하거나 기피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li> <li>·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한다.</li> <li>· 요청에 대응하지 않는다(물이나 약을 달라,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 밥을 더 달라 등).</li> </ul>
노인을 기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한다.</li> <li>·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피한다.</li> <li>· 자신의 손이 노인에게 닿는 것을 피한다.</li> </ul>

- 지표 2 : 노인의 사회적 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 종교활동, 취미여가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활동, 종교활동, 취미여가활동을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강요한다.</li> <li>· 다른 노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li> <li>· 노인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li> <li>· 종교적 물건(염주, 십자가, 묵주 등)의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강요한다.</li> <li>· 전화, 컴퓨터, 신문, 개인우편물·구독물·인쇄물 수취를 제한하거나 단절한다.</li> <li>· 투표 참여를 제한하거나 강요한다.</li> </ul>
노인이 가족이나 친구와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이나 친구의 면회나 방문을 방해한다.</li> <li>· 가족이나 친구와의 전화 통화를 방해한다.</li> <li>· 외출과 외박을 막는다.</li> </ul>
노인을 집단으로 따돌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노인들과 공모하여 따돌린다.</li> <li>· 직원, 자원봉사자, 실습생들 간에 공모하여 따돌린다.</li> </ul>

● 지표 3 : 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난하거나 험담한다.</li> <li>· 창피를 준다.</li> <li>· 꾸짖거나 야단친다.</li> <li>· 구박하거나 괘시한다.</li> <li>· 비웃거나 조롱한다.</li> <li>· 누명을 씌운다.</li> </ul>
노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말을 한다.</li> <li>· 존칭어로 부르지 않거나 별명을 부른다.</li> <li>· 아기에게 하는 말투로 구슬린다(00하면 사탕 줄게, 아 착하지 등).</li> <li>· 아이를 나무라듯이 말한다.</li> <li>· 노인이 감추고 싶어 하는 사생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li> </ul>

● 지표 4 : 노인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에게 폭언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향(큰 소리)을 지른다.</li> <li>· 욕설이나 상스러운 말을 한다.</li> <li>· 욕박지른다(예: 혼나볼래! 쫓겨나봐야 알겠어! 등)</li> </ul>
노인에게 두려움을 주는 행동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때리는 시늉을 한다.</li> <li>· 삿대질을 한다.</li> <li>· 주먹을 들이대며 위협한다.</li> <li>· 인상을 쓰며 말한다.</li> <li>· 끔찍하거나 혐오스러운 상황을 보게 한다.</li> </ul>

● 지표 5 : 노인의 사생활과 입퇴소와 관련한 의사결정권을 제한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확실적인 서비스를 강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률적인 헤어스타일을 강요한다.</li> <li>· 확실적인 옷차림 강요한다.</li> <li>· 시설에서 제시한 일정에 무조건 따르도록 강요한다.</li> </ul>
노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다.</li> <li>· 개인 정보 및 의료기록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활용한다.</li> <li>·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막는다.</li> </ul>
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퇴소 또는 전원 결정시 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다.</li> <li>· 의논 없이 임의로 방을 바꾼다.</li> </ul>

| 성적학대(Sexual Abuse)

- 지표 1 : 노인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에게 성추행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에게 입맞춤, 포옹, 애무 등을 한다.</li> <li>· 가슴이나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진다 (더듬거린다, 쓰다듬다, 툭툭친다, 꼬집는다, 비튼다, 움켜잡는다 등).</li> <li>· 노인에게 자신의 성적 부위 등을 만지게 하거나 애무를 요구한다.</li> </ul>
노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강요한다.</li> <li>·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을 성폭행한다.</li> <li>·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인 노인을 이용하여 성폭행한다.</li> </ul>

- 지표 2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란하고 상스러운 성적 농담을 던진다.</li> <li>· 신체를 빗대어 성희롱을 한다.(예: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li> <li>·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소문을 유포한다.</li> <li>· 목욕, 기저귀교체 등에 대해 동성자의 케어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치하지 않는다.</li> </ul>
노인에게 음란물이나 타인의 음란행위를 보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실 등의 공용 공간 등에서 음란영상을 보게 한다.</li> <li>· 음란한 사진,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준다.</li> <li>·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지는 행위를 보게 한다.</li> <li>·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li> </ul>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저귀 찬 모습을 촬영한다.</li> <li>· 알몸이나 성적 부위를 촬영한다.</li> <li>· 촬영된 성적 신체 부위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한다.</li> </ul>
노인을 벗겨놓은 상태로 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옷을 입히지 않고 그대로 둔다.</li> <li>· 알몸 또는 성적부위를 가리지 않은 상태로 둔다.</li> </ul>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노인의 신체 및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교체한다(예:가림막 미설치 및 가림막 미사용)</li> <li>· 알몸 또는 신체 일부를 벗겨놓고 목욕대기를 하게 한다.</li> <li>· 신체와 성적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목욕을 시킨다.</li> <li>·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옷을 갈아입힌다.</li> </ul>

| 경제적 학대(Financial Abuse/Exploitation)

- 지표 1 :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의 현금, 물건, 부동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li> <li>· 물건이나 소지품을 가로채서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한다.</li> <li>· 노인의 동의 없이 노인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li> <li>· 연금(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수당(장애수당, 생계급여 등), 임대료, 주식, 보험금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li> <li>· 노인이 받은 선물, 돈, 음식물 등을 가로챈다.</li> <li>· 노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li> <li>· 부동산을 임의로 사용한다.</li> <li>· 퇴소 시 입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li> </ul>
노인에게 서비스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소 시 부당한 추가비용을 요구한다.</li> <li>· 서비스 이용료를 과도하게 요구한다.</li> </ul>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부업 등에 참여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지급한다.</li> <li>· 시설 내 대체인력으로 활용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li> </ul>

- 지표 2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의 재산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 서류, 계약서, 위임장, 유언장 등에 서명을 날조한다.</li> <li>· 동의 없이 부동산 또는 고가의 동산의 명의를 변경한다.</li> </ul>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 사채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li> <li>· 동의 없이 노인의 은행 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li> <li>· 동의 없이 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보험을 계약한다.</li> </ul>

- 지표 3 : 노인의 재산 사용이나 그 결정을 통제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 공양, 후원금, 기부금 등을 강요한다.</li> <li>· 노인이 희망하는 현금을 비롯한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한다.</li> <li>·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이나 소지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한다.</li> </ul>
노인 명의의 재산을 강제로 소유하려고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 명의의 재산을 소유하려고 협박한다.</li> <li>· 금융 서류, 계약서, 위임장, 유언장 등에 서명을 강요한다.</li> </ul>



| 방임(Neglect)

- 지표 1 : 노인의 일상생활 관련 보호 및 서비스를 방치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식사 및 수분공급을 방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의 돌봄을 소홀히 한다.</li> <li>· 스스로 수분 섭취가 어려운 노인의 돌봄을 소홀히 한다.</li> <li>· 질환에 따른 식사(예: 당뇨식, 저염식, 유동식 등)를 먹이지 않는다.</li> <li>· 대소변을 자주 본다고 물과 음식을 적게 먹인다.</li> </ul>
노인에게 부적절한 돌봄을 제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옷을 과격하게 입히거나 벗긴다.</li> <li>· 빨리 식사를 마치도록 재촉한다.</li> <li>· 강제로 빠르게 먹인다.</li> <li>· 음식을 다 먹지 못했는데도 식판을 치운다.</li> <li>· 기저귀, 옷, 약 등의 물건을 던져준다.</li> </ul>
노인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이용을 제한시킨다.</li> <li>· 화장실에서 배변처리를 해주지 않은 채 장시간 내버려 둔다.</li> <li>· 기저귀에 용변을 본 상태로 장시간 내버려둔다.</li> <li>· 스스로 세면, 양치질, 머리감기, 뒷물, 목욕 등이 어려운 노인을 불결한 상태로 내버려둔다.</li> <li>· 의복이나 침구를 불결한 상태로 내버려둔다.</li> </ul>
노인의 체위변경 및 이동을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창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체위변경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다.</li> <li>·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걷기 등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내버려둔다.</li> </ul>

- 지표 2: 노인을 부적절한 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에게 부적절한 음식을 제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인다.</li> <li>· 상하거나 부패한 음식을 먹인다.</li> <li>· 먹다 남은 음식을 먹인다.</li> <li>· 음식점에서 버린 음식을 먹인다.</li> <li>·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인다.</li> </ul>
노인을 위험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난방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li> <li>· 침실이 아닌 곳에서 자게 한다(예: 창고, 복도, 욕실).</li> <li>· 감염, 전염 등의 위험이 있는 환경에 방치한다.</li> <li>· 안전사고(화상, 낙상, 감전, 충돌, 질식, 중독 등)의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 방치한다.</li> </ul>
노인에게 기본 물품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물건(의복, 침구, 위생용품) 및 비품(개인사물함, 보장구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li> <li>· 시설에서 비위생적인 물건 및 비품을 제공한다.</li> </ul>

- 지표 3 :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노인의 질환 및 의료조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뇨, 혈압 등 질환을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li> <li>· 질환 치료와 관련된 약 복용을 소홀히 한다.</li> <li>· 욕창 발생 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li> <li>· 삽입된 기관 및 소변줄, 장루 등을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한다.</li> <li>· 보호자가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대한 의료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다.</li> </ul>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상황임에도 즉각적으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li> <li>· 병원 진료가 필요함에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내버려 둔다.</li> <li>· 병원 진료를 막는다(예: 공실,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li> </ul>

- 지표 4 : 자기방임 노인을 방치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돌봄 및 의료처치 등의 거부가 노인의 생명에 위협됨을 알면서도 방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사 거부 등의 행위로 생명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노인을 방치한다.</li> <li>·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을 거부하여 생명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노인을 방치한다.</li> <li>·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돌봄을 거부하는 노인을 방치한다.</li> </ul>
자살을 계획하거나 시도하는 노인을 방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약물이나 알코올을 남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다.</li> <li>· 노인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li> </ul>

- 지표 5 : 학대사례를 방치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학대로 의심되거나 학대당하는 노인을 보고도 은폐하거나 방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이 동료 노인에게 폭행 또는 괴롭힘을 당하였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li> <li>· 동료 직원 또는 실습생 등 돌봄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노인을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다.</li> </ul>
학대를 신고하려는 자를 의도적으로 방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학대를 신고하려는 자를 저지한다.</li> <li>· 노인학대 사실을 가족 또는 외부인에게 알리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협박한다.</li> </ul>

### | 유기(Abandonment)

- 지표 :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유기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내다 버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낸다.</li> <li>· 길거리에 내다버린다.</li> <li>· 소풍, 쇼핑 등 외부활동 후에 노인을 놔두고 온다.</li> <li>· 길을 잃거나 실종되었다는 이유로 노인을 찾지 않는다.</li> <li>· 노인을 타시설로 보낸 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는다.</li> </ul>

- ※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는 노인학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이며 학대 정황 및 진술,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이 이루어져야 함
- ※ '대표적 행위'는 노인학대 유형을 판정하기 위한 대표적 행위만을 나열한 것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라고 하여 노인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님

## 부록-2 중앙 및 시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 (38개소)

(노인학대 상담전용 전화 1577-1389 또는 129)

2023년 11월 초

구분	주소	연락처	홈 페이지
중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6가길 14 4층(한국가정법률상담소)	02)3667-1389	www.noinboho1389.or.kr
서울남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4층	02)3472-1389	www.seoul1389.or.kr
서울북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	02)921-1389	www.sn1389.or.kr
서울서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10길 30-1, 5층	02)3157-6389	www.sw1389.or.kr
서울동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703, 301호	02)470-1389	www.se1389.or.kr
부산동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8 연합뉴스빌딩 5층	051)468-8850	www.bs1389.or.kr
부산서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8번길 46, 제이에스빌 5층	051)867-9119	1389.bulgukto.or.kr
대구남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41, 2층	053)472-1389	www.dg1389.or.kr
대구북부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84	053)357-1389	www.dgn1389.or.kr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시사회복지관 204호	032)426-8792~3	www.ic1389.or.kr
인천서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65번안길12, 2층(왕길동)	032)569-0533	www.innoin1389.or.kr
광주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 7, 빛고을노인건강타운체육관 1층	062)655-4155~7	www.gjw.or.kr/kj1389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70번길 103	042)472-1389	www.dj1389.or.kr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로 121, 3층	052)265-1389,1380	www.us1389.or.kr
경기동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1 포인타운 505호	031)736-1389	www.gg1389.or.kr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04 예찬빌딩 5층	031)821-1461	www.gg1389.or.kr
경기서부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501 양촌빌딩 4층	032)683-1389	www.gg1389.or.kr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1번길 1, 노인회관 4층	031)268-1389	www.gg1389.or.kr
경기북서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9 그랑프리프라자 406호	031)978-1389	www.gg1389.or.kr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회관 2층 201호	033)253-1389	www.1389.or.kr
강원특별자치도동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울곡로 2954, 3층	033)655-1389	www.gd1389.or.kr
강원특별자치도남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170, 새한빌딩 2층	033)744-1389	www.gn1389.or.kr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 3층	043)259-8120~2	www.cb1389.or.kr
충북북부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76	043)846-1380~2	ww.cbb1389.or.kr
충남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206번길 42	041)534-1389	www.cn1389.or.kr
충남남부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9 2층	041)734-1389	www.cnn1389.or.kr

구분	주소	연락처	홈 페이지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57-23	063)273-1389	www.jb1389.or.kr
전북서부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93 1층	063)542-1389	www.jbw1389.or.kr
전라남도 동부	전남 순천시 저전길 84	061)753-1389	www.jn1389.or.kr
전라남도 서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5길 전남노인회관 4층	061)281-2391	www.j1389.or.kr
경북동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기쁨의 복지관 B102	054)248-1389	www.noin1389.or.kr
경북북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1	054)655-1389	www.gbnw1389.or.kr
경북서부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대로 981-8	054)436-1390	www.gbwn1389.or.kr
경북남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18, 3층	053)716-1389	www.snoin1389.or.kr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15 금강노인복지관C동 1층	055)222-1389	www.gn1389.or.kr
경상남도 서부권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98 2층	055)754-1389	www.gnw1389.co.kr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7길 3	064)757-3400	www.jejunoin.org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29 2층	064)763-1999	www.sgpnoi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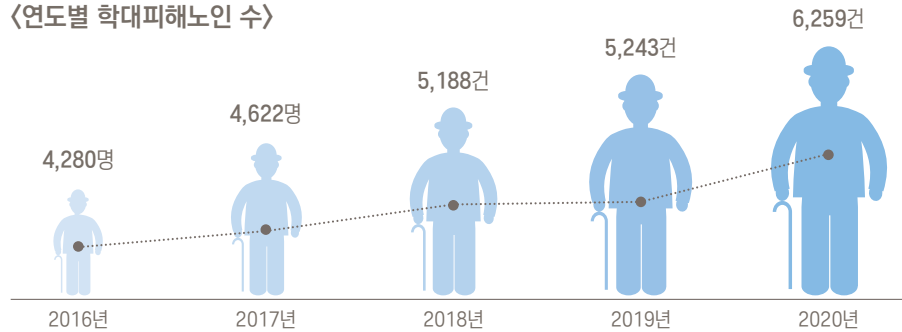
부록-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재

# 01 노인학대 현황

## Q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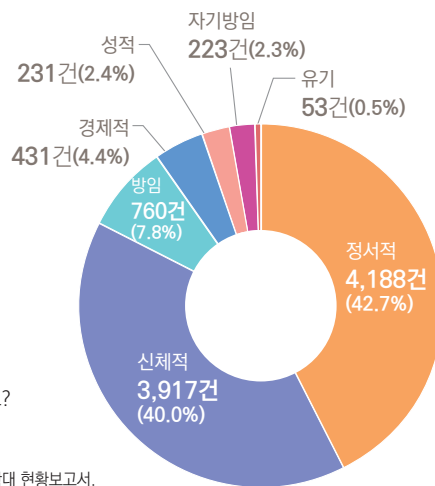
〈노인학대 유형〉

**노인 10명 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오늘 하루, 노인학대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었나요?
-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일이겠지...’라는 생각에 모른척 하지는 않았나요?
-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노인학대에 해당하지는 않았나요?

※ 중복학대 건 포함하여 집계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21).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노인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지침

# 0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란?



## Q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란 무엇인가요?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일부개정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추가 (2022. 03. 22. 시행)**

16. 제39조의6제2항제16호 「병역법」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Q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2호).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노인학대가 오랜기간 반복되고, 점차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 Q 신분 노출 걱정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는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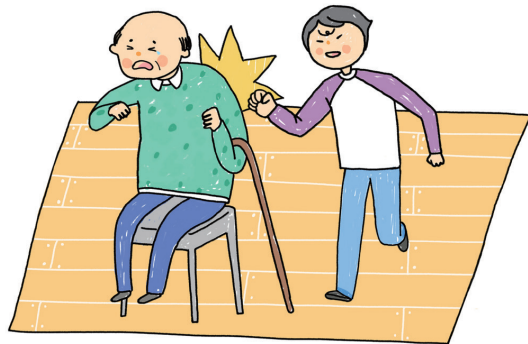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03 노인학대 알아보기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대표적 행위

- 꼬집고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
- 감금 또는 거주지 출입 통제 행위
-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
-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 식사, 음료 등을 단절시키는 행위
-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 원치 않은 일(노동)을 강요시키는 행위

### 예측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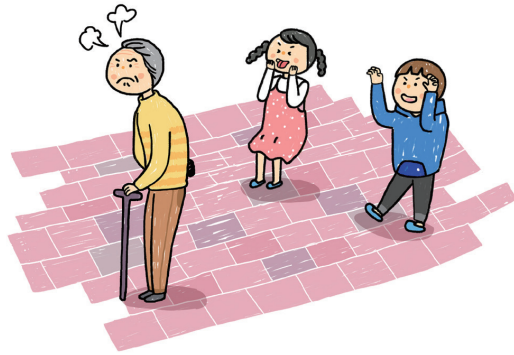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의 출혈 흔적
-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및 영양부족, 체중감소
- 묵인 흔적 또는 상처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

04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대표적 행위

-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
-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 행위
- 일상생활(식사, 생활용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하는 행위
- 사회활동, 연락 등을 방해하는 행위
- 위협, 협박하는 행위
- 고함, 욕설 등의 행위
- 모욕 등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노인과 관련한 결정에서 소외시키는 행위

### 예측징후

-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가족 또는 보호자와 대화가 거의 없고 눈치 보는 모습
- 사람을 만나지 않고 외부 활동을 회피하는 모습



##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대표적 행위

- 강제적인 성관계 강요 및 시도 행위
- 원치 않는 스킨십 및 신체일부를 만지는 행위
-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
- 노인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 케어를 실시하는 행위

### 예측징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 성기부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 성병 진단
- 분노 또는 수치심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대표적 행위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재산,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공적부조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대리권을 악용하는 행위
-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 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예측징후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
- 노인의 허락없이 재산관련 등의 서류 처리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등)를 가로챈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 은행계좌에 부적절한 거래 발견

##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 대표적 행위

-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 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하는 행위
-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하는 행위

### 예측징후

-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 신변처리(미용, 목욕, 손톱관리, 옷 입기 등)가 안된 상태
- 노인의 건강, 주변환경의 안전위험 증후
- 불결한 주거환경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대표적 행위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 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 시키고 연락, 왕래를 두절하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배회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 예측징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 하지 않음
-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 시킨 후 연락 두절

# 04 노인학대 의심사례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Q 신고 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정보라고 생각하며 지나칠 수 있는 사실들이 오히려 사례파악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모든 정보를 알아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 신고자 관련정보

- 신고자 인적사항 : 이름, 현 거주지, 연락처 등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신고자의 욕구 : 노인보호에 대한 욕구, 정보파악 혹은 상담을 위한 욕구, 노인학대 판정을 위해 현장조사 실시에 대한 욕구 등

### ○ 학대피해노인 관련정보

- 학대피해노인의 현재 상황 : 안전여부, 긴급분리 보호여부, 노인의 심신상태 등
- 학대피해노인 인적사항 :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가족관계 등
- 학대내용

### ○ 학대행위자 관련정보

- 학대행위자 인적사항 :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직업 등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및 동거여부

### ○ 학대 관련정보

- 학대 발생여부 : 학대유형, 학대정도 및 심각성, 학대발생일시, 학대발생장소, 학대발생빈도, 학대지속기간 등

### ○ 시설 관련정보\*

- 학대내용 : 시설 관리·운영상의 문제인지, 시설 종사자의 문제인지, 시설 내 이용자간의 문제인지, 시설 내 자원봉사자 및 방문자의 문제인지 파악

※ 노인학대가 시설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시설 관련정보도 파악



이러한 정보를 기록하는 이관서를 작성하는 경우,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이관서 작성의 예

#### <이관 시 필수 전달내용>

- 접수일시: 1월 27일 15시
- 상담원 이름: 김수진
- 신고자 이름: 홍길동
- 신고자 전화번호: 010-1234-5678
- 학대피해노인 이름: 홍철수
- 학대피해노인 거주지: 서울시 강남구
- 학대행위자 이름: 이영희
- 접수내용: 신고자는 학대피해노인의 아들이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신고함. 학대피해노인은 치매로 인해 새벽에 홀로 집을 나가 길가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으며, 학대행위자는 그러한 학대피해노인을 보며 무능하다, 나가 죽어라 등의 욕설을 하고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때리기도 함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조치 관련법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조치는 취약노인으로서의 보호조치와 범죄피해자로서의 보호조치 의미를 갖습니다.

- **학대피해노인 보호조치 근거법**
  - 노인복지법
- **노인학대로 인한 형사절차 진행 관련**
  -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 형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으로 인한 학대피해**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으로 인한 학대피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기타 취약노인으로서의 학대피해노인 지원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법률구조법

## 05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안내

### 사례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A요양보호사**는 기저귀 케어를 위해 H노인의 생활실 앞을 지나가던 중 동료 B요양보호사가 H노인의 옆구리와 팔뚝을 세게 꼬집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H노인은 치매가 심해 평소 대화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B요양보호사의 손을 밀쳐내며 소리를 내는 등 아프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A요양보호사는 고민 끝에 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를 통해 B요양보호사의 행동을 신고하였다.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지자체 공무원**과 해당 시설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상담원은 H노인의 옆구리와 팔뚝에 있는 멍과 상처를 확인한 후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CCTV로 신고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또, 상담원은 종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평소 B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네 아들이 다신 여기(시설) 못 오게 할 거다”, “빨리 죽는 것도 복이다”라며 협박과 폭언 행위를 일삼았다는 추가적인 학대의심 정황 진술을 다수 확보하였다.

반면, 학대행위자인 B요양보호사는 H노인의 옆구리를 꼬집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악의적으로 한 행동이라기보다 하도 말을 듣지 않아 말을 잘 들으라는 의미로 그런 것이며, 그 뒤로 연고도 발라주고 했으니 학대로까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 폭언 등에 대해서는 학대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B요양보호사의 행위를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판정하였으며 **관할 지자체에 판정 결과를 송부**하였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하였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타 시설로 전원 된 H노인이 새로운 시설에서 잘 적응하고 있음을 파악한 후 사례를 종결하였다.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4개월, 최장 6개월 간 쉼터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단, 치매 등의 질환으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학대피해노인이 아닌 노숙인의 경우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학대피해노인 쉼터생활 지원, 치유 프로그램 제공,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해 학대 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쉼터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01

02

## 학대피해노인보호를 위한 지정 양로시설 입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쉼터 보호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학대 피해노인보호 지정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입소의뢰된 학대피해노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양로시설 간 협의를 통해, 입소여부 판정 후 입소가 가능합니다. 양로시설에 입소하더라도, 필요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통해 전문 심리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독, 신체·정신적 문제 등 치료연계

학대사례 개입 시 학대피해노인 또는 학대행위자에게 발생하는 중독 및 신체, 정신질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치료, 방문간호, 의료기관 입원 및 입원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3



###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04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사례 개입 시, 학대피해노인 상담 뿐 아니라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개입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학대행위자의 학대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감소·제거 하기 위해 상담을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또한 노인학대행위로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6(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의 제공))

### 법률서비스 지원·연계

05

학대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한 법률서비스(법률상담연결, 소송지원, 고소·고발) 및 가정법률 상담소와 연계 한 이혼절차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내 학대 행위로 피해를 받은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 서비스 지원 및 관내 행정기관의 협조를 통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이혼절차 정보제공(가정법률상담소)

06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할 때에는 가정법률 상담소 등을 통하여 법적 이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 06 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sup>1)</sup>



## Q 신고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의 역할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 ① 신속히 유선전화(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또는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해 상담, 신고합니다.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또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 ②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 ③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시설종사자 행동강령

- ①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②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 ③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④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⑤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 ⑥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⑦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 ⑧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 ⑨ 노인의 건강상태,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⑩ 노인의 면회나 외출, 외박 기회를 거부하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 ⑪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 ⑫ 노인의 이성교제 등 사생활이 놀림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 ⑬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⑭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1) 보건복지부(2021).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일부발체.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1) P. 240

## ○ 노인복지 생활시설의 역할

### 시설 내 노인학대의심 사례가 발생되었거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 ① 학대사례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 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 ②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먼저 학대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장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행위자, 학대피해노인의 비밀보장 방안을 우선 강구 하되, 학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작 · 삭제해서는 안됩니다.

###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보건복지부(2021).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일부발췌.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1) P.256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 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바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교육방법**

자체교육(직장내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중 기관 여건에 맞게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진행

1. 자체교육(직장내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안내 홈페이지"에 등재된 교육자료(동영상, PDF, PPT) 활용하여 자체교육 실시
2. 방문교육: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파견되어 진행하는 교육
3. 온라인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필수 의무교육사이트,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자식(GSEEK),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등

○ **교육결과 제출**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 시·군·구(각 시설 담당부서) → 시·도(노인보호사업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교육안내 홈페이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15771389.or.kr

**인권교육**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교육대상**

1.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2.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교육방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통해 집합교육(연 4시간 이상) 또는 인터넷 교육(연 6시간 이상) 이수

○ **교육결과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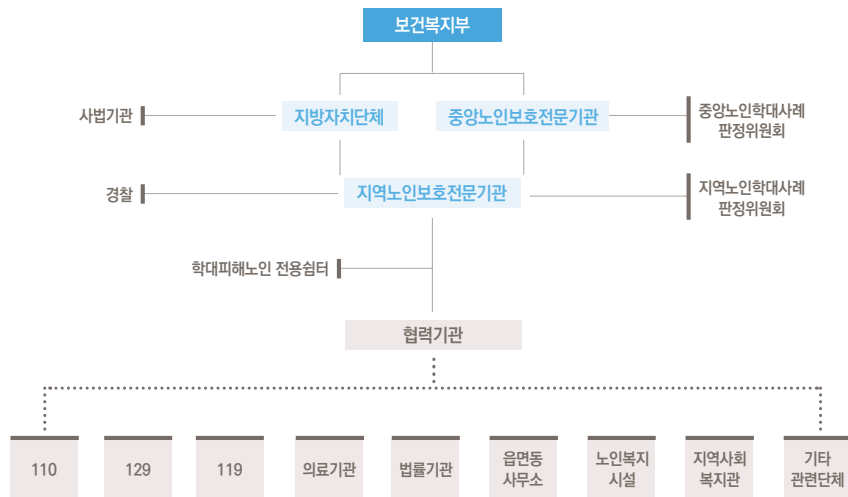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 시·군·구(노인복지 담당부서) → 시·도(노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요양보험운영과)

# 07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에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예방사업 체계도



노인 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지침



##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내용



### 상담

####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 전문상담
- 노인학대 신고접수
- 일시보호서비스 지원
- 법률지원,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교육

####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인권 교육



### 홍보

#### 홍보사업

- 이동 상담
- 캠페인, 사진 전시회, 세미나 개최
- 대중매체를 활용한 보도자료 배포
- 다양한 홍보물(리플렛, 전단지 등) 제작 및 배포
-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기념행사



### 협력체계구축

#### 협력체계 구축사업

- 중앙·지역 노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 주민센터, 사회복지 시설, 지역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연계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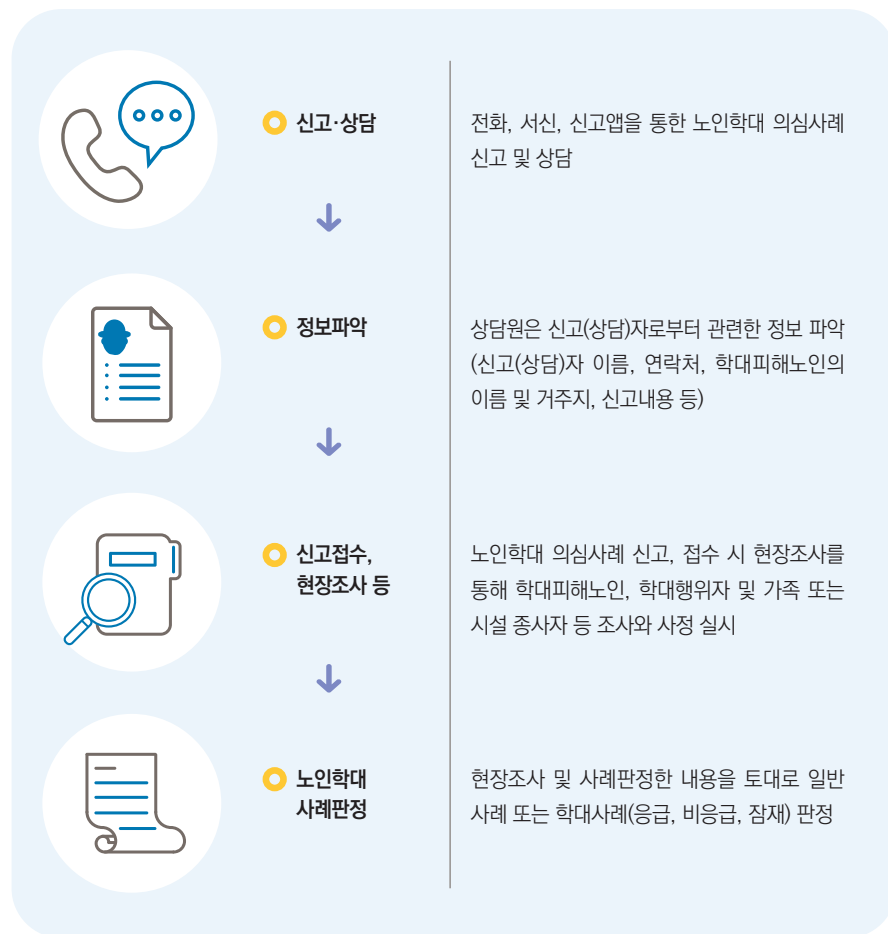


### 인권보호

#### 노인인권 보호사업

- 노인인식개선 사업
- 노인인권 지킴이단 운영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과정



노인 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지침



● 사례평가,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사례종결 및  
사후 관리

사례판정 후 학대피해노인 또는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연계, 지정 양로시설 연계, 상담 및 치료 서비스 등의 다양한 사회 서비스 제공

사례종결 후 일정기간 동안 학대 재발여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전화 및 방문) 진행

1577-1389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직통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할 지역 및 전화번호는 25쪽 참고)



# 08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소개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근거하여 보호 및 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입소대상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입소기간

4개월 이내(학대재발의 우려 등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하여 연간 총 6개월 이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퇴소 후 원가정 복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은  
**지정된 전국 양로시설로 연계하여 입소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지정 양로시설 등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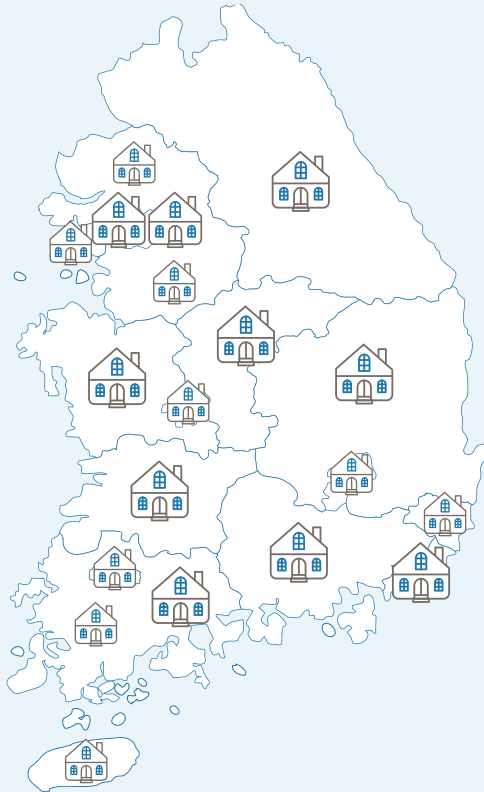
### 서비스내용

- ①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 ②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③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 ④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광역시·도에 1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쉼터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 진행 및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 처벌기준



법률	내용	처벌
벌칙 제55조의2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제55조의3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신설)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해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사망 시)
벌칙 제55조의4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노인학대 금지행위 관련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제57조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제61조의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외 타 법률 적용 가능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까지의 기간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노인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지침



#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안내



시도	전국기관	관할지역	전화번호
서울	서울남부	강남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영등포구	02)3472-1389
	서울북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02)921-1389
	서울서부	강서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02)3157-6389
	서울동부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중랑구	02)470-1389
부산	부산동부	강서구, 남구, 동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051)468-8850
	부산서부*	금정구, 기장군, 동래구, 부산진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051)867-9119
대구	대구남부*	남구, 달서구, 달성구, 수성구	053)472-1389
	대구북부	동구, 북구, 서구, 중구	053)357-1389
인천	인천*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032)426-8792
	인천서부	강화군, 계양구, 부평구, 서구	032)569-0533
광주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부, 서구	062)655-4155
대전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042)472-1389
울산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052)265-1389
경기	경기동부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광주시, 용인시(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031)736-1389
	경기북부*	의정부시,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양주시, 하남시	031)821-1461
	경기서부*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만안구, 동안구),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032)683-1389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안산시(상록구, 단원구),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031)268-1389
	경기북서부	고양시(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파주시, 동두천, 연천군, 김포시	031)978-1389
	강원*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033)253-1389
강원	강원동부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033)655-1389
	강원남부	영월군, 원주시,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횡성군	033)744-1389
충북	충북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043)259-8120
	충북북부*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제천시, 충주시	043)846-1380
충남	충남*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동남구, 서북구), 태안군, 홍성군, 세종특별자치시	041)534-1389
	충남남부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041)734-1389
전북	전라북도*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완산구, 덕진구), 진안군	063)273-1389
	전북서부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익산시, 정읍시	063)443-1389
전남	전남동부*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장성군, 장흥군, 화순군	061)742-3071
	전남서부*	강진군,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061)281-2391
경북	경북동부*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포항시	054)248-1389
	경북북부*	봉화군, 안동시,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054)655-1389
	경북서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성주군, 상주시	054)436-1390
	경북남부	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	053)716-1389
경남	경남*	거제시, 고성군,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창원시(진해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통영시, 함안군	055)222-1389
	경남서부	거창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진주시,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055)754-1389
제주	제주*	제주시	064)757-3400
	서귀포시	서귀포시 관내(17개 읍면동)	064)763-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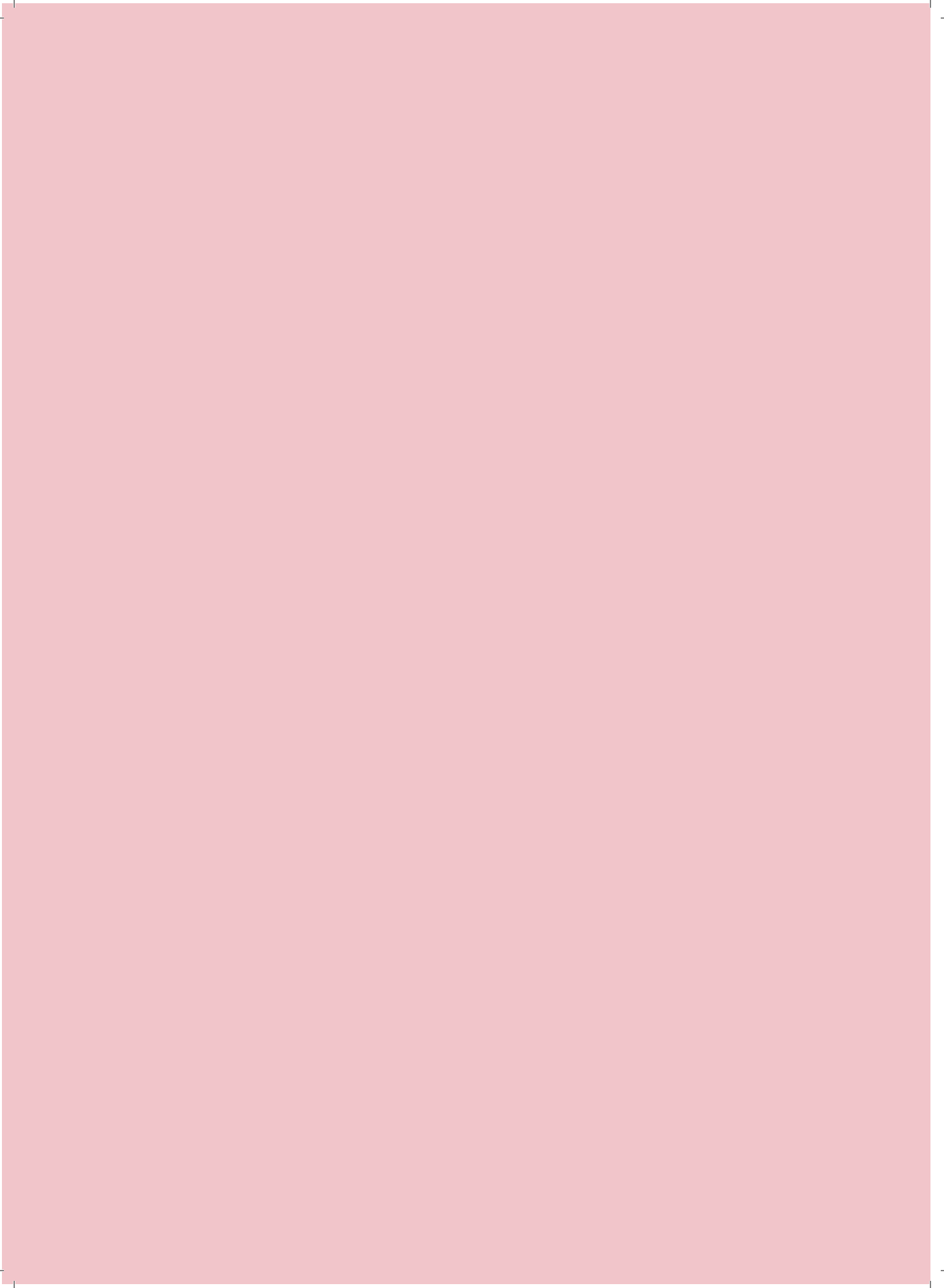
\* 표시된 기관에서 쉼터 운영

2-2

# 낙상예방 및 관리

1 낙상예방 및 관리

215



# 1 낙상 예방 및 관리

## 1. 낙상의 정의

낙상의 사전적 의미는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칩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WHO의 정의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바닥 이외의 신체 일부가 바닥면에 접지한 경우를 말한다(Gibson, 1990). 또한 낙상은 주요한 내인성 사고나 위험한 사고의 결과가 아닌, 안정 상태에서 바닥이나 낮은 곳으로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로 서있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 2. 낙상의 요인

### ① 인지 심리적 요인

- 낙상의 심리적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치매, 우울증 그리고 불안이나 공포장애가 있다. 치매는 보행의 변화와 인지 기능 장애를 발생시켜 주위의 자극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한다. 주변 환경에 대한 무관심, 집중력 저하, 위험한 환경에 대한 인지둔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우울증 또한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불안이나 공포 장애로 인한 일상 활동 제약이나 신체 상태의 악화도 낙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 ② 신체적 요인

- 여러 신경학적 질환들로서 치매, 말초신경장애, 현훈, 어지러움, 뇌종양, 파킨슨병, 시력 저하 등이 고려된다. 이러한 신경학적 질환들 외에 심혈관계 질환, 저혈압, 대사성 질환,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도 낙상을 유발하는 신체적 요인이다.

### ③ 환경적 요인

- 낙상이 잘 일어나는 환경으로는 미끄러운 바닥, 평평하지 못하거나 장애물이 있는 곳, 잘 안 보이는 곳이나 손잡이가 없는 계단, 화장실, 욕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활 장소에 따른 낙상의 위험요인들을 살펴보면 일반 지역사회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환경적 위험요인, 여성 독거노인, 음주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사람, 낙상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75세 이상의 여성, 많은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이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 3. 낙상 예방방법

- ① 눈부신 조명은 대상자에게 낙상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눈부시지 않은 조명을 제공한다. 이는 낙상이나 부딪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 ② 복도, 계단 등에 적치한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한다.
- ③ 대상자의 안전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인 물품을 닿기 쉬운 위치에 놓는다.
- ④ 침대를 낮게 하고 침대 바퀴는 고정한다.
- ⑤ 침대, 욕실 등에서 호출 벨을 사용하는 방법을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다.
- ⑥ 대상자에게 낙상방지에 중요한 안전 수칙을 설명한다. (일어서기 전 몇 분 동안 발을 늘어뜨리기, 느리게 걷기, 어지럽거나 힘이 없으면 도움 요청하기)
- ⑦ 보조기구를 사용할 경우, 대상자의 힘이 약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서고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힘이 강한 쪽에 요양보호사가 선다.
- ⑧ 한 팔은 대상자의 허리를 감고 다른 팔은 대상자의 상완 전측을 잡아 지지한다.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지지는 낙상이나 상해 위험을 줄인다.
- ⑨ 대상자 이동 시 모든 침대, 휠체어, 이동침대를 고정시킨다.
- ⑩ 대상자의 의식이 혼돈상태일 때는 언제나 침대의 보호 난간을 올리고 침대를 낮게 유지한다.

### 4. 낙상예방 환경 정비

- ① 늘어진 줄이나 전기 줄, 바닥 여지저기에 있는 방석이나 카펫을 치운다.
- ② 부득이 방바닥에 양탄자나 이불을 깔아야 한다면 가장자리를 잘 고정시킨다.③ 전화기, 의자나 탁자 등 조그만 가구는 되도록 벽 쪽 익숙한 장소에 둔다.
- ④ 바닥재는 코르크 등 덜 미끄럽고, 탄성이 있어 넘어졌을 때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 ⑤ 위험과 연결되는 장애물, 턱 등에 대하여 단차를 적게 한다.
- ⑥ 가구는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것을 사용하고, 벽 및 가구 표면에는 뾰족한 못 등 날카로운 것이 없어야 한다.
- ⑦ 모서리가 곡선으로 처리된 가구를 사용하거나, 모서리 쿠션, 모서리 방지 안전 가드 등을 부착한다.
- ⑧ 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항상 침대난간을 올려 고정해둔다.
- ⑨ 바닥에 물이 떨어진 경우, 즉시 물기가 전혀 없을 때까지 닦는다.
- ⑩ 깨지기 쉬운 물건, 위험한 것들은 보관함 및 캐비닛에 보관하고 대상자들이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한다.
- ⑪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어지럼증이 유발될 수 있다.

### 5. 낙상 발생 시 응급대처

- ①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시킨다.
- ② 만약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 ③ 추가 위험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면, 의료진이 올 때 까지 낙상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 ④ 응급을 요하는 낙상의 경우, 간호(조무)사 부재 시 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려 신속하게 119응급센터에 구호를 요청하도록 한다.
- ⑤ 최초 낙상 발견자는 대상자 상태를 파악하여 위급한 요소를 제거하고 나서 간호(조무)사나 담당 관리자,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 ⑥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 ⑦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 ⑧ 간호(조무)사는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되도록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 ⑨ 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의사 또는 연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한다.
- ⑩ 낙상 발생 경위 및 중재내용을 기록한다.





